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집필진 회사

- (주)포스코
- 포스코특수강(주)
- (주)포스코켄텍
- 포스코강판(주)
- (주)포스코플랜텍
- (주)포스메이트
- (주)포스코엔지니어링
- (주)포스코A&C
- (주)포스코엠텍
- (주)포스코건설
- (주)포스코P&S
- (주)포스코ICT
- (주)대우인터내셔널
- 포스코에너지(주)
- (주)승광
- (주)포스리
- 포스코터미널(주)
- (주)SNNC
- (주)PNR
- (주)포스워드
- 성진지오텍(주)
- (주)엔투비
- (주)포스하이메탈
- (주)포스코AST
- (주)포스코TMC

발 행 인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발행부서 포스코 대외협력실 공정거래지원그룹  
발 행 일 2012. 09  
편집·제작 디앤디(D&D)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FAMILY**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12. 09

포스코패밀리  
POSCO FAMILY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 | 2012. 09**

POSCO FAMILY  
**포스코패밀리**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내면서

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패밀리사들은 2003년부터 총 21개사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입니다.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2006년부터 3회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포스코건설, 포스코강판, 포스코특수강이 AA등급을 획득하는 등 포스코패밀리 총 12개사가 CP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CP운영 모범 기업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포스코패밀리 통합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포스코패밀리 25개사들이 모여 Cross Functional Team를 구성하여 만든 편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 공정거래 Q&A, 심결사례, 업무추진 시 특히 유의해야 할 행위 등을 따로 제시하여 공정거래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 편람이 포스코패밀리사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업무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포스코패밀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통해 포스코패밀리사가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9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박 귀 찬 전무

**제1장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I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    |
|---------------------|----|
| 1. 기업결합             | 08 |
|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09 |
| 3. 기업결합의 심사         | 27 |
| 4.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 36 |

**II | 경제력 집중의 억제**

|                         |     |
|-------------------------|-----|
| 1. 대규모기업집단의 개요          | 50  |
| 2. 기업집단제도               | 53  |
| 3.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제도      | 62  |
|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74  |
| 5.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88  |
| 6.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 104 |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III |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                                 |     |
|---------------------------------|-----|
| 1. 부당한 공동행위                     | 120 |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 122 |
|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 124 |
|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126 |
|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 145 |
| 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Leniency Program) | 146 |

**IV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     |
|------------------|-----|
| 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 150 |
|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151 |

**V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     |
|-------------------------|-----|
|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 156 |
|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 158 |
|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유형     | 159 |
|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 171 |

**VI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     |
|-------------|-----|
| 1. 부당한 거래거절 | 174 |
| 2. 차별적 취급   | 183 |
| 3. 거래상 지위남용 | 193 |
| 4. 구속조건부 거래 | 206 |
| 5. 부당한 지원행위 | 213 |

**제3장 하도급 부문**

**VII | 하도급 관련 규제**

|                    |     |
|--------------------|-----|
|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222 |
| 2. 하도급법의 체계        | 222 |
| 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225 |

# I

## 제1장 |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1. 기업결합
- 2.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 3. 기업결합의 심사
- 4.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 VIII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                               |     |
|-------------------------------|-----|
|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
| 가.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234 |
| 나. 선급금 지급 의무                  | 239 |
| 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245 |
| 라.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252 |
| 마.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265 |
|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272 |
|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280 |
| 2. 원사업자 금지사항                  |     |
|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282 |
| 나. 감액 금지                      | 288 |
| 다.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 293 |
|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294 |
| 마.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295 |
| 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296 |
| 3. 발주자의 의무사항                  | 297 |

### IX | 법 위반 사건의 처리

|             |     |
|-------------|-----|
| 1. 사건 처리 절차 | 302 |
| 2. 제재 조치    | 303 |
| 3. 인센티브     | 304 |

|                                  |     |
|----------------------------------|-----|
| 부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및<br>체크리스트 | 305 |
|----------------------------------|-----|

## 1. 기업결합

### 가. 기업결합이란?(공정거래법 제7조)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조직적·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들을 포괄함

-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 ▶ 우리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사항

- 지분 20%(기업공개 회사 15%)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 20% 이상 취득 후 추가 취득을 통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 우리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계열사 제외)

### 나. 기업결합의 유형

#### ■ 결합 회사 간 관계에 따른 분류

- 수평결합 : 경쟁사업자 간의 결합
- 수직결합 : 원재료 의존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혼합결합 : 수평·수직 관계가 없는 사업자 간의 결합

##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가. 기업결합의 신고(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기업결합 당사회사(특수관계인 포함)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2,000억원, 타방은 20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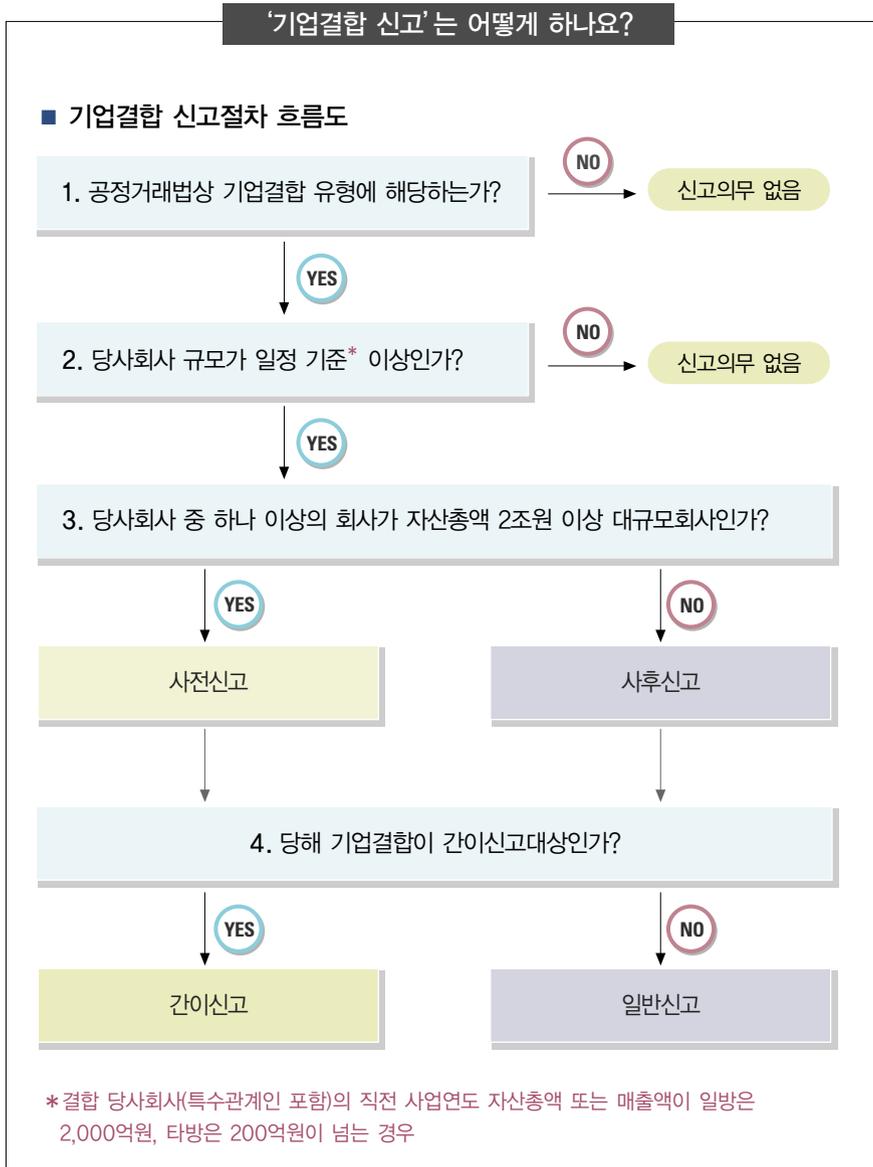
#### ■ 유형별 신고대상 행위

| 기업결합           | 신고대상 행위  |
|----------------|--|
| 주식 소유          |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 이상(상장법인은 15%)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br>·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 15%)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 임원의 겸임         | · 대규모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br>- 단, 단순한 임원의 교체, 즉 수의 변동 없이 자연인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br>- 계열사 간 임원겸임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                            |
| 합병             |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 영업양수           |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br>-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회사 설립이나 상법상 회사 분할에 의한 설립일 경우는 제외  |

#### ■ 외국 회사와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외국 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신고대상이 됨

- 외국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피취득 회사인 외국 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2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국 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

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결합 회사 간 관계에 따른 분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하며,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양식에 작성하여 공정위에 신고
  - 기업결합 신고 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단, 대표이사 겸임 제외)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44조 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 유동화에 따른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 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양 당사회사 영위 업종 간 상호보완성 및 대체성 없는 M&A를 하는 경우
-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

■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

-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외의 기업결합

다.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공정거래법 제12조 제3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법 제2조 제5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결합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제외)와 기업결합한 경우
- 경쟁제한성이 없는 SOC 민간투자사업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라. 신고시기(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이 완료된 이후에 신고(사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회사가 관련된 경우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해야 함. 우리 회사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회사이므로 임원겸임을 제외하고는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함
-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후 30일(90일간 연장 가능)이 경과할 때까지는 기업결합 완료 행위가 금지됨

| 구분    | 신고의무자       | 유형      | 신고시기                                       |
|-------|-------------|---------|--|
| 사전 신고 | 대규모회사*      | 합병      | 계약일 이후 이행완료 전                              |
|       |             | 영업양수    |  |
|       |             | 주식취득*   |  |
|       |             | 회사신설 참여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
| 사후 신고 | 대규모회사 외의 회사 | 합병      |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
|       |             | 영업양수    | 대금지불 완료일로부터 30일                            |
|       |             | 주식취득    | 주권 교부일로부터 30일                              |
|       |             | 회사신설 참여 |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
|       | 대규모회사       | 임원겸임    | 피 겸임회사의 주총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대규모회사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함  
 \* 신주취득에 의한 기업결합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

마.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

- 사전·사후 신고대상을 막론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획중인 기업결합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음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기업결합

-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3조4천6백억원)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2010. 5. 25)하고 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2010. 6. 30).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

바. 신고방법

- 기업결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기업결합과에 제출

외국기업이 포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 기업

| 취득회사 |  | 피취득회사 |   |
|------|--|-------|---|
| 국내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                   | 외국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 |
| 외국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이고 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 | 외국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 |

- 외국회사가 국내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요건 필요없이 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요건만 충족 하면 됨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국내 매출액 기준은 계열사를 포함한 합계 기준

■ 신고의무 대상행위

• 주식취득·소유

해당국 관련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소유 (피취득회사가 국내기업의 공개회사일 경우 15% 이상)

• 임원겸임

취득회사의 임직원이 피취득회사의 임원을 겸임할 경우

- 계열사에 대한 임원겸임은 면제(계열회사의 판단은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로 함)

•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

- 단,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분참여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의무는 없으나,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는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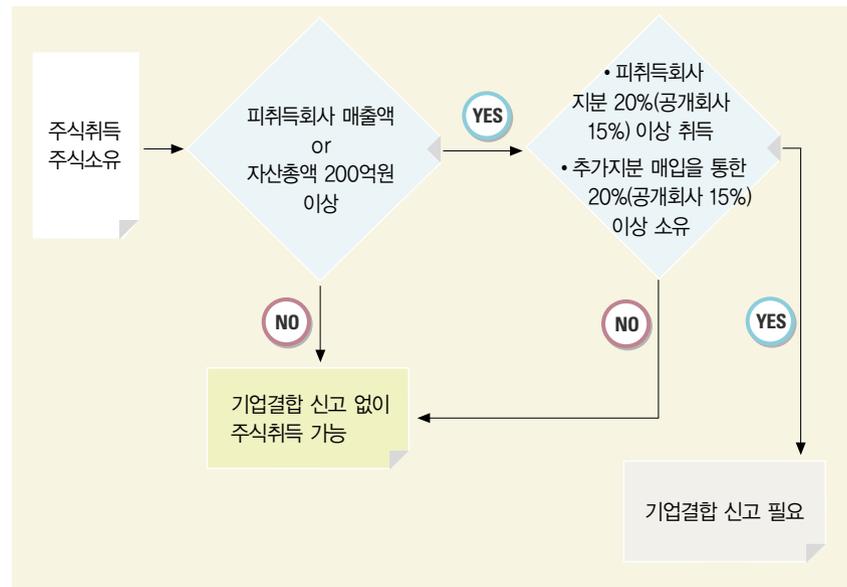
■ 신고시기

• 기업결합의 신고시기와 같음(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 BHPB와 리오틴토(Rio-Tinto)사의 기업결합

- 세계 2, 3위 철광석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Rio-Tinto)가 호주 서부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계약(결합금액 약 130조원)을 체결하고 한국 등 주요 경쟁당국에 신고(2009. 12)함
- 두 회사 모두 외국 회사이나 두 회사가 한국 철광석 수입물량의 67%(약 3조 원)를 차지하므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임
- 이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결국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철회됨

주식취득·소유시 업무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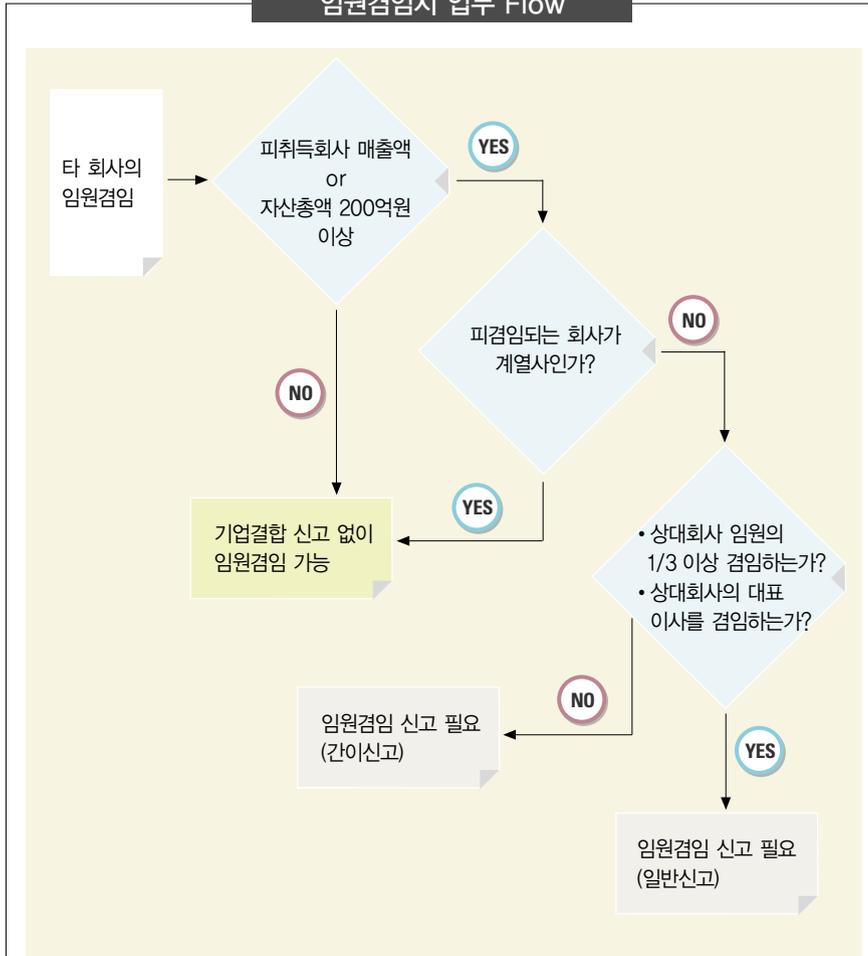


■ 우리 회사가 주식취득시 기업결합 신고시기는?

포스코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기업결합 신고의 당사회사인 경우, 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취득시의 기업결합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주권교부나 주식대금 지급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해서 의결권 등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날을 말한다.
- ②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 ③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 양수의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 ④ ①~③항목 이외의 경우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 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임원겸임시 업무 Flow



■ 임원겸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시기

피겸임회사의 주총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해외법인의 임원겸임일 경우 피겸임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라면 기업결합 신고 필요

주식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서류

|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서   |               |                |                     | 신고유형  |                               |
|---|---------------|----------------|---------------------|---|-------------------------------|
|   |               |                |                     | 해당란에 V표시  |                               |
|   |               |                |                     |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
| 회사명 (또는 성명)   |               | 대표자 성명 (한글/한자) |                     | 설립일   |                               |
| 주소  |               | 연락처            |                     | 상장일   |                               |
| 사업자번호   |               | 담당자: 전 화: 팩 스: |                     |   |                               |
| 신고인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 납입자본금         |                | 자본총계                |   |                               |
|   | 경상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외국 회사인 경우 기재, 기업결합일 이전·이후 모두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   |                               |
|   |               |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 )   |                               |
| 주요사업  |               |                |                     |   |                               |
|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한글/한자) |                     | 설립일   |                               |
| 주소  |               | 연락처            |                     | 상장일   |                               |
| 사업자번호   |               | 담당자: 전 화: 팩 스: |                     |   |                               |
| 상대회사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 납입자본금         |                | 자본총계                |   |                               |
|   | 경상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사후 신고의 경우에는 ①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 ② 신주를 유상취득 하는 경우 주식대금의 납입기일 다음날 ③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재 |                               |
|   |               |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사전 신고의 경우에는 취득 예정일 기재   |                               |
| 주요사업  |               |                |                     |   |                               |
| 주식취득내용  | 주주            |                | 주식소유비율 (%)          |   | 총 취득금액                        |
|   |               |                | 취득전                 | 취득후   | 취득일                           |
|   | 신고인 관련        | 당해신고인          |                     |   |                               |
|   | 특수 관계인        | 계열회사           |                     |   |                               |
|   |               | 회사외의 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말함 |   |                               |
|   |               | 계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20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br>공정거래위원회  |               |                |                     |   |                               |

임원겸임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서류

| 임원의 겸임 신고서  |                    |                   |              |                   | 신고유형   | □일반신고<br>□간이신고 |  |
|---|--------------------|-------------------|--------------|-------------------|--|----------------|--|
| 신<br>고<br>회<br>사  | 회 사 명              | 대표자 성명            | (한글)<br>(한자) | 설립일               |  |                |  |
|   | 주 소                | 연락처               |              | 담당자:              |  |                |  |
|   | 사업자번호              |                   |              | 전 화:              |  |                |  |
|   | 재무상황<br>(단위 : 백만원) | 납입자본금             | 자본총계         |                   | 팩 스:   |                |  |
|   |                    | 경상이익              | 당기순이익        |                   |  |                |  |
|   |                    | 자산총액<br>(기업집단전체)  | ( )          | 매 출 액<br>(기업집단전체) | 외국 회사인 경우 기재, 기업<br>결합일 이전·이후 모두 계열<br>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br>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 |                |  |
| 주요사업  | 국내매출액<br>(기업집단전체)  |                   | ( )          |                   |  |                |  |
| 상<br>대<br>회<br>사  | 회 사 명              | 대표자 성명            | (한글)<br>(한자) | 설립일               |  |                |  |
|   | 주 소                | 연락처               |              | 담당자:              |  |                |  |
|   | 재무상황<br>(단위 : 백만원) | 납입자본금             | 자본총계         |                   | 전 화:   |                |  |
|   |                    | 경상이익              | 당기순이익        |                   | 팩 스:   |                |  |
|   |                    | 자산총액<br>(기업집단전체)  | ( )          | 매 출 액             |  |                |  |
|   | 주요사업               | 국내매출액<br>(기업집단전체) |              | ( )               |  |                |  |
| 임원<br>겸임<br>내용  | 겸임자 성명             | 신고회사에서의 직위        | 상대회사에서의 직위   | 임원겸임일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br>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br>20 .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br>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                    |                   |              |                   |  |                |  |

해당란에 V표시

외국 회사인 경우 기재, 기업  
결합일 이전·이후 모두 계열  
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서 첨부서류

■ 신고회사의 주주 현황(신고일 현재 기준)

| 주 주 | 소유주식수 | 주식소유비율(%) |
|-----|-------|-----------|
|     |       |           |
| 합계  |       | 100.00    |

주)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 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신고일 현재 기준)

| 신고인<br>관련 | 주 주       |          | 소유주식수 | 주식소유비율(%) |        |
|-----------|-----------|----------|-------|-----------|--------|
|           | 구 분       | 성명 또는 명칭 | 취득전   | 취득후       |        |
| 동일인       | 특수<br>관계인 | 계열회사     |       |           |        |
|           |           | 회사외의 자   |       |           |        |
|           | 계         |          |       |           |        |
| 기타        | 법 인       |          |       |           |        |
|           | 개 인       |          |       |           |        |
|           | 계         |          |       |           |        |
| 합계        |           |          |       | 100.00    | 100.00 |

주)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 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 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 회사명 | 설립일 | 상장일 | 주요업종<br>(국내<br>매출품목) | 납입<br>자본금 | 자본총계 | 자산총액 | 매출액<br>(국내<br>매출액) | 당기<br>순이익 | 주요주주<br>(%)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4)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 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 관련시장 현황(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주요품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작성 불필요)

①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   |                                       |  |   |       |
|--|---|---------------------------------------|--|---|-------|
| 회사명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개 품목                        |                                       | 외국 회사의 경우 국내 및 수출 구분없이 당해 제품의 전체 매출액   |   |       |
| 품목명  | 당해제품 매출액  | (국내) (수출)                             | 표준산업 분류번호 (5단위기준)  |   |       |
| 국내 총공급 · 총수요   |   | 금액 기준으로 기업결합 당시의 2년전 실적 및 직전년도 실적을 기재 |  |   |       |
| 국내 총공급   |   |                                       | 국내 총수요   |   |       |
| 구분   | 년   | 년                                     | 구분   | 년   | 년     |
| · 국내공급<br>· 수입 (계)   |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국내 총공급 또는 총수요의 5% 이상인 업체는 모두 기재 |                                       | · 내수<br>· 수출 (계)   |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국내 총공급 또는 총수요의 5% 이상인 업체는 모두 기재 |       |
| 주요 국내 수입업체   | 회사명   | 수입액                                   | 주요 국내 수요업체   | 회사명   | 구입액   |
|  |   |                                       |  |   |       |
| 주요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   |                                       |  |   |       |
| 기업결합 당시의 2년전 현황  |   |                                       |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년도 현황   |   |       |
| 사업자명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사업자명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 (1)<br>(2)<br>(3)<br>(수입) 계  |   |                                       | (1)<br>(2)<br>(3)<br>(수입) 계  |   |       |
| 관련 법 인허가, 지역제한 등 진입장벽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   |   |                                       |  |   |       |
| 국내 및 해외 진입장벽 여부  |   |                                       |  |   |       |
| 국내 · 외 진입장벽  |   |                                       | 수입제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 제도적 진입장벽 여부 :</li> <li>· 지역제한 여부 :</li> <li>· 최근 5년간 진입사례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제한 여부 :</li> <li>· 최근 5년간 수입비중 :</li> <li>· 실행관세율 : (관세명 : )</li> </ul> |   |       |
| 관련자료 · 통계의 출처  |   |                                       | 인용한 자료, 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 날짜 등을 기재   |   |       |

- ① 신고회사의 자국 및 세계 시장 매출액, 점유율 가격 및 생산 능력
- ② 신고회사 그룹의 국제적 영업활동 내역
- ③ 기업결합 완료 후 예상되는 소유
- ④ 기업결합 후 주요 단계에 대한 설명
- ⑤ 관련 시장에서 원재료 의존 관계 및 수직적 결합 정도(당사자, 경쟁자)
- ⑥ 신고 대리하는 경우 신고 대리인 및 그 대표자의 이름,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타 별지에 기재

- ② 주요품목의 주요 특성, 기능 및 용도
- ③ 주요품목 관련 경쟁상황 : 회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성

■ 기업결합의 개요서(신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기재할 것)

- ① 기업결합의 내용 및 기업결합의 사유
- ②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
- ③ 기업결합에 따른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
- ④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획정 및 그 사유
- ⑤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견해
- ⑥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 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 임원겸임 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취득 또는 소유 회사에 대하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명, 신고인 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주식취득 또는 소유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내용 등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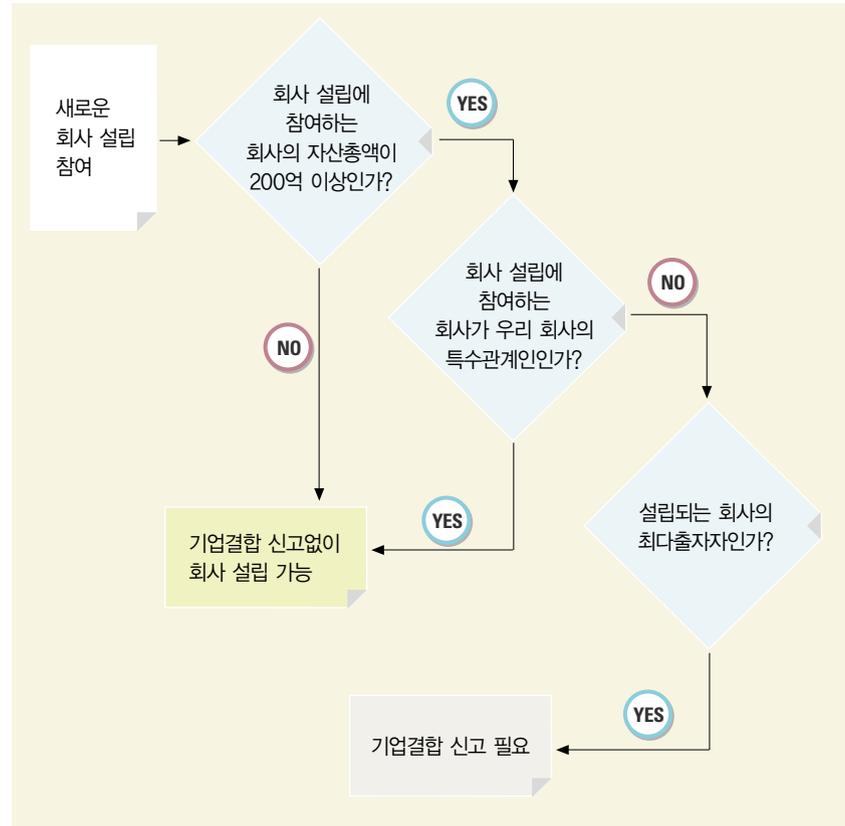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 재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일, 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등을 작성 · 첨부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식취득시 추가 서류

- ① 당해 PEF가 이미 출자한 회사(피투자회사)의 영위 업종, 피투자회사에 대한 당해 PEF의 출자비율(주식소유비율 등)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출자비율, 임원겸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설명)
- ② 당해 PEF에 대한 사원(무 · 유한 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사원의 영위 업종
- ③ 당해 PEF에 대한 사원들의 지배관계 및 무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 현황

새로운 회사 설립시 업무 Flow



-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기업결합 시기는?  
포스코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최다출자자로 다른 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 할 때는 회사의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결합 신고시 작성서류

|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                |                            |   | 신고유형           | 해당란에 V표시   |
|---|----------------|----------------------------|---|----------------|--|
| 신 고 인   | 회사명 (또는 성명)    | 대표자 성명 (한글/한자)             | 설립일                                       | □ 일반신고 □ 기간이신고 |  |
|   | 주소             | 연락처                        | 상장일                                       |                |  |
|   | 사업자번호          | 담당자: 전/화/팩스                |   |                |  |
|   |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 납입자본금, 경상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 외국 회사인 경우 기재, 기업결합일 이전·이후 모두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주요사업  |                |                            |   |                |  |
| 상 대 회 사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한글/한자)             | 설립일                                       |                |  |
|   | 주소             | 연락처                        | 상장일                                       |                |  |
|   | 담당자: 전/화/팩스    |                            |   |                |  |
|   |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 납입자본금, 경상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  |
| 주요사업  |                |                            |   |                |  |
| 예정 주식인수 내용  | 주 주            | 예정 주식 소유비율(%)              | 총 취득금액                                    | 회사설립 참여 의결일    | 주식대금 납입기일  |
|   | 신고인 관련         | 당해신고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말함                       |                |  |
|   | 계              |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20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br>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                            |   |                |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결합 신고시 첨부 서류

■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 현황

| 주 주       |           |        | 예정 소유주식수 | 소유주식비율(%) |        |
|-----------|-----------|--------|----------|-----------|--------|
| 구 분       | 성명 또는 명칭  |        |          |           |        |
| 신고인<br>관련 | 동일인       |        |          |           |        |
|           | 특수<br>관계인 | 계열회사   |          |           |        |
|           |           | 회사외의 자 |          |           |        |
|           | 계         |        |          |           |        |
| 기타        | 법 인       |        |          |           |        |
|           | 개 인       |        |          |           |        |
|           | 계         |        |          |           |        |
| 합계        |           |        |          | 100.00    | 100.00 |

■ 신고회사의 주주 현황(상기양식)

- 신고회사가 기업집단 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 사업 내역을 별지 작성

■ 신고인의 계열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설립일 | 상장일 | 주요업종<br>(국내<br>매출품목) | 납입<br>자본금 | 자본총계 | 자산총액 | 매출액<br>(국내<br>매출액) | 당기<br>순이익 | 주요주주<br>(%) |
|-----|-----|-----|----------------------|-----------|------|------|--------------------|-----------|-------------|
| 합계  |     |     |                      |           |      |      |                    |           |             |

주1)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4)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 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 관련시장 현황(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주요품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작성 불필요)

①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   |              |  |   |       |
|--|---|--------------|--|---|-------|
| 회사명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개 품목                              |              |  |   |       |
| 품목명  | 당해제품<br>매출액   | (국내)<br>(수출) | 표준산업<br>분류번호<br>(5단위기준)  |   |       |
| 국내 총공급·총수요   |   |              |  |   |       |
| 국내 총공급   |   |              | 국내 총수요   |   |       |
| 구분   | 년   | 년            | 구분   | 년   | 년     |
| · 국내공급<br>· 수 입<br>(계)   |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br>국내 총공급 또는 총수요의 5% 이상인<br>업체는 모두 기재 |              | · 내수<br>· 수출<br>(계)  |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br>국내 총공급 또는 총수요의 5% 이상인<br>업체는 모두 기재 |       |
| 주요<br>국내 수입업체  | 회사명   | 수입액          | 주요<br>국내 수요업체  | 회사명   | 구입액   |
|  |   |              |  |   |       |
| 주요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   |              |  |   |       |
| 기업결합 당시의 2년전 현황  |   |              |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년도 현황   |   |       |
| 사업자명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사업자명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 (1)  |   |              | (1)  |   |       |
| (2)  |   |              | (2)  |   |       |
| (3)  |   |              | (3)  |   |       |
| ·<br>(수입)<br>계   | 관련 법 인허가,<br>지역제한 등 진입장벽과<br>관련 있는 관계 법령<br>및 관계 규정         |              | ·<br>(수입)<br>계   |   |       |
| 국내 및 해외 진입장벽 여부  |   |              |  |   |       |
| 국내·외 진입장벽  |   |              | 수입제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제도적 진입장벽 여부 :</li> <li>· 지역제한 여부 :</li> <li>· 최근 5년간 진입사례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제한 여부 :</li> <li>· 최근 5년간 수입비중 :</li> <li>· 실행관세율 : (관세명 : )</li> </ul> |   |       |
| 관련자료·통계의 출처  |   |              | 인용한 자료, 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 날짜 등을 기재   |   |       |

- ① 신고회사의 자국 및 세계 시장 매출액, 점유율 가격 및 생산 능력
- ② 신고회사 그룹의 국제적 영업활동 내역
- ③ 기업결합 완료 후 예상되는 소유
- ④ 기업결합 후 주요 단계에 대한 설명
- ⑤ 관련 시장에서 원재료 의존 관계 및 수직적 결합 정도(당사자, 경쟁자)
- ⑥ 신고 대리하는 경우 신고 대리인 및 그 대표자의 이름,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타  
별지에  
기재

- ② 주요품목의 주요 특성, 기능 및 용도
- ③ 주요품목 관련 경쟁상황 : 회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성

■ 기업결합의 개요서(신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기재할 것)

- ① 기업결합의 내용 및 기업결합의 사유
- ②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
- ③ 기업결합에 따른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
- ④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확정 및 그 사유
- ⑤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견해
- ⑥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 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 예정인 회사의 개요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재무현황(납입 자본금, 자산총액, 자본총계), 영위할 제품 및 주요 업종

■ 임원겸임 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취득 또는 소유 회사에 대하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명, 신고인 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주식취득 또는 소유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내용 등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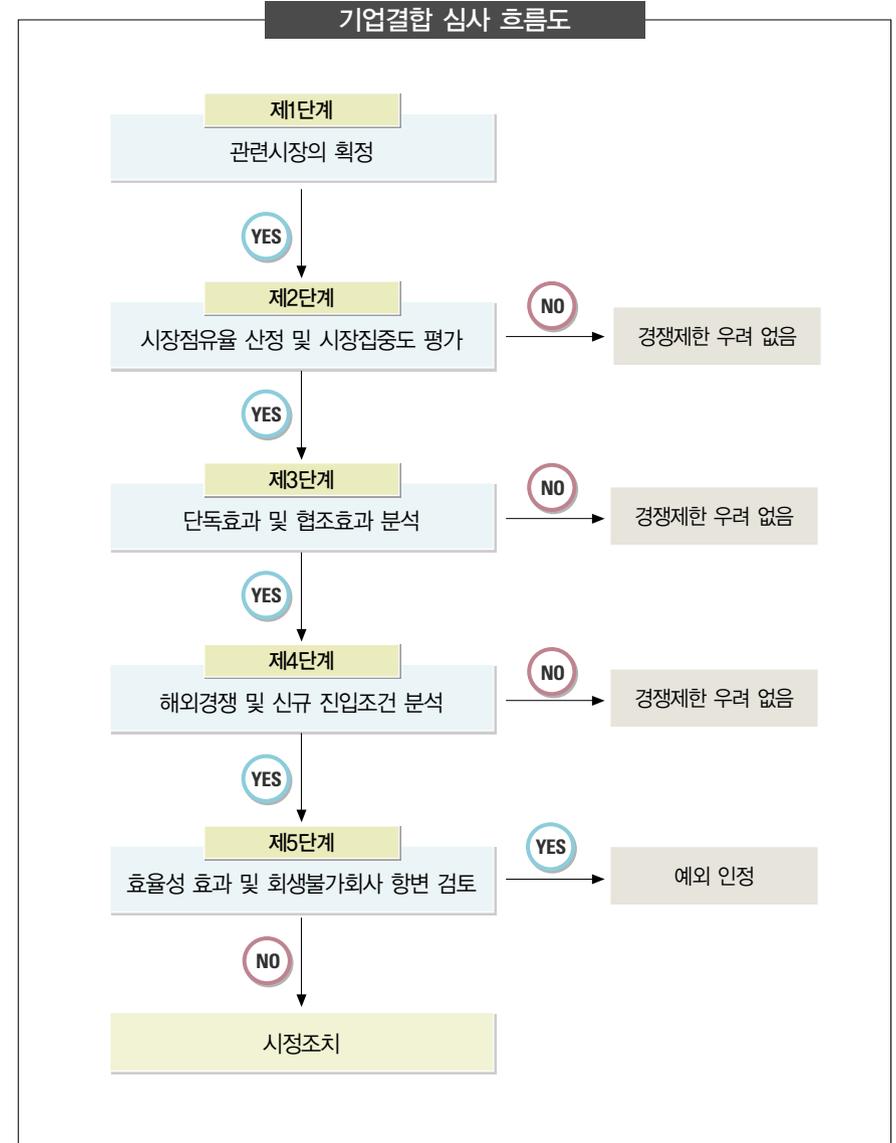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1부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식취득시 추가 서류

- ① 당해 PEF가 이미 출자한 회사(피투자회사)의 영위 업종, 피투자회사에 대한 당해 PEF의 출자비율(주식소유비율 등)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출자비율, 임원 겸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설명)
- ② 당해 PEF에 대한 사원(무·유한 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사원의 영위 업종
- ③ 당해 PEF에 대한 사원들의 지배관계 및 무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 현황

3. 기업결합의 심사



기업결합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

-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희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가. 기업결합 심사대상의 구분

####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특수관계인 간의 기업결합
-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미만인 회사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집중도 또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수평형 기업결합
    - HHI(허핀달-허쉬만)지수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 HHI지수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인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 HHI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
    -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지수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 ■ HHI지수 계산방법

| 구분    | A사  | B사  | C사  | D사  |
|-------|-----|-----|-----|-----|
| 시장점유율 | 35% | 30% | 20% | 15% |

- A사와 B사가 합병한 경우

- 합병 전의 HHI지수 =  $2,750(35 \times 35 + 30 \times 30 + 20 \times 20 + 15 \times 15)$
- 합병 후의 HHI지수 =  $4,850(65 \times 65 + 20 \times 20 + 15 \times 15)$
- HHI지수의 증가분 =  $2,100(4,850 - 2,750)$

####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이나, HHI 지수에 의해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경우 경쟁제한성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함

#### ▶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기업결합의 종류

- 수평형 기업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수직형 기업결합 :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포함)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혼합형 기업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나. 지배관계 형성 여부의 판단

- 기업결합의 수단이 주식취득이나 임원겸임인 경우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이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

#### ■ 지배관계 형성 여부의 판단기준

| 기업결합의 유형 | 판단기준   |
|----------|--|
| 주식취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소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li> <li>주식소유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주식소유 비율이 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지배가 가능한 경우</li> </ul> |
| 임원겸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겸임자의 수가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1/3 이상인 경우</li> <li>겸임자가 상대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li> </ul>         |

- 기업결합의 수단이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

### 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확정

- 신고된 기업결합이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당해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확정
-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품목),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
- 상품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 가격,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
- 지리적 시장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중 경쟁조건이 동질적이어서 인접지역과는 구별될 수 있는 지역을 의미

#### ▶ 무학의 대선주조 취득 건

- 무학은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 및 서울지방법원은 관련시장을 '경남 소주시장', '부산 소주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 확정함
- 결합 당사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 소주 가격 인상시 소비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 구매하기는 어려운 점, 진입장벽을 감안시 타 지역의 경쟁 업체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음

#### ▶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주식취득 건

-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을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주거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장으로 확정함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거형태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제약이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주거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대체성과 수요대체성이 높음

라. 경쟁제한성의 판단

■ 경쟁제한성 추정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 다음의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여 기업결합 금지

| 구분      | 내용   |
|---------|--|
| 일반적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li> <li>· 시장점유율이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li> <li>· 제2위 회사와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것</li> </ul> |
| 대규모 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li> <li>·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li> </ul>                        |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공정거래법 제4조)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

■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 다음의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하여 기업결합 금지

수직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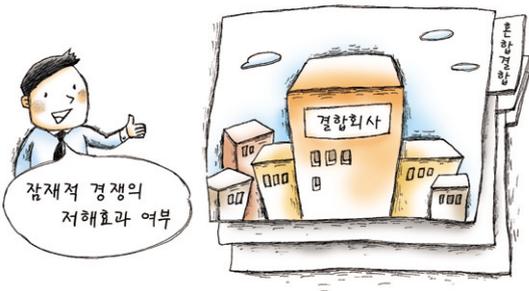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시장의 봉쇄효과          | ·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경우  |
|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li> <li>· 결합회사 중 원재료 구매회사가 원재료 공급회사들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등</li> </ul> |

수평결합

| 구분                     | 내용  |
|------------------------|---|
| 시장 집중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HI(허핀달-허쉬만)지수가 1,200에 미달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i> <li>· HHI지수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인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i> <li>· HHI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i> <li>·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고려</li> </ul> |
|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 상품의 국제가격, 시장개방 정도, 외국인 투자 현황,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 여부,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기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  |
| 결합 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 ·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 신규진입의 가능성              | · 법적·제도적 진입장벽, 필요·최소한의 자금, 생산기술, 원재료 조달, 제품차별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
| 기타                     | ·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

혼합결합

| 구분           | 내용   |
|--------------|--|
|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li> <li>· 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다면 경쟁제한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li> <li>-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li> </ul> </li> <li>·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li> <li>·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li> </ul> |
| 기타           | · 경쟁사업자의 배제, 진입장벽의 증대를 고려  |



마. 기업결합의 예외인정(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 다음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인정
  - ①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 ②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기업결합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항 해설

| 구분    | 내용  |
|-------|---|
| ①항 해설 | · 당해 기업의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함                              |
| ②항 해설 | ·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당해 기업결합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거나,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 4.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 가. 법규 위반시(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또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 가능

#### 나. 시정조치 미이행시(공정거래법 제17조의3)

-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당 기준금액의 1만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구 분        | 기준금액                                |
|------------|-------------------------------------|
| 주식취득, 회사신설 |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합병         |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영업양수       | 영업양수금액                              |

#### 다. 벌칙(공정거래법 제66조, 제69조의2)

- 경쟁을 제한하거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음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산정기준

#### ■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구 분                    |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         |
|------------------------|----------------|-----------------------------|-------------|---------|
|                        |                | 2천억원 미만                     | 2천억원~2조원 미만 | 2조원 이상  |
|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2천억원 미만        | 400만원                       | 480만원       | 800만원   |
|                        | 2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 48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                        | 2조원 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

※ 위반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과태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함

#### ■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구 분                    |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         |
|------------------------|----------------|-----------------------------|-------------|---------|
|                        |                | 2천억원 미만                     | 2천억원~2조원 미만 | 2조원 이상  |
|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2천억원 미만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 2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 2,000만원                     | 2,400만원     | 3,600만원 |
|                        | 2조원 이상         | 3,000만원                     | 3,600만원     | 4,000만원 |

※ 위반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과태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함

■ 부과기준 설명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의 범위

-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지연신고한 자, 허위신고한 자,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위반횟수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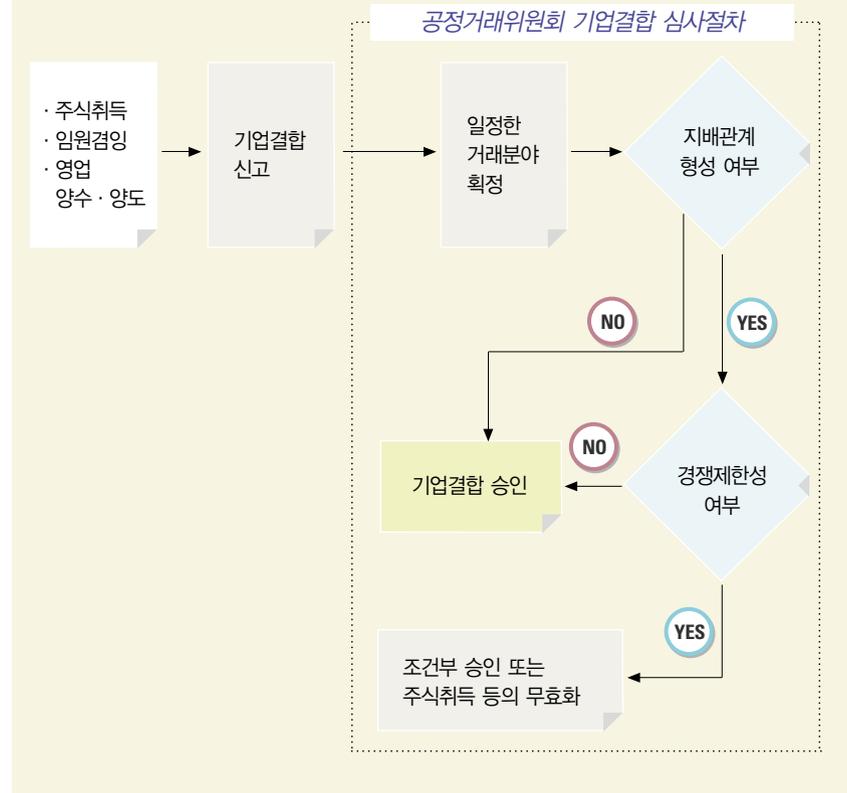
- 위반횟수는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과태료 부과 가중사유

-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인지한 경우

업무형태에 따른 Flow

■ 기업결합의 심사절차



- 기업결합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최대 90일까지 연장가능)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제도(공정거래법 제12조 제9항, 제10항)
  - 사전·사후신고를 막론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결합 계획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공정위는 30일(90일 연장가능)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

## Q&amp;A

**Q** 우리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등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가?

**A** 신고의무 있음. 단, 2005년 4월 1일부터는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겸임의 경우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신고의무는 없음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신고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Q** 시장에서 별도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주식의 무상증여 또는 주식배당 등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20%(공개회사일 경우 1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A**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등 어떠한 이유든지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함

**Q**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주식취득 비율의 산정방법은?

**A**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기업결합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식취득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소유비율을 합산함

**Q**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한다고 할 때 영업의 주요부분의 의미는?

**A**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Q** 임원을 단순 교체한 경우에도 임원겸임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A** 임원의 단순교체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Q** 소규모회사가 대규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A**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작은 규모의 회사가 큰 규모의 회사를 합병하느냐의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 합산)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Q** 자산규모 2조원인 대규모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100%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A** 순수하게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공정거래법 제7조 5항)

**Q**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A사의 직원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지?

**A** 계열사의 임원겸임은 신고의무가 없음

**Q** 기업결합과 M&A는 어떻게 다른가?

**A**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기업결합을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용어화 된 것임

**Q**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설득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불공정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가?

**A** 단순히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설득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정당한 주식취득이지만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Q** 다른 회사와 함께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음.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봄

**Q** 취득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총액이 2,000억원 미만이나 피취득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회사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가?

**A**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는 취득회사 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회사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함. 즉, 취득회사 또는 피취득회사 중 적어도 하나의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회사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함

## 심결례

**사 례 ① /** (주)현대백화점은 2004년 6월 4일 (주)웰푸드와 임원을 겸임하면서, 2004년 7월 15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 (주)현대백화점은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에 해당되며, 법정신고기한(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하여 신고하여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함

**제재내용 /** 【과태료 부과】 100만원

**사 례 ② /** (주)조흥은행은 2003년 8월 29일 (주)쌍용의 발행주식 총수의 20.94%를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주식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을 91일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음

**심결요지 /** (주)조흥은행은 대규모회사에 해당되며,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법인 15%)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조흥은행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 【과태료 부과】 300만원

**사 례 ③ /** 호남석유화학(주)는 2004년 7월 29일 채권금융기관과 (주)KP케미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1월 9일 (주)KP케미칼의 주식 53.8%를 취득한 후 2004년 11월 15일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음. 취득회사인 호남석유화학(주)와 피취득회사인 (주)KP케미칼은 PET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심결요지 /**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PET시장에서 호남석유화학(주)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판매량 기준 1위로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함. 또한, 당해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여서 신규 진입의 가능성이 낮으며, 수입도 국내외 시장상황, 수입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PET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됨

**제재내용 /** 【주문】 호남석유화학(주)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남 석유화학(주) 및 (주)KP케미칼이 생산·판매하는 PET Chip의 수출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당해연도 국내가격 인상률을 외국에 수출하는 동일제품의 외화표시 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여야 하며, PET Chip의 수출가격이 인하 되는 경우에는 국내가격을 인하하되, 당해연도 국내가격 인하율은 최소한 외국에 수출하는 동일제품의 외화표시 가격인하율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사 례 ④ /** 2009년 5월 롯데 면세점은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부산 시내점 및 대구 공항점의 인수를 추진함

**심결요지 /**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의 관련 시장을 '부산·경남 지역의 시내 면세점'으로 확정함. 관련 시장에서 롯데 면세점과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97.4%로 독점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림. 왜냐하면, 결합 후 부산 지역에서의 면세점 간 치열한 경쟁이 소멸되고, 롯데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판매가격 조정과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규브랜드 입점 방해 등 경쟁제한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대됨. 또한 관세청의 시내 면세점 특허 정책에 따라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대구·경남

지역의 시내 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함

**제재내용 /** 【주문】 당해 기업결합을 불허

**사 례 ⑤ /** 2009년 4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사업자인 e-bay는 G마켓 인수를 공정위에 승인 요청함

**심결요지 /** e-bay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면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82.7%에 이르게 되므로 인터넷 비즈니스 특성상 신규 진입이 용이하고, 포털사업자 종합 인터넷 쇼핑몰 등의 오픈마켓으로 전환 진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

**제재내용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

- 향후 3년간 판매 수수료율의 인상 금지
- 향후 3년간 등록 수수료, 서비스(광고) 수수료(경매방식 제외)단가의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
- 중소기업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공정거래법 준수방안 수립·시행 및 내용 판매자에게 공지

**사 례 ⑥ /** 2009년 10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방통위에 인가 신청

**심결요지 /** 본 건은 계열사 간의 합병으로 원칙적으로는 간이심사대상이고, 3사 모두 후발사업자로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합병 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제재내용 /** 공정위는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건 없이 허용함

**(주)포스코 및 (주)포스틸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

**■ 공정거래 위원회 조치**

- 포스코와 포스틸은 국내 전기강판 공급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포스코아를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 하는 행위를 금지
- 또한 전기 강판을 국내 코아 제조 판매 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포스코아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포스코아를 통해 판매 하는 행위 금지
-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및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과

**■ 기업결합 개요**

- (주)포스코와 (주)포스틸은 (주)포스코아의 주식 51%를 취득(2007년 4월)

**■ 공정위의 시장 확정**

- 상품 시장 :

코어 제조 판매업체 대상 '전기강판 시장' - NO/GO 단위 : 천톤, 2006년 기준

| 포스코          |     |     | 수입           |    |    | 합계        |
|--------------|-----|-----|--------------|----|----|-----------|
| NO           | GO  | 합계  | NO           | GO | 합계 |           |
| 159<br>(98%) | 150 | 309 | 3<br>(1.77%) | 2  | 5  | 162(100%) |
|              | 9   | 9   |              | 1  | 1  |           |

- 코어시장 : 모터코어, 티코어, 모터 어셈블리 등 세분
- 지리적 시장 : 전기강판은 포스코가 사실상 국내 독점자이며, 수입비중은 1~2%수준에 불과하므로 '국내 시장'으로 확정

**■ 경쟁제한성 검토**

**①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 충족**

- 포스코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에 해당

- 코어시장에서 제1위 사업자인 포스코아를 포함하여 다른 코어업체들은 상시 종업원수 300인 미만 또는 8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해당됨
- 포스코아가 개별 코어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각 제품별로 12~69%에 달하므로 본 건 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므로 경쟁제한성 요건을 충족함

**② 시장 봉쇄 효과**

- 포스코는 국내 유일의 전기강판 업체로서 국내 코어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강판 시장에서 물량 기준으로 98%(2006년 기준)을 차지하여 포스코의 물량 배정에 국내 코어업체들은 절대적인 영향을 받음
- 국내 코어 시장점유율이 1위인 포스코아를 포스코가 인수함으로써 해외 전기강판 공급업체들의 국내 시장진출이 더욱 어려워짐

**③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 본 건 결합으로 국내 코어시장은 포스코아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코어업체들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포스코나 포스코아의 전기강판 공급정책에 협조적인 코어업체들을 중심으로 공동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④ 진입장벽 증대 효과**

- 전기강판 제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대부분의 코어제조에 사용하는 전기강판은 현재 포스코의 생산량만으로도 공급 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다른 사업자가 국내 일반재 전기강판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코어시장은 전기강판에 비해 신규 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해 거래되는 개별 코어제품 시장의 특성상 이 기업결합으로 포스코아가 국내 코어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게 될 경우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음

### ■ 결론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당해 시장의 시장집중도 등을 감안할 때 시장 봉쇄 효과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조건부 승인
- 포스코와 포스틸은 국내 전기강판 공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포스코아를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
  - ①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기업결합 전 물량보다 축소하여 배정하거나 혹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포스코아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 ③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포스코아와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④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포스코의 재고 물량 강제구매, 수입구매 금지 등 부당한 사유를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포스코아의 코아 제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또한 전기강판을 국내 코아 제조 판매 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포스코아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포스코아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시정명령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이행협의 감시협의회 설치 및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

## II

### 제1장 |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경제력 집중의 억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개요
2. 기업집단지체
3.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제도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6.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 1. 대규모기업집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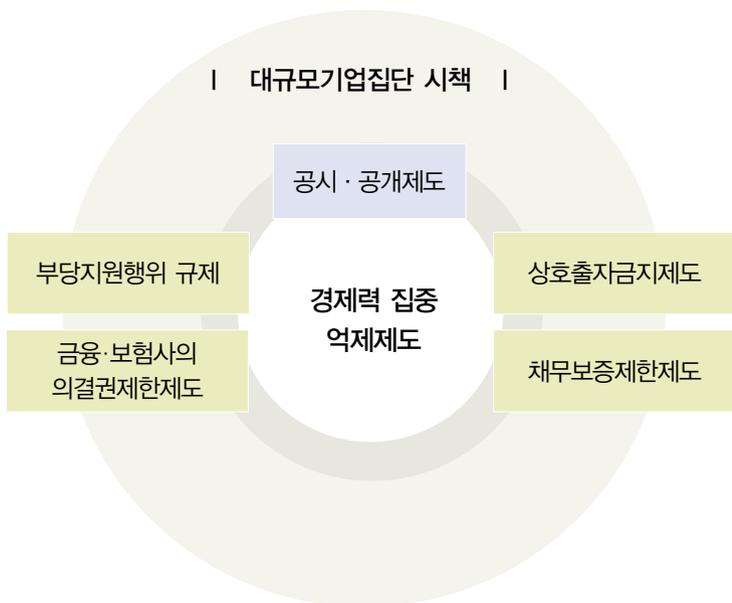
#### 가. 기업집단의 지정(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4월 1일부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기업집단은 2006년 4월 1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대규모기업집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포괄하여 칭하는 경우에 사용함

•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대상이 됨



#### ▶ 5조원 이상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ex) 신한금융지주
- 회사 정리 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

####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유형 및 의무사항

| 비고          | 지정요건   | 의무사항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사 간 상호출자의 금지</li> <li>·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li> <li>·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li> <li>·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li> </ul> |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취득 및 소유 금지</li> <li>·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li> <li>· 주식소유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의무 등</li> </ul>           |

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 (2012년 8월 1일 기준)

단위 : 개

|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회사 |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회사  |
|----|----------|-----------|------|----|-------------|-------------|-------|
| 1  | 삼성       | 이건희       | 80   | 33 | 대우건설        | (주)대우건설     | 15    |
| 2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18   | 34 | 동국제강        | 장세주         | 15    |
| 3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5    | 35 | 현대백화점       | 정지선         | 35    |
| 4  | 현대자동차    | 정몽구       | 57   | 36 | 한국지엠        | 한국지엠(주)     | 3     |
| 5  | 에스케이     | 최태원       | 96   | 37 |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3     |
| 6  | 엘지       | 구본무       | 62   | 38 | 코오롱         | 이응열         | 41    |
| 7  | 롯데       | 신격호       | 79   | 39 | 웅진          | 윤석금         | 28    |
| 8  | 포스코      | (주)포스코    | 71   | 40 | 케이씨씨        | 정상영         | 10    |
| 9  | 현대중공업    | 정몽준       | 25   | 41 | 영풍          | 장형진         | 22    |
| 10 | 지에스      | 허창수       | 74   | 42 | 농협          | 농협동조합중앙회    | 41    |
| 11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3    | 43 | 미래에셋        | 박현주         | 30    |
| 12 | 한진       | 조양호       | 44   | 44 | 한진중공업       | 조남호         | 9     |
| 13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 3    | 45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2     |
| 14 | 한화       | 김승연       | 53   | 46 | 동양          | 현재현         | 33    |
| 15 | 케이티      | (주)케이티    | 50   | 47 | 홈플러스        | 홈플러스(주)     | 3     |
| 16 | 두산       | 박용근       | 24   | 48 | 현대산업개발      | 정몽규         | 15    |
| 17 | 에스티엑스    | 강덕수       | 24   | 49 | 케이티앤지       | (주)케이티앤지    | 11    |
| 18 |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공사    | 2    | 50 | 대성          | 김영대         | 87    |
| 19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2    | 51 | 세아          | 이운형         | 25    |
| 20 | 씨제이      | 이재현       | 85   | 52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2     |
| 21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 10   | 53 | 태광          | 이호진         | 44    |
| 22 | 엘에스      | 구태회       | 51   | 54 | 하이트진로       | 박문덕         | 14    |
| 23 | 금호아시아나   | 박삼구       | 25   | 55 | 한라          | 정몽원         | 22    |
| 24 | 신세계      | 이명희       | 22   | 56 | 교보생명보험      | 신창재         | 12    |
| 25 |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주) | 19   | 57 | 한국투자금융      | 김남구         | 14    |
| 26 | 동부       | 김준기       | 57   | 58 | 태영          | 윤세영         | 43    |
| 27 | 대림       | 이준용       | 17   | 59 | 대한전선        | 설윤석         | 24    |
| 28 | 현대       | 현정은       | 23   | 60 | 한국타이어       | 조양래         | 15    |
| 29 | 에스-오일    | 에스-오일(주)  | 2    | 61 | 이랜드         | 박성수         | 30    |
| 30 | 부영       | 이종근       | 17   | 62 | 유진          | 유경선         | 29    |
| 31 | 오씨아이     | 이수영       | 19   | 63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2     |
| 32 | 효성       | 조석래       | 45   |    | 계           |             | 1,844 |

## 2. 기업집단제도

### 가. 기업집단이란?(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 ▶ 기업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개념

##### ■ 동일인

-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능
- 통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총수가, 총수가 없는 집단인 경우 기업집단 내 주력회사가 동일인임

##### ■ 동일인 관련자(시행령 제3조)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친척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나. 기업집단의 범위

#### ■ 지분을 기준(시행령 제3조 제1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자 및 계열회사)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 동일인이 단독으로 발행주식의 30%(무의결권 우선주는 제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동일인이 다음의 자(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대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 ■ 지배력 기준(시행령 제3조 제2호)

아래 각항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포함)
  - 당해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종류

| 종류          | 지정조건              | 지정시기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매년 4월 1일 |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매년 4월 1일 |

#### 다. 기업집단의 편입 및 제외

##### ■ 기업집단의 편입신고(시행령 제20조 제3항)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지정 이후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편입사유 발생 후 편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에 편입·통지한 것으로 간주
- 신고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공정거래법 제68조)

##### ■ 기업집단 편입신고 변동사유 발생기준

| 유형        | 기업집단 편입신고 기준   |
|-----------|--|
| 지분취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을 교부받은 날.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대금을 지급한 날</li> <li>•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li> <li>•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li> </ul> |
| 새로운 회사 설립 | 회사의 설립 등기일   |
| 임원겸임      |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
| 기 타       | 주요 주주와의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

▶ 기업집단 편입 신고서 내용

- 당해 회사의 명칭, 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현황
-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금액

■ 기업집단의 제외(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당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자사 간의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다음 요건을 갖춘 친족독립경영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3% 미만일 것(단 상장법인이 아닐 경우 10% 미만)
  -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일정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일 것(단, 상장법인이 아닐 경우 15% 미만)
  -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다만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이나 거래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해당 회사로서 요건을 갖춘 회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 기업집단의 예외 인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밖의 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법인(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을 것)
-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및 자회사로서 회사 설립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관계가 없는 회사

- 2010년 개정된 위 규정에 따라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인 (주)리스텍 비즈와 (주)메디엠이 2010년 8월부로 포스코기업집단에서 제외됨

■ 포스코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 포스코 및 자회사(34개사)

단위 : 억원, 2012. 8. 1 기준

| 회사명     | 자본금   | 업종          | 회사명     | 자본금 | 업종          |
|---------|-------|-------------|---------|-----|-------------|
| 포스코     | 4,824 | 철강재 생산과 판매  | 포스코ICT  | 685 | H/W, S/W    |
| 대우인터내셔널 | 4,892 | 도소매업        | 포스하이메탈  | 400 | Fe-Mn 제조판매  |
| 포스코에너지  | 2,333 | 발전업         | 승광      | 395 | 체육시설업       |
| SNNC    | 1,850 | 니켈 생산       | PNR     | 391 | HBI 생산, 판매  |
| 포스코건설   | 1,524 | 종합건설        | 포스코강판   | 300 | 칼라강판 제조, 판매 |
| 포스코특수강  | 1,300 | 특수강 제조 판매   | 포스텍기술투자 | 300 | 벤처투자        |
| 포스코P&S  | 900   | 철강재 판매 및 대행 | 포스코TMC  | 297 | 코아제조/판매     |

| 회사명       | 자본금 | 업종             | 회사명     | 자본금 | 업종            |
|-----------|-----|----------------|---------|-----|---------------|
| 포스코케미칼    | 295 | 내화물 제작판매       | 부산이앤이   | 137 |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운영 |
| 포스코플랜텍    | 270 | 정비용역업          | 포스코NST  | 94  | 철강 가공 제조업     |
| 포스코터미널    | 250 | 해상물류 유통업       | 포스에코하우징 | 69  | 스틸하우스 제작사공    |
| 성진지오텍     | 247 | 석유화학설비 제작판매    | 포스메이트   | 36  | 건물위탁관리        |
| 순천 에코트랜스  | 226 | 순천 소형경전철 건설·운영 | 포스코에이앤씨 | 36  | 설계 및 감리       |
| 포스코AST    | 223 | STS냉연 제조       | 포스워드    | 16  | 행정지원서비스       |
| 포스코엠텍     | 208 | 제품포장 대행        | 송도SE    | 13  | 청소, 주차 서비스업   |
| 포스화인      | 195 | 슬래그파우더 판매      | 포레카     | 10  | 광고물 제작, 광고 대행 |
| 포스코 경영연구소 | 190 | 조사연구           | 포스플레이트  | 3.8 | 철물가공, 창고업     |
| 엔투비       | 160 | 전자상거래          | 포스코이에스엠 | 100 | 이차전지용 소재제조업   |

■ 손회사(37개사)

단위 : 억원, 2012. 8. 1 기준

| 회사명      | 자본금 | 업종            | 회사명        | 자본금  | 업종           |
|----------|-----|---------------|------------|------|--------------|
| 메타폴리스    | 528 | 복합단지 건설, 운영   | 포스칼숨       | 30   | 탄산칼슘 제조판매    |
| 포스코LED   | 300 | LED조명기구 제조 판매 | 리코금속       | 23   | 폐자원 수집처리, 판매 |
| 포스코엔지니어링 | 255 | 건축/토목엔지니어링    | PH-P       | 20   | 부동산 개발, 임대업  |
| 군산 SPFC  | 150 | 산업기계부품 제조     | 마포하이브로드파크  | 21   | 지하주차장 건설운영   |
| 포항 SRDC  | 149 | 철스크랩/철강재 가공   | 신안에너지      | 18.5 | 발전소 건설, 운영   |
| 우이트렌스    | 125 | 민간투자사업 시행     | 나인디지털      | 18   | 비철금속 제조판매    |
| 포스브로     | 113 | 영상, 음향기기업     |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 14.3 | 부동산관리        |
| 메가에셋     | 100 | 부동산 임대/매매     | 플랜트이에스티    | 10   | 플랜트 시운전 용역업  |
| 광양 SPFC  | 100 | 철강재 가공 판매     | 송도국제스포츠클럽  | 10   | 골프장 운영업      |
| 포뉴텍      | 100 | 에너지 기술용역      | 바시스산업      | 5    | 전기 공사업       |
| 푸른김포     | 85  |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 포스메이트인슈어보험 | 3    | 보험중개         |
| 포항 SPFC  | 50  | 철강재, 부산물 판매   | 다코스        | 2.5  | 자기부상열차 신호기   |
| 안정지구사업단  | 50  | 산업단지 조성개발     | 포스하이알      | 10   | 고순도알루미늄사업    |
| 뉴알텍      | 46  | 알루미늄 압연       | 피에스씨에너지글로벌 | 0.5  | 발전시설 운영      |
| 포스그린     | 40  | 소석회 제조판매      | 탐라해상풍력발전   | 5.9  | 풍력발전사업       |
| 포항연료전지발전 | 40  | 발전영업          | 블루오앤엠      | 10   | 환경기초시설 운영    |
| 포스코이앤이   | 215 | 사업시설 유지관리     | 청정포항       | 34   | 하수관거 정비사업    |
| 수원그린환경   | 32  | 하수슬러지 처리업     | 엠씨엠코리아     | 0.5  | 광산개발업        |
| 성진이앤티    | 1.7 | 모듈설계          |            |      |              |

새로운 회사 설립시 업무처리 절차

포스코와 자산총액 500억원인 회사 A와 자산총액 250억원인 회사 B와 함께 아래의 지분 구조로 새로운 회사 '월드컵'을 설립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 포스코 | A(500억원) | B(250억원) |
|-----|----------|----------|
| 70% | 20%      | 10%      |

기업결합 상대 회사

A와 B사 모두  
기업결합 상대 회사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여부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A/B사의 자산총액이 모두  
200억원 이상이므로 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시기

회사 설립 결정일로부터  
주금 납입기일(완료일) 사이에  
신고(기업결합과)

신고 이후 해야할 일

포스코가 30% 이상  
최대출자이므로  
설립 등기일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포스코 기업집단  
편입 신고(기업집단과)

Q&A

- Q** 기업집단이란 무엇이며, 대규모기업집단은 어떻게 지정되는가?  
**A**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포괄하여 칭하는 용어임
- Q** 기업집단과 계열회사의 차이는?  
**A**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고, 계열회사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 Q** 우리 회사가 지분을 전혀 보유치 않은 특정 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하는가?  
**A**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예를 들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함
- Q**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양측의 이사수가 동일하고 국내 회사가 대표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회사의 기업집단 편입 여부는?  
**A** 외국인인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계열회사의 편입요건 중 하나인 양측의 이사수가 동일하고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열편입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국내 회사의 기업집단에 편입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신고를 해야 한다.
- Q** 등기임원이 5명인 어떤 회사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 1명의 임원을 임명하였으나, 임명한 임원이 대표이사일 경우 기업집단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A** 대표이사를 우리 회사에서 임명하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다면 우리 계열회사가 아님

심결례

- 사 례 ① /** (주)대우 및 (주)대우의 동일인 김우중은 태천개발(주)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기업집단에 편입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동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 심결요지 /** (주)대우 아산사업단 이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정태화가 1996년 3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태천개발(주)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1997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겸임하였으며, (주)대우 아산사업단 부장으로 근무하던 이광석 및 (주)대우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권혁팔은 1996년 3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각각 태천개발(주)의 지분 8%를 보유하고, 권혁팔은 태천개발(주) 감사를 1996년 3월부터 1998년 4월까지 겸임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주)대우의 임직원이 태천개발(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동사의 임원을 겸임한 1996년 3월부터 피심인 김우중은 계열회사 임직원을 통해 태천개발(주)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임원겸임 등을 통해 동사의 경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제재내용 /** 【고발】 (주)대우 기업집단의 동일인 김우중과 (주)대우를 고발조치

---

- 사 례 ② /** 효성'의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아들 또는 계열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주) 등 총 7개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함
- 심결요지 /** 공정위는 2009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효성측이 3개 미편입계열사를 자진신고한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4개 미편입 계열사를 추가 확인하여 효성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 완료하고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함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조치
- 제재내용 /** 【고발】 (주)효성 기업집단의 동일인 조석래를 검찰에 고발조치

### 3.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제도

#### 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시행령 제17조)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
  -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단, 당해회사의 자산총액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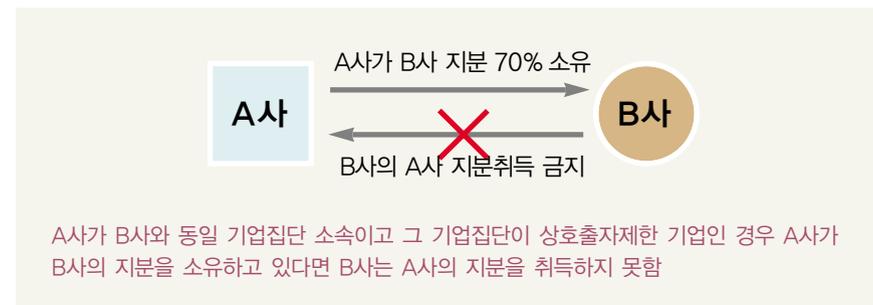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 또는 당해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제14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 나. 상호출자의 금지(공정거래법 제9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다음의 사유에 의한 출자는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받지 않음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개월 이내에는 양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됨(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적용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함(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통지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면 지정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2년 간(상호출자 금지 1년 간, 채무보증 금지 2년 간) 적용이 유예됨(공정거래법 제1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다. 상호출자제한 위반시 제재(공정거래법 제15, 16, 17, 18, 66조)**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불가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상호출자, 순환출자의 비교

| 구 분   | 상호출자                                     | 순환출자  |
|-------|--|---|
| 형태    | A사 ↔ B사                                  | A사 → B사 → C사 → A사   |
| 설명    |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는 형태          | A사가 C사에 출자하고 C사가 B사에, 다시 B사가 A사에 출자하는 형태                          |
| 특징    | 기업집단 간의 상호출자는 금지되나, 비계열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음 | 현재 국내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의 대표적 형태로 소액의 자본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 |
| 위반 여부 | 공정거래법 위반                                 | 법 위반 아님   |

▶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이유

상호출자는 기업 간에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지배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함

**라.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
  -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으로 다음과 관련된 보증
    -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채무에 대한 보증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유보금환급보증 · 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 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마. 채무보증의 개념(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 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해외현지법인 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 간 보증도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계열회사 중 금융· 보험 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은 제외

▶ 채무보증제한 탈법행위의 유형

-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보증)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기업집단 간 교차 채무보증)
- 기타 이면보증 행위 등

### 바. 채무보증제한 위반시 제재조치(공정거래법 제16조, 제17조, 제66조)

- 관련 채무보증의 해소 등 시정명령
-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Q&A

- Q**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상호출자는 계열회사 간 직접적인 상호출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순환적인 상호출자에도 해당되는가?
- A** 공정거래법 제9조에 의해 금지되는 상호출자는 계열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순환출자에 의한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고 있음
- Q**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규제대상에 해당되는가?
- A** 공정거래법 제10조의 2에 의한 채무보증금지규정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해외 계열사로부터의 채무보증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Q**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련하여 계열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채무보증에 해당되는가?
- A** 공정거래법 제10조의 2에 의한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인적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담보제공(물적 보증)은 법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Q** A사, B사, C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A사가 C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사와 C사가 지분을 공동 출자하여 B사를 설립하였다면 상호출자제한 위반여부?
- A**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본 사항은 상호출자제한 위반이 아님

**Q**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계되지 않는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도 금지되는가?

**A**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에 의한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계되지 않은 보증(외상매입 관련 보증 등)은 법상 규제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해외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법상 규제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Q**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의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경우 동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또는 발행이 완료된 후 유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A**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보증을 말함. 여기서 말하는 국내 금융기관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도 포함하므로 계열회사가 보증한 사채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인수한 경우도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심결례**

**사례 1 /** 에스케이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2000년 7월 31일 현재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 주식 71,220,193주(취득가액 기준 : 3,916억원)를 소유하고 있고, 계열회사 에스케이글로벌(주)는 에스케이주식회사 주식 14,699,169주(취득가액 기준 : 1,749억원)를 소유하고 있음. 에스케이글로벌(주)가 2000년 7월 31일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에스케이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 주식 71,220,193주를 대신하여 에스케이글로벌(주)로부터 에스케이글로벌(주) 주식 37,205,428주(3,916억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함

**심결요지 /** 에스케이주식회사는 2000년 7월 31일 에스케이에너지판매(주)와 에스케이글로벌(주)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에스케이글로벌(주)와의 상호출자를 해소 시한인 2001년 1월 31일까지 해소하기 위하여 에스케이글로벌(주)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소시한 이후에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유하여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에스케이주식회사는 에스케이글로벌(주)와의 상호출자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  
**【과징금 부과】** 11억4,300만원

**사례 2 /** 현대자동차(주)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로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됨. 현대자동차(주)는 1999년 8월 16일 인천지방법양수신청으로부터 평택항 일반부두 일부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개축하여 자동차 전용선 접안시설 설치를 허가받았음. 인천지방법양수신청은 본 시설물을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17억4,600만원)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허가함. 이후 현대자동차(주)가 기아자동차(주)에 자동차 접안시설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 인가를 신청하여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음.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주)가 연대보증한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위반

**심결요지** / 현대자동차(주)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1년 8월 13일 현대자동차(주)가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기아자동차(주)에 대하여 행한 연대보증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에 해당되고 본 채무보증이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사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임

**제재내용** / **【과징금 부과】** 1억7,500만원

**사 례 ③** / 동아건설산업(주)는 계열사인 대한통운(주)가 1,190,816주의 동아건설산업(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년 6월 24일 대규모기업집단 동아의 동일인 최원석으로부터 대한통운(주)의 주식 1,162,090주를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 또한 대한통운(주)가 1999년 7월 27일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한통운(주)의 주식 670,914주(취득가액 35억5,600만원)를 취득·소유

**심결요지** / 동아건설산업(주)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동아에 소속된 회사로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대한통운(주)의 주식을 취득·소유하였으므로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동아건설산업(주)는 2000년 4월 15일 현재 계열회사인 대한통운(주)와의 상호출자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함  
**【과징금 부과】** 8,000만원

**사 례 ④** / 동양메이저(주)가 동양매직(주)의 주식 46.4%를 보유하고, 동양매직(주)가 한일합섬 주식(1.05%)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5월 13일 한일합섬이 동양메이저(주)에 흡수 합병되어 동양메이저(주)와 동양매직(주) 간의 상호출자가 발생

**심결요지** /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서 상호출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당해 주식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동양매직(주)와 동양메이저(주)는 이를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11월 12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동양매직(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명령  
**【과징금 부과】** 1억7,300만원

▶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 상호출자금지(1년 이내 해소)
- 채무보증제한(2년 이내 해소)
- 금융·보험계열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비상장회사만 해당)
- 주식소유 현황/채무보증 현황 신고의 의무
-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17조의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 적용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해당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됨
  -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란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지는 않으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 당해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 관련자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 계열사의 임원 등이 포함됨(시행령 제3조 제1호)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나. 적용대상회사 및 대상거래

- 법 적용대상회사 :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포스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적용대상거래 :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자금거래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음)
  - 유가증권거래는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
  - 자산거래는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 ※ 단, 상품 및 용역거래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제외(포스코 기업집단)
- 적용대상거래의 판단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간주
  - 동일 거래상대방과 같은 날 약관에 의한 여러 건의 기업어음거래가 동일 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 하나의 차입행위로 보아 기업어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의무 여부 판단
  - 계약서상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함

### • 대규모내부거래의 예외 조항

- 이전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 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없는 행위

####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주식을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장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 간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 체결

### 다. 거래금액의 산정

-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 한도액으로 한다.
- 자산 임대인 경우 : 연간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연간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text{보증금} \times \text{국세청 고시 이자율}) + (\text{월임대료} \times 1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한 이자율 : 4.0% (2012. 2. 28 개정)

### 라. 공시시기 및 절차

#### • 공시시기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함(단, 비상장사 또는 비등록법인인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 공시하여야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함 (7일의 기간 계산은 비영업일을 포함하며, 비영업일은 당해 회사의 비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공시절차

-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마.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신고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다만, 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해야 함

### 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단가 등의 20% 이상의 변경 등

### 사. 공시제도의 특례 규정

####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해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에 의하여 행하는 금융거래행위를 말함

####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계열사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
- 전환사채를 매입한 계열사가 중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의한 사모사채의 인수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특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공시대상회사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 동안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하고 공시할 수 있다.

### 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기본금액

| 이사회 의결 여부          | 위반유형                                     |              |            | 기본금액<br>(단위 : 만원)  |
|--------------------|--|--------------|------------|--------------------|
|                    | 공시 여부                                    | 공시기한 준수 여부   | 공시사항 누락 여부 |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5,000              |
|                    | 공시한 경우                                   |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누락한 경우     | 2,000              |
|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 경우 | 500 <sup>주1)</sup> |
|                    |  |              | 누락한 경우     | 5,000              |
|                    |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              |            | 500 <sup>주1)</sup> |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7,000              |
|                    | 공시한 경우                                   |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          | 5,000              |
|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 경우 | 5,000              |
|                    |  |              |            | 누락한 경우             |
| 허위로 공시한 경우         |  |              |            | 7,000              |

※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주1)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 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기준금액

-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거래 금액            | 적용 비율(%) |
|------------------|----------|
| 100억원 이상         | 100      |
|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90       |
| 6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 80       |
| 4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 70       |
|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 60       |
| 20억원 미만          | 50       |

###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의 가중 또는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x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x 감면비율의 합계

#### • 가중 조정사유 및 비율

-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과거 3년 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5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중복위반 횟수에 따라 6회 처분부터 1회당 10%씩 가산)

#### • 감면 조정사유 및 비율

-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 계열 금융 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한 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 Q&A

**Q** 양 거래당사자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본 규정에 의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A**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모두 해당됨

**Q** '특수관계인을 위하여'의 구체적 의미는?

**A**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CP 등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계열사가 인수하는 경우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비계열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를 위한 거래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됨

**Q** 상호출자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회사가 편입일 이전에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되는지?

**A**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편입 통보일로부터 발생

**Q**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A** 만기가 도래한 거래의 연장은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발행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후 이를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50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A**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Q**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과 50억원 이상의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A**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공시대상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이 2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품·용역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하고 공시해야 하나, 동일인이 자연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모든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면제

**Q** 공시대상이 되는 기준이 '자본금의 5%'에서 자본금의 기준이 납입자본금인지 아니면 자기자본인지?

**A** 대규모내부거래의 규모의 기준에서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납입자본금임

**Q**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비영리법인에게도 부과되는지?

**A** 비영리법인은 공시의 의무가 없음. 다만, 이와 거래하는 계열회사는 기준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음

**Q** 부동산 매매계약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가?

**A**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음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임대차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A**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함

**Q** 1일 총거래금액이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미만일 경우(☑ 4월12일 거래금액 40억원, 4월 14일 거래금액 10억원)에도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않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필요성이 없는지?

**A**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래는 모두 건별 기준임.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동일목적을 위한 동일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Q** A회사가 계열사 B에 서울, 경기, 부산 3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1년 임대할 경우 거래금액 산정기준은?  
(공시규정상 임대료가 서울30억원, 경기40억원, 부산30억원, A, B사 모두 자본 총계가 1,000억원 이라고 가정)

**A** 거래상대방이 같더라도 임대목적물, 계약기간 등 거래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임대 목적물별로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됨. 상기와 같은 경우 건별 50억원 미만이므로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됨

**Q** 계약조건이 자동연장되는 경우와 계약의 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각각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해당 여부?

**A** • 자동연장되는 경우  
- 새로운 거래가 발생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 계약의 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 특정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 특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대로 두게 되어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Q**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에서 자본총계와 자본금의 기준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총계와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A**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Q**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A**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Q** 부동산매매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이후, 추가적으로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하는지 여부?

- A** 당초 의결·공시한 행위와 추가로 발생한 행위 간에 거래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거래대상이 동일한 경우(예) 동일 토지의 거래금액만 변경)에는 추가 거래금액이 당초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다면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함
  - 그러나, 거래대상이 다를 경우(예) 당초 계약분 토지의 인접토지거래)에는 추가거래는 당초 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행위이므로 추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하루에 발생하는 총거래금액인지 아니면 1회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인지의 여부?

**A** 거래금액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1회의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임. 다만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1회 거래하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 거래로 봄

**Q** 당사는 포스코의 상법상 자회사입니다. 당사와 포스코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A** 포스코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이므로 포스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 간의 상품·용역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Q**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A** 상품·용역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Q**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는 상품·용역거래인지 자산거래인지?

**A**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콘도나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며,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거래한 상대방 계열사는 자산거래에 해당

 **심결례**

**사 례 ① /** (주)포스코건설은 2001년 7월 24일 계열회사인 (주)포스코로부터 436억원에 부동산을 임차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심결요지 /** (주)포스코건설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 【과태료 부과】 7,000만원

**사 례 ② /** 케이파워는 SK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2004년 12월 30일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주식회사(현 에스케이에너지)로부터 2,299억원의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이에 대해 2004년 12월 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동 이사회 의결내용을 공시하지 않음

**심결요지 /** 케이파워와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여기에는 특수관계인의 담보 제공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 내용을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음

**제재내용 /** 【과태료 부과】 5,000만원

**사례 ③ /** 아시아나항공(주)는 2003년 7월 29일 계열회사인 금호종합금융(주)로부터 115억원의 기업어음을 할인 발행하였으며, 2003년 8월 29일 및 2003년 9월 30일 각각 만기어음을 상환하지 않고 기업어음을 재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수수 없이 이를 연장하였음

**심결요지 /** 기업어음 할인금액을 만기상환치 않고 이를 재발행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이 또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하나 이를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 【과태료 부과】 9,800만원

**사례 ④ /** 금호생명보험(주)는 2003년 4월 18일로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1조 5,882억원을 91회에 걸쳐 하나기업금융(주) 등 10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거나 콜거래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고 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호석유화학(주), 금호산업(주), 아시아나항공(주) 및 금호렌터카(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토록 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우회적으로 제공하였음

**심결요지 /** 금호생명보험(주)는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금호석유화학 등 4개사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100억원 이상의 자금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 【과태료 부과】 10억원

**▶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특히 주의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업무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입니다.

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는 제도로써 우리회사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인 포항공대, RIST,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교육재단과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열사의 증자 또는 감자시에도 본 사항에 해당됨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②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비상장회사 등은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해 변동사항이나 결정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회사는 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우리회사의 계열사 중 기업공개가 되지 않은 회사는 본 제도에 따라 각종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공개 계열사

포스코엠텍(1997. 11), 포스코CT(2000. 11), 포스코캠텍(2001. 11)

포스코강판(2002. 8), 성진지오텍(2007. 11)

### 5.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가.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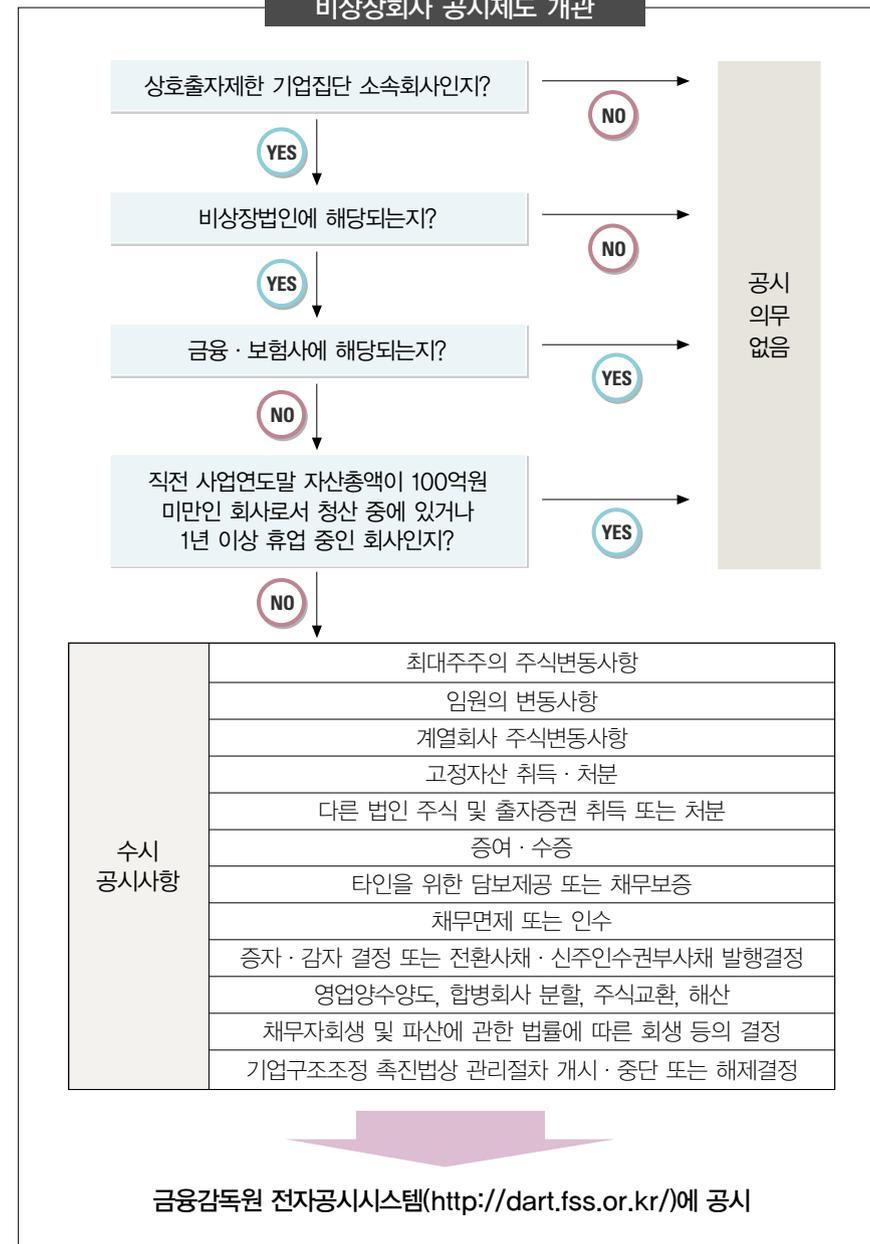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공시를 하여야 함

- 공시대상회사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단, 금융·보험사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로부터 공시 의무가 부과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공시 의무가 없음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부터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된 날로부터 공시 의무가 면제

#### ▶ 금융·보험사는 비상장회사의 공시제도 적용을 제외

- 비상장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업 법규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음
  - 정기공시 : 영업 보고서 등
  - 수시공시 : 거액 손실, 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당해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상장회사 공시제도 개관



나. 공시대상 업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0)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 공시항목             | 공시기준일 | 공시기준               | 비고                   |
|------------------|-------|--------------------|----------------------|
| 최대주주의<br>주식보유 변동 | 변동일   | 변동비율 1% 이상         | 최대주주 중 구성원<br>변동도 공시 |
| 임원의 변동           | 등기일   | 변동 내용<br>(신임/해임 등) | 등기부등본 기준             |
| 계열사<br>주식보유 변동   | 변동일   | 변동비율 1% 이상         | 변동사유는 불문             |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사유는 불문함
  - 액면분할 등에 의해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현황 및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
  -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최대주주의 주식수나 지분을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주주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공시
  - 최대주주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

▶ 주식보유 변동의 공시기준일(변동일)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 주권을 교부받은 날
-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 회사지분 양수시 : 지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 변동이 확정되는 날

- 임원의 구성 현황 및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임원이 중임된 경우에는 변동이 아니므로 공시의무가 없으나,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예) 이사가 감사로, 이사가 대표이사로)에는 임원의 변동이므로 공시해야 함
-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국내 계열회사에만 한정되나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분변동이 아닌 타법인 지분변경사항에서 공시해야 함

■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공시항목                      | 공시기준일                 | 공시기준                       | 비고                                   |
|---------------------------|-----------------------|----------------------------|--------------------------------------|
|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이사회<br>(대표이사)의<br>결정일 | 자산총액의 10%<br>(납입자본금의 10%※)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br>모두 포함(☑) 건설 중인 자산 |
| 타 법인 주식 및 출자<br>증권의 취득·처분 |                       | 자기자본의 5%                   | 국내 계열사 외 모든 회사<br>(해외계열사 포함)         |
| 증여 또는 수증                  |                       | 자기자본의 1%                   | 무상으로 타인과 재산을<br>주고 받는 모든 행위          |
| 타인을 위한 담보<br>제공 또는 채무보증   |                       | 자기자본의 5%                   | -                                    |
| 채무의 변제 인수                 |                       | 자기자본의 5%                   | -                                    |
| 증자 또는 감자                  |                       | 결정 여부                      |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공시<br>해당 여부 확인            |
| 전환사채·신주인수<br>권부 사채발행      |                       | 결정 여부                      | 추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br>사채에 한정함            |

※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고정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항목이 포함됨(건설 중인 자산, 투자유가 증권도 포함됨)

- 공시기준일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이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수년에 걸쳐 지급되는 공사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시대상이 아님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 법인(계열회사 제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1% 이상의 증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공정거래법 10조의2에서 말하는 채무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채무보증인 사항은 모두 포함됨
  - 따라서, 해외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담보제공일 경우에도 공시대상이 됨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적용기준

-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  

$$\text{자기자본} = \text{자산총액} - \text{부채총액} \pm \text{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또는 자기자본(납입자본금)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12월 결산법인 : 매년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누계 산정

- 종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해당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시사유가 됨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모든 사채가 아니며, 추후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에 한정됨

■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공시항목                                | 공시기준일                 | 공시기준 | 비고                               |
|-------------------------------------|-----------------------|------|----------------------------------|
| 영업의 양도·양수                           | 이사회<br>(대표이사)의<br>결정일 | 결정여부 | 상법 제374조에 근거                     |
| 주식교환 및<br>주식 이전                     |                       | 결정여부 | 상법 제360조2의 규정과<br>상법 제360조15에 근거 |
| 해산사유 발생,<br>회생절차, 관리절차의<br>개시, 중단 등 |                       | 결정여부 | 상법 제517조에 근거                     |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또는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
-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폐지 및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중단·해제가 결정된 때 그 결정사항

### 다. 공시시기

#### ■ 공시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 까지 공시
- 기간 계산은 사유발생 익일부터 하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함

#### ■ 사유발생일 기준

- 소유지배구조 관련 '변동이 있을 때' 란
  - 주식을 교부받은 날,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권리가 이전되는 날
  -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 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 재무구조 관련 '결정이 있을 때' 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

※ 공시시기의 계산은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

### 라. 공시방법 및 절차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공시양식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 준용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 마. 위반시 제재

-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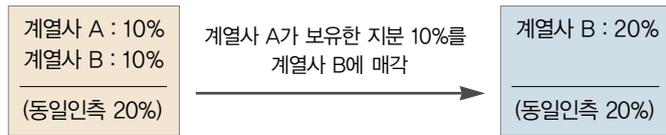
### Q&A

- Q** 당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으로서 당사 주주의 지분구성이 (국내 A법인 50%, 국외 B법인 46%, 국외 C법인 4%)에서 (국내 A법인 50.1%, 국외 B법인 49.9%)로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여부는?
- A** 최대주주인 A사의 주식보유 비율이 0.1% 변동되었으므로 공시의무가 없음
- Q**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공시에서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은 어떻게 하는지?
- A** 비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공시양식에는 자사주로 표시하여 기재
- Q** 증자 또는 감자, 주식 액면분할 등을 통하여 주식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최대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공시대상인지?
- A** 공시규정에서 “.....보유주식 비율이 .....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주식 비율(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공시대상이 아님
- Q** 추가적인 주식매입이나 매각이 없이 증자 또는 주식소각 등으로 인하여 보유지분이 1% 이상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공시하여야 하는지?
- A** 어떤 사유에서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임
- Q** 등기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공시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A** 그 계열사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 최대주주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

**Q** 최대주주 보유주식 변동 공시와 관련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가 포함 되는지?

**A** 동 공시사항은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구성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발행주식 총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됨

**Q** 최대주주의 총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 간에 아래와 같이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A**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지분율(40%)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최대주주 전체의 지분율 합계에 변동이 없을지라도 최대주주 구성원이 변동되거나, 최대주주 구성원 간 지분율이 1% 이상 변동시에도 공시대상임

**Q** 총 자본금의 0.01% 주식을 유상매수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지?

**A** 매수하는 주식이 자기주식, 계열회사, 타 법인 주식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사항이 달라짐

- ① 자기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때는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
- ② 계열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계열회사 주식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때는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 공시
- ③ 타 법인 주식을 자기자본의 5% 이상 매수할 때에는 '타 법인의 주식 취득' 공시

**Q** 공시대상 중 임원의 변동과 관련하여 공시기준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시 공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임원의 변동없이 중임(연임)하는 경우에도 공시하여야 하는지?

**A** 중임(연임)하는 경우 임원의 변동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Q** 임원변동의 공시양식을 보면 변경 전 란에 '해임일(등기일)' 과 변경 후 란에 '선임일(등기일)'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A** 변동이 없는 임원의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똑같이 임원명을 기재하고 변경 후 란의 선임일과 등기일을 기재하면 됨

**Q**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 공시에서 계열회사이면서도 해외법인인 경우 (☑ 중국 현지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A**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에서 '계열회사'는 국내법인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 변동 현황 공개)만 해당되고 해외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의 공시대상이 아님

**Q** A사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B)(외국인이 51% 소유)의 주요 주주가 변경될 경우 A사는 공시의무가 있는지? B사는 당연히 공시의무가 있을 것인데 A사도 공시의무가 있는지?

**A**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지분이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A사는 '계열회사(B사)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B사도 '최대주주(A사)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Q** A사의 최대주주 값이 계열회사인 A와 B, 계열회사가 아닌 C사의 주식을 「A사 (20%), B사(20%), C사(10%)」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값이 보유한 주식에 변동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A사의 주식 10% 매각, C사 주식 5% 매입) 동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지?

**A** 본 건은 A사의 최대주주인 값이 10%의 지분을 매각하였으므로 A사는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값이 계열회사가 아닌 C사의 주식 5%를 매입한 것은 공시대상이 아님

**Q**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에서

- ① 지분율 1% 이상의 변동을 말하는지?
- ② 계열회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지분율이 변할 경우 공시대상인지?
- ③ 증자나 감자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지분율의 변화가 있으면 공시대상인지?
- ④ 지분율의 변화없이 증자나 감자에 참여할 경우 공시대상 여부?

**A** ①과 관련하여 공시양식에서 주식수 밑에 지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과 '지분율 1%'는 동일한 개념임

②, ③과 관련하여 주식매매, 감자, 증자 등에서 변동사유는 불문하고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대상임

④와 관련하여 액면분할, 증자, 감자 등 주식수가 변경이 생기더라도 지분율에 변동이 없을 경우는 공시대상이 아님

**Q** A사(비상장사)와 B사(비상장사)가 합병, B사가 소멸되는 경우 A사와 B사가 동시에 보유하던 혹은 B사가 보유하던 C사 주식과 관련하여 공시대상은?(A, B, C는 계열회사)

**A** A사와 B사 모두 합병결정 공시, 합병후 A사는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 공시(단, B사는 계열 제외일로부터 공시의무 없음)

**Q** 계열사 주식보유 변동 공시와 관련하여 보유주식 총수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A** 주식보유 변동 현황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됨  
 ※ 공시양식 작성시 주식의 종류별로 별도의 칸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음(공시양식 참조)

**Q** 중요 공시사항 중에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을 공시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A**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를 말함.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도 포함됨

**Q**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건설공사비도 비유동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공시대상인지?

**A**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은 공시대상임. 따라서 취득중인 자산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임

**Q** 비유동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단일 건의 기준은?

**A** 단일 건이란 계약 건(이사회 결정 건)으로 보아야 할 것임. 동일인물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각의 자산별로 계약(이사회 결정)을 한다면 각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는 공시관련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됨

**Q** 건설중인 공사비로 몇 년간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 결산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공시 기준일은?

**A** 취득에 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권한 있는 자의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 기준일임. 본 건의 경우 최초 건설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권한 있는 자의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기준일임  
 - 단, 최초 공사금액과 증액된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다시 결정(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동 결정일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를 공시하여야 함

- Q** 비상장회사의 등기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공시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A** 최대주주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 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하며, 등기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여 최대주주의 주식비율 변동이 1%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함
- Q** 공시사항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에서 7일 간의 기간에 비영업일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는가?
- A** 7일 간의 기간에 비영업일이 있을 경우 이는 7일에 포함됨. 단, 공시기간의 마지막 날이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의 비영업일이라면 다음날까지 신고를 하면 됨
- Q**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이라 할 때 최대주주란?
- A**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 Q** 연도 중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회사의 공시의무 발생 일은?
- A**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발생함
- Q** 유형자산이 최초 취득시에는 자산총액의 10%에 미달 되어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가치가 공시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시대상인지?
- A**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사유의 발생일임.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 Q**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은 필요 없고, 공시만 하면 되는지요?
- A** 이사회 의결은 할 필요 없으며, 비상장 공시규정에서 적시된 공시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시하면 됨
- Q**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공시대상 여부?
- A** 단기매매 목적이라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됨
- Q** 현금배당도 공시대상인지?
- A** 공시사항이 아님
- Q** 담보로 백지어음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금액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 A** 담보로 받는 사람은 사실상 채권금액 이상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시양식에 기재할 경우 백지어음임을 명시하고 채무·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적시하면 될 것임
- Q** 최초 계약시 공시대상 금액이 아니었으나 정산시 공시대상 금액이 된 경우 공시대상인지?
- A** 계약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이 있는 후 동계약에 대해 정산할 때 거래금액이 변동되어 공시기준 금액에 해당하였다면 공시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심결례

**사 례 ① /** 포스코건설은 2006년 4월 18일 해외 자회사인 IBC 등 3개사가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39억원(자기자본 9,298억원의 10.1% 해당)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일이내인 2006년 4월 25일까지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4일 공시함으로써 공시 9일을 지연

**심결요지 /** 포스코건설은 시행령 제17의10(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따른 공시대상 회사로서 채무보증 결정사항을 지연공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3을 위반

**제재내용 /** 【경고】

**사 례 ② /** 금호생명보험(주)는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1조 5,882억원을 91회에 걸쳐 하나기업금융(주) 등 10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거나 콜거래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고 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호석유화학(주), 금호산업(주), 아시아나항공(주) 및 금호렌터카(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토록 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우회적으로 제공하였음

**심결요지 /** 금호생명보험(주)는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금호석유화학 등 4개사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100억원 이상의 자금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 【과태료 부과】 10억원

▶ 포스코그룹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실태 점검결과

(대상기간 : 2007년 4월 ~ 2011년 5월)

• 총 5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음(5개사, 과태료 395만원)

| 회사명                    | 건수 | 과태료(만원) | 위반내용         |
|------------------------|----|---------|--------------|
| 포스화인                   | 1  | 81      | 임원 변동사항 지연공시 |
| 포스하이메탈                 | 1  | 78      | 임원 변동사항 지연공시 |
| 포스코이앤이                 | 1  | 100     | 임원 변동사항 지연공시 |
| 포스코 자회사 : 3개사 3건 259만원 |    |         |              |
| 안정지구사업단<br>(성진지오택 자회사) | 1  | 40      | 임원 변동사항 지연공시 |
| 메타폴리스<br>(포스코건설 자회사)   | 1  | 96      | 임원 변동사항 지연공시 |

## 6.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 가.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4)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연 1회 공시토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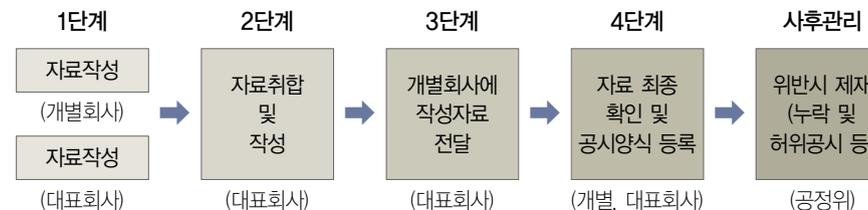
#### ■ 도입배경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2009년 3월 3일 국회통과)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와 기존의 공시·공개제도의 차이점

-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공개하는 제도와 중복되지 않나요?
  - 정보공개제도는 출자 현황 등 소유지배에 관련된 정보만을 공정위가 공개하는데 비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는 소유지배구조 외에 해외계열사 현황, 거래 현황 등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차이
- 기존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등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존의 공정위 공시제도,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등은 개별회사가 개별 거래건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함
-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 연결재무제표는 회사 간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고, 결합재무제표는 2009년의 경우 작성 기업집단이 14개에 불과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음

### ■ 공시업무 PROCESS



### ■ 공시의무 대상 회사

| 구 분     | 대표회사                          | 개별회사                           |
|---------|-------------------------------|--------------------------------|
| 해당회사    | (주)포스코                        | 포스코 기업집단 소속<br>국내 계열사          |
| 공시사항 작성 | 자기회사 관련 내용을 작성                |                                |
| 공시내용    |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br>계열사로부터 취합한 내용 |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br>대표회사의 공시를 참조공시 |

※ 대표회사 : 공시대상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대표로 계열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



**나. 공시내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1)

■ **공시양식 1~6**(연 1회)

| 공시항목      | 공시주체                       | 공시내용                                     | 공시기준일                 | 공시빈도 |
|-----------|----------------------------|--|-----------------------|------|
| 회사개요      | 각각 개별회사                    |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연 1회 |
| 재무 현황     |                            | 재무제표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 |                       |      |
| 손익 현황     |                            |  |                       |      |
| 해외계열사 현황  | 해외계열사에 최다 출자한 개별회사         | 해외계열사 일반 현황 (회사명, 업종, 소재지)               |                       |      |
| 계열회사 변동내역 | 계열편입 : 편입회사<br>계열제외 : 대표회사 | 국내 및 해외계열사 변동 내역을 공시                     | 전년 4. 1. ~ 당해연도 4. 1. |      |
| 임원 현황     | 개별회사                       | 등기임원(성명, 직위, 등기일, 경력 등)                  | 당해 4. 30 기준           |      |

※ 계열회사 변동내역은 공시기한 중 변동된 계열회사만 작성

■ **공시양식 7**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등의 운영 현황**(연 1회)

• 이사회 운영 현황

| 계열 회사명 | 이사회 구성원명 | 이사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참석수  | 사외이사 총수  |
|--------|----------|-----------------|---------------|-------------|-----------|----------|
| 회사명    | 위원이름     | XXXX.<br>00. 00 | 0000<br>설립의 건 | 가결 or<br>부결 | 참석한<br>인원 | 전체<br>인원 |

- 이사회 내 위원회 : 상법 제393의2조에 따른 위원회(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에 한하여 기재
-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운영 현황 : 정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란에 O, X로 표시

■ **공시양식 8·9 : 소유지분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공시대상의 소유지분 현황
- 공시기준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 매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한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지분율 계산법**

- 보통주 지분율 = (보유 보통주수/총 발행 보통주 주식수) × 100
- 우선주 지분율 = (보유 우선주수/총 발행 우선주 주식수) × 100

※ 동일인 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동일인 측의 주식소유 상세 내역을 함께 공시하고 자기 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자기 주식이라고 표시

■ **공시양식 10 :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개별회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보유 현황(상법상 회사만 해당)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

■ **공시양식 11~12 : 자금차입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해당분기 중 발생한 순수 자금차입약정 등을 통한 차입금을 기재  
(제외대상 : 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가수금, 제품,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화단기 차입금, 콜자금, 만기 7일 이내의 증권 금융 차입)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사이의 차입금

※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 전 분기에 30억 차입 후 당분기에 연장 → 30억만 기재
- 여신한도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

※ 차입금을 분기중에 상환한 경우

- 2011년 2분기 동안 100억 차입 후 30억 상환 → 100억 기재

※ 당좌차월의 잔액은 자금 차입 현황과 당좌차월 약정한다 두 양식에 실제 분기말 잔액만 기재

### ■ 공시양식 13~14 : 유가증권 거래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해당 분기 중 발생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사이의 매도가(장부가액)

#### ※ 유가증권이란?

-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단 7일 이내의 기업어음은 제외

※ 유상증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 공시양식 15 :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나누어 기재  
(금융사 = 영업수익)  
※ 양식의 전체 금액의 합계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일치해야 함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사이의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

### ■ 공시양식 16 : 계열사 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용 (상장사는 분기 1회, 비상장사는 연 1회)

- 공시대상 :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와의 거래내역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 공시대상이 되는 개별회사와의 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별 금액이 작성회사 전체 매출액의 5%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인 경우는 합산하여 기재 가능  
\* 사업기간 : 상장사는 사업분기, 비상장사는 사업연도

### ■ 공시양식 17~18 : 특수관계인과 기타 자산거래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공시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의 거래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사이에 계열회사 등에게 매도(임대, 리스 포함)한 금액을 처분가액 기준으로 공시

### ■ 공시양식 19 : 계열회사 간 채권·채무잔액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실물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금금, 보증금 잔액(기타 자산의 임대보증금)
  - 금융채권 : 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  
※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 공시기준 : 채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보유한 채권 잔액

### ■ 공시양식 20 :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되는 채무보증과 제한이 되지 않는 채무보증
- 공시기준 : 보증회사가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존재하는 채무보증 금액

#### ※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사 제외)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무보증'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으로 규정
  - \*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
-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라 함

※ 계열사 간 채무보증시에는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되는 채무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공시양식 21 : 계열사 간 담보제공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내역

#### ※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 채무보증은 인적담보를 의미하며 담보제공은 물건담보와 예금담보 등 물적담보를 의미함

### ■ 연도중 편입 제외된 경우

- 편입통지일, 계열 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
-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계열 편입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기한일까지 해당 사항을 공시
-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 편입된 회사와의 거래내역 중 계열 편입된 날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기재하고, 계열 편입일 이후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 제외된 회사와의 거래내역 중 계열 제외된 날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계열 제외된 날부터의 거래내역은 '기타'에 포함하여 기재

**다. 과태료 부과**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공시기한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69조의2, 시행령 제65조 및 별표3)

**■ 시정명령**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미공시·허위공시로 인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개별회사는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공시내용을 정정해야 하고,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수정된 사항을 기업집단 전체 현황 공시양식에 반영

**■ 과태료**

-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직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기준 주요내용**

| 공시여부        | 위반 유형                                    |            | 과태료 금액<br>(단위 : 만원)  |
|-------------|--|------------|--|
|             | 공시기한 준수여부                                | 공시사항 누락여부  |  |
|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1,000  |
| 공시한 경우      |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누락한 경우     | 500  |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 경우 |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누락한 경우     | 1,000  |
|             |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            |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허위로 공시한 경우  |  |            | 1,000  |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도 적용

**Q&A**

- Q** 포스코기업집단과 같이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과 계열사 간의 거래 현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 A**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의 경우 자금차입 및 대여 현황, 유가증권 거래 현황, 기타자산 거래 현황 양식을 작성할 때, 계열사 간의 거래와 동일인과의 거래 현황이 일부 중복됨
- Q** 금융·보험사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거래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대여금(증권사의 신용 공여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대여금 현황에 포함 시켜야 하는가?
  - A**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자금 차입·대여 현황은 특수관계인과의 순수한 재무적 성격의 자금차입 약정에 따른 자금대차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다른 금융거래에 부수된 대여금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자금대차거래로 보지 않음
- Q**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유상증자한 회사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하나?
  - A**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가 아니라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공시
- Q** 포스코와 포스코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는 무엇인가?
  - A** 포스코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이므로 포스코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 간의 상품·용역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없음. 하지만 연간 상품·용역거래 총액과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매년 5월 31일까지 연간 1회 공시해야 함
- Q** 계열증권사가 판매하는 MMF상품에 가입한 경우 MMF상품의 기초 자산에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CP 등이 편입되어 있으면 유가증권 거래 현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하나?

**A**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 현황은 매도 회사가 공시 하므로 MMF가입(매도)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음

**Q** 결산일이 3월에 속한 경우에는 5월 31일 연공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

**A** 결산일이 3월에 속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면됨. 다만 작성할 당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를 명시해야 함

**Q** 공시주체에 해외계열사가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음  
참고로, 해외계열사는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양식에서는 계열사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합계에 포함시켜 기재

**Q** '참조공시'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A** '참조공시'란 개별 회사가 자기회사 관련 내용만을 공시하고, 소속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은 별도로 공시하는 대신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참조할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  
참조공시를 하는 경우, 개별회사 공시정보 이용자가 별도의 검색절차 없이 직접 기업집단 현황 공시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다만,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먼저 전자문서(기업집단 현황 공시양식)를 DART 시스템에 접수시켜야 개별회사의 참조공시 링크가 가능하므로 공시기 한일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

**Q** 동일인 관련자 중 상업사용인 및 피용인은 무엇을 의미하며, 상업사용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무슨 범주에 포함시켜 공시하나?

**A** 상업사용인 또는 피용인이란 자연인인 동일인과 묵시적 합의, 고용계약 등을 통해 동일인을 보좌하거나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개인(지배인 등)을 의미하고, 임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시

**Q**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있는 경우 지주회사나 자회사는 이들 내용도 같이 공시하나?

**A** 개별회사는 자기회사 내용만 공시하면 되고, 전체 기업집단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공시

**Q** 기업집단 현황 공시사항 중 재무 현황, 손익 현황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재무제표상 수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재무제표는 어떤 재무제표를 의미하나?

**A** 개별 재무제표를 의미함. 따라서, 일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개별 재무제표상 수치를 기재

**Q** 12월말 기준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을 2월말까지 공시해야 하나, 2월말에는 12월말 기준 결산이 미확정되는데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

**A**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공시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표시

**Q** 친족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친족 및 친족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은 공시할 필요가 없나?

**A** 분리된 친족 및 그 친족측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들과의 거래내역은 공시할 필요 없음. 다만, 공시기준 기간 중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되기 전까지 거래내역 등을 공시

**Q**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과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A**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 현황 공시시 동일인과의 거래 현황이 일부 중복되나 해당 공시양식에 따라 공시하면 됨

**Q** 외화 관련 거래발생시 외화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환율을 적용해도 되나?

**A** 회사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율 적용 가능

- Q** 합병후 피합병회사로부터 차입금, 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 이들 금액도 차입 현황, 유가증권 거래 현황에 포함하나?

**A** 피합병회사가 공시대상 기간(직전분기) 동안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금액 등은 포함하여 기재하고, 공시대상 기간 이전에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금액은 기재할 필요 없음
- Q** 등기임원의 스톡옵션 행사시 어느 양식에 공시하나?

**A** 등기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 현황에 포함시켜 공시
- Q** 차량, 주택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국공채에 대한 채권할인(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할인료만 지급하면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거래금액을 유가증권 거래 현황에 포함시켜야 하나?

**A** 국공채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하는 경우는 공시해야 함. 다만, 이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할인받아 즉시 매도하는 경우는 기재할 필요 없음
- Q** 12월 31일에 주식매매거래가 발생했으나, 다음해 1월 2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시기준일이 언제인가?

**A** 기업회계 기준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시
- Q** 금융회사의 각종 금융상품 등의 거래를 유가증권 거래 현황에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는지?

**A** 금융당국이 분류하는 기준과 금융회사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공시
- Q** 계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공시의무는?

**A** 보험 가입회사는 공시의무가 없고, 보험회사는 상품·용역 거래 현황에 보험료 수익 등을 기재

- Q** 모회사가 자회사의 건설이행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지?

**A** 공정거래법 제2조 제9호 여신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함. 단, 해외건설시 공사이행보증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예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함

**▶ 포스코그룹 기업집단 현황 공시실태 점검결과**

(대상기간 : 2007년 4월 ~ 2011년 5월)

• 총 1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음 (15개사, 과태료 4,085만원)

| 회사명                               | 건수 | 과태료(만원) | 위반내용                                     |
|-----------------------------------|----|---------|--|
| 승광                                | 2  | 600     | 손익 현황 기재오류<br>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에스엔엔씨                             | 1  | 24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포스메이트                             | 1  | 36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포스코에이앤씨                           | 1  | 320     |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누락                      |
| 포스코하우징                            | 1  | 15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포스코티엠씨                            | 1  | 24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포스플레이트                            | 1  | 40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포스하이메탈                            | 1  | 100     | 계열사 간 채권·채무잔액 현황 누락                      |
| 포스화인                              | 1  | 15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부산이앤이                             | 1  | 9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
| <b>포스코 자회사 : 10개사 11건 2,650만원</b> |    |         |  |
| 포스코엔지니어링                          | 2  | 400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br>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누락 |
| 메타폴리스                             | 1  | 150     | 손익 현황 기재 오류                              |
| 플랜트이에스티                           | 2  | 600     | 손익 현황 기재 오류<br>계열사 간 채권·채무잔액 현황 누락       |
| <b>포스코건설 자회사 : 3개사 5건 1,150만원</b> |    |         |  |
| 포항연료전지발전                          | 1  | 45      | 이사회 관련제도 운영 현황 누락 후 보완                   |
| 신기이앤티                             | 1  | 240     | 손익 현황 기재 오류                              |

계열사 주요 공시 위반 내용

| 위반 항목   | 예시   |
|---|--|
| 임원명, 직위 등<br>임원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현황 중 일부자료 누락공시</li> <li>· 임원 ○○○의 직위를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기재해야 하나 상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기재</li> <li>· 임원의 지위가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외이사로 공시</li> </ul>                   |
| 이사회, 이사회 내<br>위원회 설치 운영,<br>주주총회 관련제도<br>등의 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안건 중 1건 누락</li> <li>·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도입한 것으로 공시</li> <li>·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도입한 것으로 공시</li> </ul>           |
| 매출액, 당기순이익<br>등 손익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외 손익 금액을 -7,042백만원으로 공시해야 하나, -4,042백만원으로 기재</li> <li>· 영업외 손익 금액 4백만원을 누락</li> <li>· 이자비용 1,976백만원을 3,036백만원으로 기재</li> </ul>                                       |
| 회사의 자산,<br>부채 등<br>재무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당좌자산 금액을 88,466백만원으로 공시해야 하나 460,895백만원으로 기재</li> <li>· 유동자산 금액을 1,484백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660백만원으로 기재</li> <li>· 비유동자산금액을 17,765백만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11,466백만원으로 기재</li> </ul> |
| 계열사 간<br>상품·용역<br>거래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코, 포스화인과의 거래금액 2백만원, 15백만원을 누락</li> <li>· 감사보고서상 거래금액과 공시한 금액이 맞지 않음</li> </ul>   |
| 계열사 간 거래에<br>따른 채권,채무<br>잔액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코에 대한 채권 금액 3백만원 누락</li> </ul>  |

# III

## 제2장 |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1. 부당한 공동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4.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Leniency Program)

###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의 3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저촉됨

- 둘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경쟁제한성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 ■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경쟁 방지, 경영 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 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사업자는 계약·협정·의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각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면 안됨(법 제19조 제1항)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 간 의사 합의(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추가적인 정황증거 필요」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정황증거가 있으며, 또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정황증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예 비밀회합을 하고 그 회합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사업자 간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문건(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회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거래 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합법 제19조 제5항)



#### ●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

- 경성카르텔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상황에 대한 심사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 예 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 ②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 ③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할당하는 행위
    - ④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는 행위 등
- 연성카르텔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하여 결정
    - 예 ① 공동생산
    - ② 공동연구·개발
    - ③ 공동마케팅
    - ④ 공동구매 등

###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공동행위 중 연성카르텔이나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19조 제2항)

- ① 산업합리화                      ② 연구·기술개발
- ③ 불황의 극복                    ④ 산업구조의 조정
-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 공동행위 예외 인정

##### ① 산업합리화

- 공동행위로 인해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 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 경쟁제한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 ② 연구·기술개발

-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경우
-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 ③ 불황의 극복

-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 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위에 기술한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 ④ 산업구조의 조정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 참가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국내 철강시장에서 타 경쟁사업자와 철강가격, 공급수량, 거래지역 및 상대방 등에 대해 합의하는 행위
-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사업자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행위
- 경쟁사업자들과 가격정보, 물량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행위
- 국내 철강원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원자재 가격 등을 결정하고 구매하는 행위

※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와의 원자재 공동구매는 계열사가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공동으로 가격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가격 설정기준을 정하는 행위
  -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경쟁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특정업체를 제재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 구성요소의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행위
- 과당경쟁 방지, 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한 경우
- 정부의 물가관리 등 행정지도에 의해 특정 가격수준을 실질적으로 강요받은 결과 가격인상률 등이 일치하는 경우(단,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만 해당)
- 법령 등에 근거한 가격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격수준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률 등에서 가격수준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 심결례

**사 례 ① /** 외환위기 이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국내 컬러강판 3사(포항강판, 동부제강, 연합철강)는 가전용 컬러강판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고객사가 미수용 시는 출고 중지하기로 하여 1998년 3월부터 컬러강판 가격을 총 19.5% 인상(1998년 5월 8.6%, 1998년 8~9월 5~6% 각각 인상)함

**심결요지 /** 1998년 3월 컬러강판 3사가 합의로 가전용 컬러강판의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한 행위는 가전용 컬러강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임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공표명령】 법 위반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게재, 공표  
【과 징 금】 포항강판 1억1천500만원, 동부제강 1억1천300만원  
연합철강 4천800만원

**사 례 ② /** LG화학 등 벽지업체들은 2004년 3월,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① 시판시장의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의 도지가와 ② 특판시장의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③ 시판시장의 도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출하가는 각 사 자체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이후에 각 사들은 가격인상 안내문을 시판대리점 등에 통보하고 인상가격을 실행하고, 매분기별 정도 개최되는 일부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음

**심결요지 /** 사장이나 임원들이 참석하는 벽지협의회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이라는 큰 틀 및 시판분야의 인상내역을 합의하고, 특판분야의 구체적인 인상내역은 특판실무자 모임을 통해 합의하도록 지시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총 13개 업체  
【과 징 금】 9개 업체에 총 193억원 부과

**사 례 ③** / 치즈 제조, 판매 4개사(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유정회' 라는 치즈업체 간 모임을 통해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업계 1, 2위 사업자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치즈가격을 공동인상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심결요지** / 치즈시장은 상위 4개사가 95%(서울우유 44%, 매일유업 40%, 동원데어리푸드 7%, 남양유업 4% ▶ 2008년 기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며, 특히 소매용 치즈의 경우 상위 4개사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가격 공동인상 형태는 과점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담합 유형으로 특히 원재료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발생시 흔히 나타남. 상기 공동행위는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치즈 4개사가 모두 가격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 사례임

**제재내용** / 【시정명령】 가격 공동인상 및 정보교환 금지  
【과 징 금】 총 106억원 (서울우유 36억원, 매일유업 35억원, 남양유업 22억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원)

**사 례 ④** /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주)대림코퍼레이션, (주)동부하이텍,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 삼성중합화학(주) 8개의 석유화학업체들은 각 품목별로 영업담당 실무자들 간에 담합 모임을 갖고 우선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Formular)에 합의한 후, 동 가격공식에 따라 공동행위 기간동안 매월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합의·결정하였음. 품목별 가격공식은 주로 해당 품목의 원재료 가격, 국제시세, 국내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고, 가격공식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담합 모임은 통상 매월 1회(필요시 2~3개월에 1회) 각 사무실

또는 인근 음식점에서 개최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합의가격을 통보하였음

**심결요지** / 8개 석유화학업체가 석유화학 6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총 127억300만원



### 나.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제한하거나, 상품 인도일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등의 인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애프터 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동일화함으로써 증진되는 소비자의 이익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월등히 큰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 심결례

**사례 ①** / 4개 빙과제조업체들은 2004년 1월 31일 전남 광양시 소재 모식당에서 전남 동부권 빙과대리점 대표자 10여 명과 함께 모임을 갖고 덤핑업자에 대한 대책 등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04년 2월 4일 (주)빙그레 과천지점 회의실에서 거래조건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을 담은 '시장 안정화기준'을 결정하여 실행하였음

**심결요지** / 4개 사업자들은 광주, 전남지역의 8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으로 거래조건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을 합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행위임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지방일간지에 1회 게재, 공표

### 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최고·최저 생산량, 필요 재고량 등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 수준을 정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구매량, 구매가격, 구매하는 물품의 인도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구매량 또는 납품업체를 사업자 간에 할당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중소기업 간 공동구매로 대기업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제품 수송차량을 공동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심결례

**사 례 ① /** 대한제분 등 8개 밀가루 제조, 판매업체들은 2000년 1월 영업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별 밀가루 내수 반출량을 협회비 비율대로 정하기로 하고 각 사의 담당 임원들이 매월 1회 만나 반출량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월별 기준 반출량을 합의하였으며 2005년까지 이를 지속함

**심결요지 /** 밀가루 제조, 판매업체들은 밀가루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영업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밀가루 총 반출량을 사전에 정한 후 피심인별로 반출량을 기준비율대로 하기로 함으로써 국내 밀가루 시장에 있어서 공급량을 제한, 할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공표명령】 위반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공표  
【과 징 금】 대한제분 122억3천400만원 등 총 435억4천700만원

**사 례 ② /** (주)엘에스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참여사들 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 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 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음

**심결요지 /**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1년간(1998년~2008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물량배분 및 정보교환 등 담합 금지명령  
【고 발】 (주)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과 징 금】 32개사(전선조합 포함) 총 386억원

라.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 하고만 거래하도록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심결례

사례 1 / (주)수성케이블 방송 및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은 2006년 2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건립되는 캐슬골드파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자 유치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단지별로 나누어 1~3단지 1천803세대는 (주)수성케이블방송 4, 5단지 2천453세대는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이 전담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하였음

심결요지 / (주)수성케이블방송 및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정하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합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실제 행위를 통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여 경쟁제한성을 증가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통보명령】 30일 이내 캐슬골드파크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사례 2 / 정유 4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는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2000년 3월부터 소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1년 9월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GS·현대오일뱅크는 계열 주유소가 복수상표 신청을 할 경우 디브랜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수상표표시제도'의 정착을 공동 방해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 상기와 같은 정유 4사의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하여 결국 소매가격(소비자가격) 인하도 억제하는 행위로서 원적관리 담합은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봉쇄하여 실거래 가격인하(할인)를 제한하게 되는 담합행위임. 원적관리 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하였을 것이며,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었을 것인 바, 상기 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원적관리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과징금】 총 4천348억원(SK 513억원, SK이노베이션 790억원, SK에너지 77억원, GS칼텍스 1천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검찰고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사례 3 /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 하고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였음

심결요지 /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부당한' 합의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과징금】 총 51억7천300만원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 다.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공동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 공동으로 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바.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신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단,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상품이나 규격을 공동결정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음

### 📖 심결례

**사 례 ① /** KTF와 LGT는 2004년 1월부터 SKT 가입자들만 기존번호를 유지하면서 KTF, LGT로 이동전화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자 신규가입자 확대를 목적으로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을 출시하였음. SKT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무제한 정액요금 제도의 인가를 신청하였음. 그러던 중 3사가 서로 합의하여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은 모두 폐지하며 SKT의 인가 신청도 철회하기로 3사 간에 합의하였음

**심결요지 /** SKT, KTF, LGT 3사가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의 판매 및 출시노력을 중단하기로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되며 본 합의는 다양한 요금 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SKT 6억6천만원 등 총 17억8천200만원

### 사.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회사 설립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판매량 제한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 간에 생산, 판매, 구매 등을 담당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아.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개념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①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 ②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 ③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이 되는 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판례

-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 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0.6.9. 선고99두2314)
- 일부 입찰자와 담합이 있었으나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음(대법1983.1.18. 선고81도824)

-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대법원 98두15849, 1999.2.23. 선고)

### 📖 심결례

#### 사 례 ① /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담합 건 의결 제2007-436호)

##### ■ 합의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은 상주시에서 2005년 6월 7일 고시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서로 협조하여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에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입찰시의 투찰금액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

- (1) 첫째, 포스코건설이 2005년 8월 31일 작성한 ‘BTL 하수관거 민자사업 최근 평가결과 및 당사 참여방안’ 문건의 ‘3. 당사 진행사업 참여방안’에 ‘상주시 : 낙찰율 90% 이하 투찰(평가 후 환경관리공단과의 담합의혹 불식)’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음
- (2) 둘째, 포스코건설이 2005년 9월 8일 작성한 ‘하수관거 BTL 민자사업 최근 입찰동향 및 당사 참여방안 보고’ 문건에 완전경쟁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의경쟁’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음
- (3) 셋째, 금호산업이 2005년 9월 21일 작성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 일정표’ 문건에 ‘경쟁’이라고 기재한 것과는 달리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입찰 건은 경쟁이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넷째, 이외에도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2006년 1월 10일 작성한 ‘지방 차지단체 방문 일지’ 문건에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금호산업(명의상 경쟁)’ 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음

■ 실행

- 금호산업은 포스코건설이 추천해준 지역건설사 및 재무투자자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작성해준 제안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투찰금액 등)를 접수받아 명의만 금호산업으로 변경하여 상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포스코건설은 2005년 9월 5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심인 금호산업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92.6%인 투찰금액 775억원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투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금호산업도 2005년 9월 5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심인 포스코건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95.9%인 투찰금액 803억원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투찰)하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과 징 금】 포스코건설 57억9천800만원(금호산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 면제)

**사 례 ② /** (성남판교 A-25-1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입찰참가 10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A25-1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경남기업은 나머지 9개 업체에게 이 건 입찰에서 경남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요청
- 9개업체는 이에 동의하여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여 경남기업을 도와주기로 합의

• 경남기업은 공정별 세부 투찰내역을 작성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각 협조사에게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내역 그대로 주택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하여 경남기업이 낙찰받음

**심결요지 /**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들러리 업체에도 과징금 부과

**제재내용 /** 【시정명령】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반 금지  
 【과 징 금】 경남기업에 8억4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들러리 업체도 발주금액의 10% 범위에서 부과)

**사 례 ③ /** (시스템 에어컨 정부조달 계약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국내 가전 3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과의 시스템 에어컨 연간 조달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의 단가협상 전에 조달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 2007년 조달단가 등록에 있어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및 실내기의 조달 단가를 전년대비 6.5% 인상하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일부 품목들의 조달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
- 2008년 단가계약에 있어서 최소한 가격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공통되는 제품만 등록 합의
- 2009년의 경우 조달청과의 협상이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일부 주력제품은 가격을 인상하고 비주력 제품은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

**심결요지 /** 가격의 결정 및 유지를 통하여 정부조달 발주에서 입찰을 담합하였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정보교환 금지  
 【과 징 금】 삼성전자 160억100만원, 캐리어 16억5천100만원(엘지전자는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 면제)

### 입찰 관련 행동지침

#### ■ 수주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 【유의사항】

##### ①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 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③ 입찰가격을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④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⑤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 수주 수량 등에 대한 행위

##### ▶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 ■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방침 등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 공공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정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나 이용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광고의 내용, 횟수, 매체 등을 제한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 가. 시정조치(법 제21조)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나. 과징금(법 제22조)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 여기서 매출액은 당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법 위반 기간 중의 매출액이며, 입찰담합의 경우 입찰을 통한 계약금액임

## 다. 벌칙(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이것만은!

☞ 경쟁사와 정기적 모임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포스코 00매니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철 00과장입니다. 오는 4월에 철강 현황 세미나가 있는데요. 세미나 끝나고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습니까?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런저런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하.”

“예, 그러시죠. 좋습니다. 하하.”

▶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 간 모임, 의사연락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합의를 것으로 추정 가능(법 제19조 제5항)하므로 경쟁사 관계자와 연락, 특히 외부에서의 만남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 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Leniency Program)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등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법 제22조의2)

#### 가. 과징금 완전면제 및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 2호)

#####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제공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나.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Q&A

**Q** 다른 철강사업자들이 우리 회사의 가격인상과 비슷한 시기와 인상률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럴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

**A**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의식적 동조행위임. 그러나 의식적 동조행위 자체만으로 위반행위가 되지 않으며 정황증거가 같이 제시되어야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또한 국내 철강사업자들은 비슷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면 타 회사들이 우리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음

**Q** 우리 회사가 계열사와 공동으로 특정물품을 구매하여 구매가격을 낮출 경우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

**A**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공동구매일 경우는 계열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지분 50% 이하의 계열사와 공동구매할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Q**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종업체 간에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가?

**A** 동종업체 간에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설비의 신·증설을 억제하여 공급량을 제한할 목적으로 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관련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게 되어 법 위반 가능성이 커짐

**Q** 판매부서에 전달하는 문서에 경쟁사 정보(가격 인상 및 신상품 출시 등)가 언급되면 문제가 되는가?

**A** 경쟁회사와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현업에서 판매활동에 참고

하기 위한 자료로서 경쟁사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낮음.  
그러나 현업부서에 대한 단순한 정보전달이라도 만일 경쟁사 현업부서와의 협조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정보전달 행위가 합의 추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Q** 반덤핑 수검자료 준비를 위해 관계사들과 거래가격, 거래조건 등 기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공동대응 행위는 관계사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A** 반덤핑 심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관계사 간에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그 과정에서 관계사를 모니터링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음. 단, 외국의 반덤핑 제소 등의 방지를 위하여 국내 사업자들 간에 상품의 가격, 수량, 거래상대방 등 거래 조건에 관하여 공동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덤핑 제소 대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음

**Q**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에서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A**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임(법 시행령 제24조의2)  
①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능률증진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②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③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 효과가 클 경우

**Q** 정부의 행정지도로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한 경우가 법 위반인가?

**A**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사업자 간에 행해지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공동행위와는 구별되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됨. 예를 들어 행정관청에서 소집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회의가 끝난 후 관련 사업자들이 일치해서 동일한 선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행위 등은 법 위반임. 단,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는 법 위반이 되지 않음

## IV

### 제2장 |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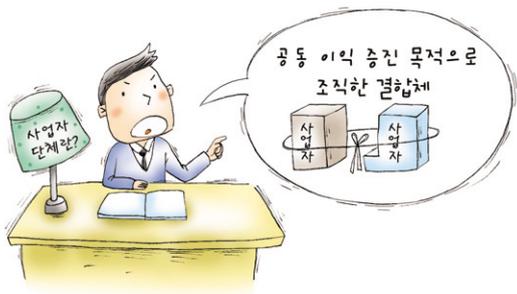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담합행위를 유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규율하고 있음

### 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봄(법 제2조 제4호)

- ▶ 경제적인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 종교, 학술·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음.



###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6조)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 사업자단체가 위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10%,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심결례

**사 례 ① /** 2006년 5~6월경 경남학생복협의회는 창원시 봉림중학교 예비학부모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로부터 봉림중학교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음  
 2006년 8월 경남학생복협의회는 공동구매추진위원회로부터 공동구매 입찰 실사를 확인하고 2006년 12월 29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유명브랜드 업체의 공동입찰 참여와 가격 등의 이유로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말도록 통보하였음. 이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스킨룩스를 경남학생복협의회 의결사항 미준수를 사유로 제명처분하였음

**심결요지 /** 경남학생복협의회는 구성사업자(20개사), 회칙, 의사결정 조직, 징계위원회, 의사표시 수단, 정기월례 및 긴급회의, 정기 및 임시총회 등을 구비한 연합체 및 결합체로 사업자단체에 해당됨  
 경남학생복협회의 구성사업자들은 학생복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로서 공동구매 입찰에 대한 참여여부 결정은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나 경남학생복협의회에서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서면통지 명령】 구성사업자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과 징 금】 300만원

**사 례 ② /**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오비맥주(주)에 대하여 오비맥주(주)가 2005년 9월 1일부터 1개월 간 실시키로 한 '카스큐팩' 과 'OB큐팩' 쿠폰행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오비맥주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가하여 실제로 오비맥주(주)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로 쿠폰행사를 2005년 9월 13일경부터 일부 중단(645개 개인가맹점 중 594개 가맹점)하였음

**심결요지 /** 쿠폰행사는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해당상품의 가격할인 효과가 있어 이를 중단토록 하는 것은 오비맥주와 경쟁사업자(하이트맥주)와의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서면통지 명령】 구성사업자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Q&amp;A

- Q**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을 조합이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해 수요자에게 물품 판매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가?
- A** 조합이 조합원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조합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음. 조합과 조합원이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만약 조합원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면 역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당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Q** 사업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 A** 조합원 탈퇴시 정관에 가입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은 소모성 경비로 총당되지 않고 기금 등으로 적립되는 재산의 지분에 대하여는 탈퇴 조합원에게 정산, 반환하여야 함. 동 조합이 가입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임의적 탈퇴를 제한하여 사실상 강제가입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3호에 해당됨

## V

## 제2장 |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유형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1999년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법 제2조 제7호)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2호)

-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 있음

- 시장점유율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5% 이상 사업자(단,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자 제외)
-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신규 진입 가능성은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쟁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을 고려
-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 사업자 간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짐
- 시장봉쇄력
  - 당해 사업자의 원자재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50% 이상(3개 이하 사업자 75%)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자금력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력의 판단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서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기타 고려요인
  - 거래선 변경 가능 여부,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

##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앞서 살펴본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에 의하면 고려 요소가 다양하고 분석이 복잡하여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법 제4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 단,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
  -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 사업자 제외

##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유형

### 가. 가격남용 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 가격남용 행위의 판단기준

- 가격
  -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함
- 동종 또는 유사 업종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심결례

사 례 ① /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은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가 종전 20.3% 이었던 것을 1997년 11월 1일에 21.6%로, 1998년 2월 20일에는 22.9% 수준으로, 1999년 10월 15일에는 23.4% 내외 수준으로 각각 동일시점에 동일 또는 거의 같은 요율체계 및 수준으로 조정하여 2001년 3월 현재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심결요지 /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은 수수료율의 결정, 유지 등에 있어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하나의 경제적 행위 동일체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됨. 또한 피심인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 수수료율 및 연체 이자율을 인상한 후 자금조달금리, 연체율 및 대손율이 상당기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더 높거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등 가격남용 행위를 하였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40억2천300만원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정당한 이유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시키는 행위
- 원자재 가격 등 제품 생산가격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소폭 인하하는 행위

나. 출고조절 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출고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최근의 추세
  -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단,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 유무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사 포함)의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타 사업자에게는 동 원재료의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
  -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 심결례

**사례 ① /** (주)신동방은 1997년 12월 8일~16일 기간 중 대두유 제품의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반면, 동 제품의 재고량은 증가시킴으로써 대두유 제품의 국내 출고량을 조절함

- 심결요지 /**
- ① 1997년 12월에 대두유 제품에 대한 가격불안 심리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출고조절 기간 중 피심인의 대두유 판매량은 감소하고, 재고량은 계속 증가한 점
  - ② 출고조절 기간 중 피심인이 대두유 출고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
  - ③ 출고조절 기간 중 대두유 출고량을 줄이고 설날 성수기에 인상된 가격(1997년 12월 16.9% 인상, 1998년 1월 13.7% 인상)으로 판매하기 위한 영업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점
  - ④ 그 결과 피심인의 대두유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주)해표의 1998년 1월 매출실적과 경상이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두유 제품의 국내 출고량을 부당하게 조절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임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공표명령】 법 위반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

【과징금】 3억1천500만원

###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 원자재 조달사정 등 우리 회사의 경영사정에 비하여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품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 충분한 재고를 보유한 채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제품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3항)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간접적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다른 사업자
  -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사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임
-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원재료 구매
  - 부품, 부자재 구매를 포함
- 원재료 구매 방해
  -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유인하는 것임
- 필수적인 인력
  - 장기근속 기술인력, 특별 양성한 기술인력, 특별한 대우를 받는 기술인력, 중요한 산업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하는 행위

심결례

**사 례 ① /** (주)현대자동차는 2000년 5월 22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판매대리점들이 판매거점 이전 신청을 한 경우 수회에 걸쳐 자사의 노조와 협의 지연, 노조반대 등을 이유로 거점 이전 승인을 지연하거나 불허하였으며 판매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방해함

- 심결요지 /**
- ①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 ② 영업장소의 판단은 판매대리점들의 경영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영업장소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거나 그 이전을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임
  - ③ 판매대리점의 인원채용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 승인한 것은 부당하게 판매대리점의 인원채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행위임
-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서면통지 명령】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게 위반사실 통지  
 【과 징 금】 215억8천100만원

**사 례 ② /** 국내 PC용 CPU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인텔은 2002년 3/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국내 CPU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은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

**심결요지 /** 인텔사가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고, 실제로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시장점유율 수준 및 추이(AMD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였고, 특히 AMD사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피심인은 PC 제조회사들에게 새로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AMD사의 점유율은 다시 하락)를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억제하는 등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총 266억원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우리 회사 이외에 원자재를 구매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자재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판매점 등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고객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사례 ③ /** 현대모비스(주)는 대리점의 의무로서 ‘비순정품 매입 및 판매금지’와 ‘순정품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한 「부품 대리점 경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2004년 12월 15일 부터 일선 대리점에 배포하였음

계약조항 제17조(등급평가) 및 제19조(유통질서 준수의무 등)는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질적 의미는 현대모비스(주)가 대리점에게 경쟁부품 등의 판매금지 의무와 동시에 제3자(경쟁 대리점 등)가 경쟁부품 등을 판매할 경우 현대모비스(주)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대리점 등급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통제함으로써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장악하였음

**심결요지 /** 현대모비스(주)는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약 70%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현대모비스(주)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현대모비스(주)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이외의 경쟁부품 판매금지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부품 공급가격을 할증하거나 기존의 DC혜택을 폐지하는 등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위반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150억 부과, 법 위반 공표

**라.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제4항)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새로운 경쟁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에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실제로 신규 진입하여 판매를 개시하기 전까지의 사업자를 말함
-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유통사업자
  -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함
- 배타적 거래계약
  - 유통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행정관청 등의 인·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
- 기타 다음의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또는 기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 진입에 필요한 소정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5조 제5항)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의 판단기준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 염가 또는 고가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품목의 특성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등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자본 및 원재료 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는 경우
- 권장 소비자가격(가격에 대한 명칭에 관계없이)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표시하는 경우
- 기타 소비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심결례

**사례 ①** / 인텔사는 CPU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AMD사를 배제하기 위해 국내 PC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에게 2002년 5월에 AMD사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실제로 2002년 4/4분기부터 AMD사의 CPU 구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 2005년 2/4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하였음.

또한 국내 PC 시장의 2위 사업자인 삼보컴퓨터에게도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홈쇼핑 채널에서 AMD사의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공하고,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CPU MSS(Market Segment Share)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하였음

**심결요지** / 경제분석 결과 AMD사가 인텔사의 리베이트를 감안하여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PC 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고, 실제로 인텔사와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시장점유율 수준 및 추이를 보면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고 가장 높았을 때도 17%에 불과하여, 인텔사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등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인텔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260억원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가. 시정조치(법 제5조)

- 가격인하 명령,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나. 과징금(법 제6조)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관련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다. 벌칙(법 제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이것만은!

☞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대리점에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등 출고량을 조절해서는 안됩니다.**

“포스코 00매니저입니다. 귀 대리점에서는 그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고객사에 유통시키고 계십니다. 방침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귀사의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감소시키는 등 부당하게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VI

## 제2장 |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한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거래상 지위남용
4. 구속조건부 거래
5. 부당한 지원행위

## 1.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에 저촉됨

### 가. 공동의 거래거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1. 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거절이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로 행해질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 '정당한 이유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나. 기타의 거래거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1. 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 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갖게 되면 법에 저촉)**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에서와 같은 합리적 사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계약기간의 만료나 거래상대방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한 후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 회사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유익이 요구되는 조항임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타 철강사업자와 공동으로 수입품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점 등에 대하여 제품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타 철강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품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합리적 기준없이 국내에 생산자가 우리 회사 뿐인 제품에 대해 특정사업자의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우리 회사 제품 중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구입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독과점지위의 강화, 계열회사의 지원, 끼워팔기, 재판매가격 유지 및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우

이것만은!

☞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포스코 00매니저입니다. 이번 △△설비 00부품 구매 건에 관련해서 말인데요. 귀사에서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 주셨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상품·용역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1 /**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선재공장에서 제품소재 및 제품의 입출하·절단·연마 등의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화성기업(주)의 대표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며, 화성기업(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년 12월 3일 3년 기간으로 연장한 재계약의 만료시점인 2000년 3월 31일에 거래를 종료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 화성기업(주)는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본 협력작업과 같은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또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함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서면통지 명령】 30일내 시정명령 사실을 협력작업 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업체에 서면통지

**사례 2 /**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주)세화메디칼이 자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의 버취톨드사 고주파간암치료기를 판매하였으며, (주)세화메디칼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하여 자신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세화메디칼에게 2003년 11월 이후 계속적

으로 공급하던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공급을 2005년 8월 중단하였으며,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가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주)세화메디칼은 고주파간암치료기 관련 영업이 중단되었음

**심결요지 /**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대리점인 (주)세화메디칼에 부당하게 공급을 중단한 미국계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의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사 례 ③ /** 미디어플렉스는 영화배급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전주시 영화 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영화를 배급하였음

| 구분      | 2004년 | 2005년 |
|---------|-------|-------|
| CGV 전주  | 13    | 17    |
| 프리머스 전주 | 18    | 23    |
| 아카데미아트홀 | 17    | 13    |
| 롯데시네마전주 | 14    | 22    |
| 전주시네마   | 5     | -     |
| 총 배급 영화 | 30편   | 24편   |

2004년 이후 전주시네마의 계속된 공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플렉스는 전국 체인 형태의 영화사에만 영화를 배급하고 지방 극장인 전주시네마에는 공급을 하지 않았음

**심결요지 /** 미디어플렉스의 전주시네마에 대한 거래거절 행위는 ① 전주시네마의 귀책 사유나 미디어플렉스의 기업 경영상의 이유 등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네마에 의도적으로 영화배급을 거절한 점, ② 전주지역 영화시장에서 유력한 배급자인 미디어플렉의 배급거절은 전주시네마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 열위상태에 놓이게 하여 전주지역 영화상영 시장의 경쟁의 정도를 감소시킴. 이에 따라 미디어플렉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Q&A**

**Q** 같은 지역에 이미 자사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판매점이 개설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의 판매점 계약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A** 거래개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거절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본 건의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Q** 본사가 정해진 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는 이유로 판매점과 거래를 중단하였다면?

**A** 판매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품 판매가격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따라서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위반임. 또한 이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한 거래거절로서 불법행위임

**Q** 계약만료에 따라 해당 판매대리점과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A** 계약만료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전통보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그러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우리 회사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처리요망)

**Q**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A**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함

**Q** 납품업체의 납품실적 부진 또는 규정위반 등이 발생하여 납품업체와의 계약 기간 중 납품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A**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사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납품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Q**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 또는 제한해 줄 것을 우리 회사에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우리 회사가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중단할 경우 위법인지?

**A** 납품업체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로서 위법이 되며, 우리 회사 또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위법임

**Q**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최고 없는 계약해지를 규정할 경우 계약의 효력 여부?

**A** 법적인 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나,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와 최고 없는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우리 회사의 경우 계약 내용에 상관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

**Q** 거래중인 납품업체들이 공동그룹을 결성하여 그룹의 자격으로 무리한 거래 조건변경 등을 제시할 경우 그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면 법 위반인가?

**A** 거래여부의 판단은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무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거래를 거절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2.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됨

### 가. 가격차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2. 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 가격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조건도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갖게 되면 법에 저촉)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 ▶ 경쟁제한성을 가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한 경우
  -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나. 거래조건 차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2. 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계약의 이행방법 등 거래내용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갖게 되면 법에 저촉)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2. 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대상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을 발생시키면 법에 저촉)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라. 집단적 차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2. 라)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집단적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갖게 되면 법에 저촉)**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제품이 가격, 품질 및 결제조건 등에 있어 비계열회사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계열회사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정제품에 대해서만 대단히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구매물량이나 거래기간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 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
- 우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과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차별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행위
- 우리 회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어음거래를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병행 판매하는 대리점에게는 현금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
-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경우
-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계열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당해 회사에게 짧은 기간 동안 물량을 현저히 늘리는 경우
-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는 비계열 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이것만은!

☞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사에게만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포스△△ 00매니저입니다. 금번 00계약 건 말인데요, 같은 계열사이고 하니까 수수료를 조금 더 싸게 할 수 없을까요? 다른 회사들보다 딱 0.5%만 할인받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1 /** 포스코는 1994년 1월~1995년 5월 중 열연코일을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비계열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에게는 제품 출고 전에 선수어음 및 외상 30일로 받는 반면 계열회사인 (주)포스틸로부터는 제품출고 후 70일 만기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 비계열회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로부터는 선수어음을 받은 반면에 계열회사에게는 70일 만기어음을 수령함으로써 계열회사에게 판매대금 결제기간을 최고 70일까지 유리하게 한 행위는 거래규모, 판매가격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한 행위로 인정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

**사례 2 /** CJ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살인의 추억' 등 영화 125편 중 124편을 대상으로 케이블TV 방영권을 자기의 계열회사인 CJ미디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한 반면, CJ미디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회사인 케이블TV 영화방송 채널사업자에게는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 게다가 CJ엔터테인먼트는 CJ미디어에게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함에 있어 CJ미디어가 선투자 및 투자조합 참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판권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영화 124편의 케이블TV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음

**심결요지 /** CJ엔터테인먼트의 2006년 당기순이익이 260억원 이상 적자인 상황에서 케이블TV 방영권을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CJ미디어와 수익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건없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점, CJ미디어가 CJ엔터테인먼트로부터 영화관 전국

평균 관객수가 100만명을 상회하는 양질의 다양한 영화에 대해 케이블TV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결과, CJ미디어가 보유한 케이블TV 영화방 송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CJ미디어의 관련 시장점유율이 2004년 25.27%에서 2006년 33.92%로 증가한 점, 경쟁사업자들은 경쟁에 서 배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유력한 사업자인 MBC드라마넷은 관련시장 영업을 중단했고, 관련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티브로드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CJ엔터테인먼트의 행위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됨

#### 제재내용 / 【시정명령】

#### Q&A

- Q**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 해당 여부?
- A**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 Q** 특정 판매점에겐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 A**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판매점에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 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큼

- Q**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A**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하 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됨. 그러나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차별로서 문제가 되지 않음
- Q** 계열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상사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 A** 물량 이외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상사에게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가는 자사의 재량이므로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계약기간 중 물량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Q** 협력업체를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대금결제를 차별화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
- A**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패털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 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Q**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사인 A사가 계열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 A**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 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 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 Q**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이나 기술수준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계열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 A** 거래상대방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열사를 선정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

**Q** 동일상품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A**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격의 기준을 정해 놓고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써 문제 삼기는 어려움

**Q**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A** 판매물량, 거래기간 및 금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음

**Q** 우리 회사의 구매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 판매업체의 영업정책상 우리 회사의 우수한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만일 계열회사가 그런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한다면?

**A**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음.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당해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 3.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됨

#### 가. 구입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6. 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구입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저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 ▶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영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나. 이익제공 강요**(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6. 나)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판단기준****•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저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판매목표 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6. 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저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라. 불이익 제공**(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6. 라)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기준****•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저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마. 경영간섭**(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6. 마)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 경영간섭 행위의 판단기준

##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저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구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계속 구입을 요청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판매지역 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 판매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중단, 벌과금 부과,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판매물량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토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불량제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의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 월 초에 설정한 대리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판매점의 임직원을 일정수 이상 유지하도록 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몇 대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

- 경영지도라는 명목하에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납품업자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이것만은!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안됩니다.

“포스코 00매니저입니다. 귀 사의 △△과장님 계시죠? 전 이 사람이 귀사에서 근무하는 한 계속 거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매너도 없고, 매번 약속을 어기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보내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든지 안하면, 다신 귀사에 발주하는 일 없을테니 그리 아세요.”

- ▶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①** /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 중 6개월, 1년, 2년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 기준금리를 2001년 9월 27일에 8.30%로, 3개월 주기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 기준금리를 2001년 8월, 9월, 11월에 6.90~7.90%로 변동시킨 이후 2002년 12월~2005년 5월 시장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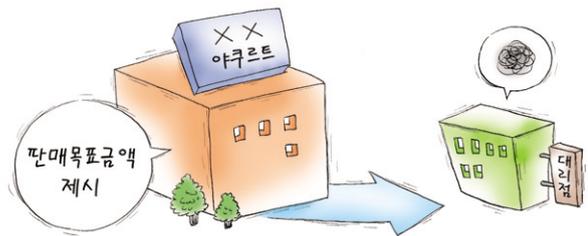
**심결요지** /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는 개인 사이의 소비대차와 달리 양자 사이에 교섭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 중 중요한 부분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시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고객인 소비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당초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 의하면 주택담보 대출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이므로 고객이 선택한 변동주기마다 한국씨티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조정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동안 시장금리 하락을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대출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대출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5억6천300만원

**사 례 ② /** 한국아쿠르트는 시장변동 상황, 근무일수 및 전년도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음. 또한 2002년도부터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증평대리점 등 15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하면서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 한국아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특유의 투자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처 이전의 용이성,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등 여러요소를 판단하여야 함. 본 행위에서는 위탁대리점이 우유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한국아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  
한국아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사 례 ③ /** (주)엘지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000건, 인터넷전화 150~500건, 인터넷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의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하였음. 또한 위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하여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심결요지 /** 대리점은 (주)엘지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됨(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재내용 /** 【경고조치】

**사 례 ④ /** 54개 단위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2008년도에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 31일~201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부당하게 고정하였음

**심결요지 /**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리(조달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금지  
【과 징 금】 2억5천400만원

**사 례 5 /**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2008년 11월 기간 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가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 전투자할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

**심결요지 /**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들까지 동원한 사례로서, 채널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골프장 사전투자를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해당 행위 금지  
 【과 징 금】 4천200만원

**사 례 6 /** 쌍용자동차는 매년 대리점들에게 분기, 반기, 연간마다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부여해 왔고, 대리점들에게 이러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2004~2006년 중)하였음. 또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이 부과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제재해왔으며, 2006년도에는 이러한 제재와 함께 총 16개 대리점에 대해서 재계약을 거부한 바도 있음. 또한 소속 대리점이 자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동 대리점에 대하여 2006년 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음

**심결요지 /** 쌍용자동차가 독립사업자인 대리점들에 대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거나, 특정 대리점에 대하여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행위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9억8천500만원

**사 례 7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원은 2005년 3월~200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함

**심결요지 /** 대형종합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며, 대형종합병원은 자신에게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게 요구하였고, 기부금 모금 방식에 있어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회사가 아닌 대형종합병원이 결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의 기부금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도 한결같이 건물신축 등을 위한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러한 대형종합병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하고 더불어 상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및 소비자이익 저해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5억5천만원

## Q&amp;A

**Q**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Q** 어떤 경우에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A**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속하는 업계가 과점시장으로 상대방이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거래에 의해 상대방이 그에 맞추어 특화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유통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상 상대방이 그 거래처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가 대규모 또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상대방이 행위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경우 등에 있어 거래상 지위의 우월성이 인정됨

**Q**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A**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Q**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A**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① 재고량 해소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 ③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 ④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 4.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저촉됨

### 가. 배타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7. 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판단기준

#####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면 법에 저촉)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님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7. 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 위법성 판단기준(대상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면 법에 저촉)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판매점에 대해 전속거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판매점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우리 회사의 경쟁자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항하여 우리 회사 제품의 판매가격을 경쟁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점으로 하여금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판매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지역제한 위반시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 가격차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판매점에 대하여 특정한 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제품판매시 자기가 운송협력 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것만은!**

☞ 판매점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금지하여서는 안됩니다.

“포스코 00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판매점 운영합리화 차원에서 연간 단위로 판매점 평가, 관리 툴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항목 중에서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1 /** (주)석수와퓨리스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PC(Polycarbonate, 말통) 제품(12.5리터, 18.9리터)만으로는 시장점유율 1위, PET병 제품(0.5~2.0리터)까지 포함하면 3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로 (주)진로 시절부터 2007년 9월까지 자신의 PC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PC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대리점 유통이 불가피한 PC제품 시장에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심결요지 /** (주)석수와퓨리스가 자신의 먹는샘물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사례 2 /** KT&G 수도권 3개 지사·지점은 관할지역 담배소매상들에게 경쟁사업자 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고, KT&G 서울지역 4개 지사·지점은 2005년 8월 18일 출시한 '로크릭스(LOCRIX)'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 내 담배소매상들에게 로크릭스의 동종 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들의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또한 경쟁사업자의 담배 및 담배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있음

**심결요지 /** KT&G는 자기 담배의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매상과 약정을 맺어 이들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약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담배소매상에 대한 자신의 담배 수요를 유지 또는 창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 Q&amp;A

**Q**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지?

**A**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됨. 단, 지역외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Q**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지역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됨 (예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외의 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속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됨. 예컨대 해당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Q** 제조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자사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5.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됨

## 가.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10)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금급·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여부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

## • 지원행위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 보다 높은 경우
  - ▶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 •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특정사업자에 대해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하였음에도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우리 회사의 경우 50억원 이상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고자 할 경우 내부거래위원회 사전심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이것만은!**

☞ 계열사에게 공장, 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주거나,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당 그룹에서는 다음 분기부터 계열사 컨설팅을 전담하는 TFT를 만들어, 몇 개월 간 파견을 보내서 각 회사의 인력·행정·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컨설팅 비용은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 례 ① /** 포스코는 1997년 8월 30일부터 1999년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 150억원을 예탁하고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포스코의 계열회사인 포스코특수강(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할인율 10.20~10.60%로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이는 포스코특수강(주)가 본 건 기업어음을 발행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다른 기업어음을 포스코의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의 평균할인율 11.41~15%보다 1.21~4.8% 낮은 수준임

**심결요지 /** 포스코가 한일은행을 통하여 자회사인 포스코특수강(주)의 기업어음을 저율의 할인율로 매입한 것은 결국 포스코특수강(주)가 설립 초기 운전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포스코특수강(주)는 어느 정도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음. 즉 포스코특수강(주)의 1997년도 당기순손실은 553억원이었으나 1998년도에는 235억원으로 개선되었으며 선제 생산부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 따라서 포스코의 위 행위는 포스코특수강(주)로 하여금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명령에 대해 1개 중앙일간지 1회 게재  
 【과 징 금】 3억5천320만원

**사 례 ② /** 두산산업개발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특수관계인 28명이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293억8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139억2천900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음. 특수관계인은 모두 두산기업 집단의 지배주주의 친인척들임

**심결요지 /**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어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두산산업개발이 자사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이자를 대납한 행위는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이자 명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들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한 사업자가 아니라도 향후 본 자금이 두산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등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행위가 성립됨. 실제 특수관계인 중 일부는 신설회사 설립에 참여하였으므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41억1천200만원

**사 례 ③ /** NHN(주)는 임차한 빌딩에 대한 임차료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주) 및 NHN서비스(주)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2002년 5월 ~2007년 4월)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서치솔루션(주)는 NHN(주)의 임차료 보다 최대 28.5% 낮은 금액  
 - NHN서비스(주)는 NHN(주)의 임차료 보다 최대 45.0% 낮은 금액으로 각각 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서치솔루션(주) : 2002년 2월 1일 설립된 회사로 주 영위업종은 검색엔진 개발 및 유지와 검색품질 연구  
 ※ NHN서비스(주) : 2005년 8월 2일 설립된 회사로서 주 영위업종은 인터넷포탈의 고객센터 서비스

**심결요지** / 서치솔루션(주)의 경우 지원시기(2002년 5월)가 회사설립(2002년 2월) 초기이며 지원규모도 5년간 당기순이익의 8%에 해당하고, NHN서비스(주)의 경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원행위가 있었으며 지원규모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합액의 15%에 해당하였음.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총 2억2천700만원

**사 례 ④**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8월 3일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700억 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 아이스텀엔트러스트(주)에게 보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 주식(7천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없이 부여하였으며, 아이스텀엔트러스트(주)에 대한 콜옵션 무상 부여는 자체적으로는 유상증자 성사가 어려운 부실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음

\* 콜옵션(Call Option) :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주식, 사채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심결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자체적으로는 유상증자 성사가 어려운 부실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가능하도록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위 행위는 지원객체의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지원객체가 속한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사 례 ⑤** / GS칼텍스(주)는 2000년 12월 31일 기존 VAN서비스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주)스마트로를 새롭게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였음. (주)스마트로는 당시 IC카드 칩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VAN업무는 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GS칼텍스(주)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계약을 통해 새롭게 VAN업무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2월 이후 사실상 계열회사 관계가 됨.

VAN서비스 사업자는 정유사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이면서 큰 신용카드 중계수수료 이익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GS칼텍스(주)는 (주)스마트로에 대해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계 건당 30원 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함

※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서비스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본 건에서는 GS칼텍스 계열 주유소)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카드사용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등을 중계하는 부가통신망 서비스

**심결요지** / GS칼텍스(주)가 (주)스마트로에게 자신의 계열 주유소에 대한 전속적인 신용카드 VAN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시장에서 통상 지불하지 않는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까지 지원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 재무상태가 좋지 않던 (주)스마트로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사업기반을 강화시켰으며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과 징 금】** 7억2천700만원

 Q&A

**Q** 계열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A**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는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 행위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 차별하여 계열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자산·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Q** 계열사 간 임대차 거래에서 연체시 연체료 청구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거래 위반 여부?

**A** 연체료 청구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됨. 단, 그 연체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미미할 경우에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우리 회사가 계열회사·비계열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연체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부당지원 행위 뿐만 아니라 차별적 취급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Q** 계열사 소속 직원이 당사에 파견되어 업무를 하고 발생한 노하우를 양사가 공유한다면 문제가 되는가?

**A** 파견에 따른 인건비 정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파견근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Q**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

**A**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음

# VII

## 제3장 | 하도급 부문 하도급 관련 규제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2. 하도급법의 체계
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 2. 하도급법의 체계

### 가.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 제조업, 수리업, 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산업, 건축설계업
- 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 적용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 나. 하도급거래의 규제내용

####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 선급금 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 ■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 ■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 서류보존 의무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 신의원칙 준수
- 증거서류 제출

### 다.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시정명령, 권고 등)
- 공표명령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 사법적 제재(공정위의 전속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보복조치,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가. 하도급의 정의

#### ■ 민법상 하도급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이다.(민법 제664조 참조)
-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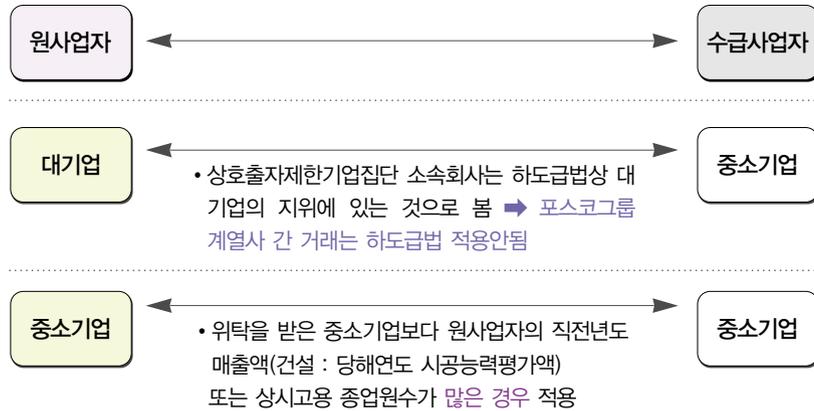
####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나. 법 적용 대상요건

■ 적용대상 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하도급법 개정(2011. 6. 30 시행)

원사업자의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하도급법 적용 가능 (매출액 등 규모 2배 기준 폐지) → 하도급법 규제 대상 대폭 확대

- ※ **중소기업자**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로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 ※ **연간매출액**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적용제외대상 사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 위탁 유형   |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
|---------|----------------|
| 용역위탁    | 10억원 미만        |
| 제조·수리위탁 | 20억원 미만        |
| 건설위탁    | 30억원 미만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다. 적용대상 거래

■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품의 제조
  - 물품의 판매
  - 물품의 수리
  - 건설
-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①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業으로 하는 경우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소,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임) 가공

## ②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 용역위탁의 경우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 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 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 등) 및 시스템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 (예) 광고, 디자인 등)
-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 (예) 건축설계도, 애니메이션 등)

## ②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 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라. 법 적용대상 기간

■ 관련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 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하도급법 제23조)

■ 규정취지

조사대상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분쟁 발생시 증거확보의 곤란에 따라 조사 및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임

※ 거래종료일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원칙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함(하도급법 제34조)

■ 타 법률과의 관계

특히,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관련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하도급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건설관련법규중,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원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임

## Q&A

**Q**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A**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적절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도급법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괄 재하도급이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Q** 노무작업, 운송 등 용역위탁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가?

**A** 그 용역이 제조(가공), 수리,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역위탁거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서 제외됨. 다만, 용역위탁 중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은 하도급거래(제조위탁)에 해당

**Q**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이 공장 증축을 위해 중소건설업자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지?

**A**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자격 있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당해 위탁은 도급계약일 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아님

# VIII

## 제3장 | 하도급 부문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원사업자 의무사항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3. 발주자의 의무사항

##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

#### ■ 규정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을 확인요청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5, 6, 7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9항)

#### ■ 규정취지

- 구두계약의 경우 발주내용·하도급대금 등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가 곤란하여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음
-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 및 위반에 대한 시정이 용이

#### ■ 서면의 법정 기재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 이라함)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 제조·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제조, 수리행위 착수 전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수하기 전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

#### ■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보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발급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화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 서면 미발급으로 보는 경우

-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 실제의 하도급거래 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원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발급으로 봄

#### ■ 보존서류(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제조 등의 위탁시 발급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
-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 증명서
- 목적물의 검사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함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인정

#### ■ 위반행위 유형

- 서면 미발급 : 법정기재사항을 작성 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허위서면 및 서류의 발급 :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  
(예 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
- 서류(서면) 미보존(증거인멸, 허위서류 보존)
  - 법정 서류보존 기간인 3년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시킬 경우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허위서류보존)
- 불완전 서면발급 :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 인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 기타 : 서면지연 발급,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



## 심결례

**사례 ① /** 대성산업(주)는 (주)대성정밀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제조위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주)대성정밀에게 제조위탁한 오디오 방열판 5,000개에 대하여 당초 발주내용을 변경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

**심결요지 /**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제조위탁한 행위와 당초 발주내용을 변경하였으면서도 이에 따라 발급하여야 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제재내용 /** 【시정명령】 발급하지 아니한 법정 계약서면과 변경과 관련한 법정 계약서면을 발급토록 시정조치

**사례 ② /** 대우조선해양(주)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비철 설치공사 등 25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발급함

**심결요지 /**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제재내용 /** 【시정명령】 서면 지연 발급행위 재발 방지토록 시정조치

## 나. 선급금의 지급 의무

### ■ 규정내용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 시 어음할인료 지급

### ■ 규정취지

- 선급금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원사업자)이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발주자)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실제 제조,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도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공평

###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기준
    - ① 선급금 금액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② 발주자가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 발주자가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선급금 지급
- 예**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4개 하도급공사가 있을 경우 선급금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하였다면 2개 공사에 한정하여 전체 4개 공사중 2개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 비율로 선급금 지급

■ 선금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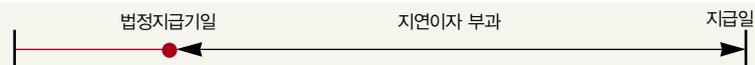
- 선금금을 법정지급기일에 지급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 보증서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제출요청일부터 제출일까지)은 기간계산에서 공제가능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날
- 선금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
- ▲ 선금금 법정지급기일
- ◆ 선금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
-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지급한 날

-지연이자 계산기간 =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34일 : 6.17~7.20)  
 -지급보증서 요청일부터 제출일까지의 일수(23일 : 6.8~6.30) = 11일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방법

예

① 선금금을 미지급한 경우

- 총계약금액 : 5,000만원
- 선금금 : 1,000만원(계약금액의 20%)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 : 2011. 3. 17
- 선금금 지급기일 : 2011. 4. 1<sup>주1)</sup>
- 선금금 지연이자 : 49.6만원

(단위: 만원)

| 구분   | 기성금액        |       | 당해 <sup>2)</sup> 선금금 | 선금금 <sup>3)</sup> 기산일 | 선금금 <sup>4)</sup> 지연일수 | 지연 <sup>5)</sup> 이자 |
|------|-------------|-------|----------------------|-----------------------|------------------------|---------------------|
|      | 일자          | 금액    |                      |                       |                        |                     |
| 1회기성 | 2011. 4. 30 | 1,000 | 200                  | 2011. 4. 2            | 29                     | 3.2                 |
| 2회기성 | 5. 31       | 1,000 | 200                  | 4. 2                  | 60                     | 6.6                 |
| 3회기성 | 6. 30       | 1,000 | 200                  | 4. 2                  | 90                     | 9.9                 |
| 4회기성 | 7. 31       | 1,000 | 200                  | 4. 2                  | 121                    | 13.2                |
| 5회기성 | 8. 31       | 1,000 | 200                  | 4. 2                  | 152                    | 16.7                |
| 계    | -           | 5,000 | 1,000                | -                     | -                      | 49.6                |

주1)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주2) 당해 기성금의 총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선금금 X 당해기성금/총 계약금액)  
 주3) 선금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주4)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주5) 당해 선금금 X 0.20(지연이율) X 선금금 지연일수/365

② 선금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한 경우

- 총 계약금액 : 10,000만원
- 선금금 : 2,000만원(계약금액의 20%)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 : 2011. 4. 15
- 선금금 지급기일 : 2011. 4. 30
- 선금금 지급액 : 1,000만원(2011. 5. 10 현금지급) → 지연일수 10일
- 선금금 지연이자 : 1,000만원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5.5만원 = 1,000만원 X 0.20 X 10일(지연일수)/365일) + 1,0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48.6만원) = 54.1만원

(단위: 만원)

| 구분   | 기성금액        |        | 당해 <sup>2)</sup><br>선급금 | 선급금 <sup>3)</sup><br>기산일 | 선급금 <sup>4)</sup><br>지연일수 | 지연 <sup>5)</sup><br>이자 |
|------|-------------|--------|-------------------------|--------------------------|---------------------------|------------------------|
|      | 일자          | 금액     |                         |                          |                           |                        |
| 1회기성 | 2011. 5. 31 | 2,000  | 200                     | 2011. 5. 1               | 30                        | 3.3                    |
| 2회기성 | 6. 30       | 3,000  | 300                     | 5. 1                     | 61                        | 10                     |
| 3회기성 | 7. 31       | 1,000  | 100                     | 5. 1                     | 92                        | 5                      |
| 4회기성 | 8. 31       | 2,000  | 200                     | 5. 1                     | 123                       | 13.5                   |
| 5회기성 | 9. 30       | 2,000  | 200                     | 5. 1                     | 153                       | 16.8                   |
| 계    | -           | 10,000 | 1,000                   | -                        | -                         | 48.6                   |

■ 위반행위 유형

• 선급금 미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20%)보다 적은 비율(10%)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수령일부터 15일 또는 계약일부터 15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 심결례

**사례 ① /** 건화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주)성운특수건설에게 '호남복선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중 삼영 1, 2터널 4차, 5차, 6차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중 기성금을 통한 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

**심결요지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바, 피심인이 4차, 5차, 6차 공사의 선급금 일부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제재내용 /** 【시정명령】 피심인은 미지급한 선급금 1억4천700만원 및 지연이자 6천6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시정조치

📖 Q&A

**Q**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기성물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바,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 1996년 4월 10일에 발주자로부터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100억원에 도급받아 1996년 5월 1일에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10억원에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선금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원사업자의 선금금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은?

- A** ① **지급기일**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기 이전인 1996년 4월 10일이라면 건설위탁일인 1996년 5월 1일부터 15일 이내, 즉 1996년 5월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후인 1996년 5월 10일이라면 1996년 5월 25일까지 선금금을 지급해야 함.
- ② **지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공사비의 일정률로 지급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10%를 선금금으로 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10%인 1억원을 지급해야 함.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 용도 등 선금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내역별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Q**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금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선금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미지급 선금금에 대한 화의채권 귀속여부는 화의법상 문제로 별도 판단 필요

**Q**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금금 20%를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한 결과, 발주처와 계약한 도급금액의 120%일 경우 선금금 지급은?

- A**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금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하도급금액에 발주자로부터의 선금금 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하도급법 제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함

##### ■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가장 빈번한 경우 중의 하나로서 계약 목적물의 검사과정에서 검사시기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하여 객관적인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검사시기도 원사업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지 못하도록 함

##### ■ 적용기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합격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임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으며, 10일이 되는 날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산됨

#### ■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쌍방이 합의하여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경우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수급 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률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검사결과 지연 통지
- 제조업에서 대량납품에 따른 샘플 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시 계약서에 반품관련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제37조 검사 및 인도)

-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심결례

**사례 1 /** 남청중합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5-102호) 2004년 9월 15일 신고인에게 강원도 원주시 정산지구의 '농업용 저수지 제당의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 후, 2004년 12월 14일 신고인으로부터 동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하도급계약상의 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5일 발주자인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자, 감독관이 자 발주자인 원주지사는 준공검사를 요청 받은 당일 동 저수지제당의누수를 측정하고 결과 측정시점에서의 누수량은 허용 누수량 범위 내로 치수되었음을 인정하나, 제당의 수위가 공사 착공 전 수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수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인 검토의견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의 검토의견은 기성금 지급조건인 준공인가가 아님을 이유로 기성금 8천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심결요지 /**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심인이 수급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성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은 그 승인을 위한 검사시점, 검사시 제당의 수위, 허용 누수량 및 그 측정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지급조건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피심인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인으로 부터 준공 통지를 받은 날(2004년 12월 14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공사는 2004년 12월 24일을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심인이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8천만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2005년 2월 22일)을 초과한 날 부터 실제 지급할 날 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당시 이자율 연 25%)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Q&A

**Q** 지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월 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의 검사결과를 해 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지만, 검사결과와 통보는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함

**Q** 건설위탁관계에서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뒤,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A** 목적물의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함.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후 원사업자로부터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기 사실이 입증되면 하도급법에 의한 목적물의 수령으로 간주됨

**Q** 수급사업자가 기성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 증빙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검사를 하여도 무방한지?

**A**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Q** 원사업자가 완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양품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 목적물의 수량이 많아 샘플링 검사를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상기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요구가 가능하나, 지나치게 장기간이 경과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Q**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운영계약서의 내용이 하도급법 위반 여부?(VMI운영계약은 사용량에 따른 지불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

**A**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 의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우 물품을 제조하여 제때 납품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제조경비, 보관비용 등 관련 제비용을 적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VMI 창고에 물품이 실제 입고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사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검사,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Q** 포장된 상태로 위탁상품을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시에 하자를 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쌍방 합의하에 납품 후 발견되는 불량을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서면통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와 납품 이후에 발생하는 불량에 대비하여 일정기간의 평균 불량을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 목적물 인수시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합격한 것으로 보되, 판매단계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해결방법을 정해 약정할 수 있을 것임.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한 약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다른 담보수단이 있는데도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을 초과하여 납품대금에서 유보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음

**Q**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A** 보상비용 청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 또한 불량부품으로 인한 완제품의 결함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 직·간접비용에 대한 보상범위 및 방법은 쌍방 간 서면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나, 보상비용 전액을 확일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Q** 건축물 준공 후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미정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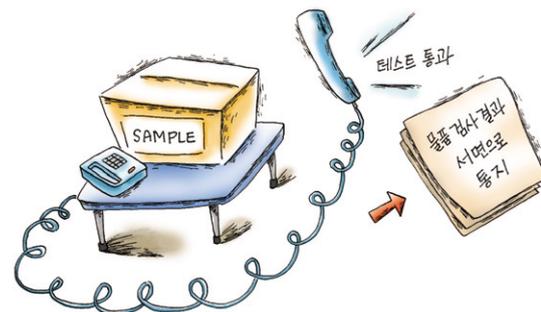
**A** 건설 위탁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수급사업자의 검사요청을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 원칙임.

**이것만은!**

☞ 납품·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해서는 안됩니다.

“00대리입니다. ... 금번 00물품은 어제 잘 받았구요. 샘플 테스트 결과, 별 하자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테스트 결과 꼭 보내달라구요? 한 두번 거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귀찮게 뭘 그렇게 일일이...”

▶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라.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비율 등(하도급법 제13조)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으로 간주(법 제13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됨(법 제1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면 안됨(법 제13조 제5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6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7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8항)

### ■ 규정취지

-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면 수급사업자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종업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해지고 최악의 경우 부도·파산할 수도 있어 수급사업자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규정

### ■ 적용기준

####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현금성 결제수단 :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용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포함)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됨
  - ※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의 적용대상

- 1999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
  -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판단기준
    - ①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
    - ②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선금금 지급에서도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구분    | ~1998. 5. 11 | ~1998. 12. 31 | ~2000. 5. 31 | ~2002. 6. 9 | ~2002. 6. 10 |
|-------|--------------|---------------|--------------|-------------|--------------|
| 고시할인율 | 연 12.5%      | 17% 또는 19%    | 12.5%        | 9.0%        | 7.5%         |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액수 × 할인율 × 지연일수/365일

- 지연이자 =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선금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지연이율 : 연 20%(2009. 9. 15~)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 지연이율 × 지연일수/365일

■ 유의사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목적물의 납품과 동시에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검사종료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 간주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 잡는 경우

###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대법원 판례(94누10320 등)

-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음
- 즉 원사업자가 정산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하도급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인수되면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밖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의 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임

###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심결례

**사 례 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건(의결 제2012-34호)

피심인은 2008년 3월과 2009년 1월 (주)에스엘에이에게 「행복도시 첫마을 마스터플랜 및 제1단계 공동주택 실시설계」와 「첫마을 2단계사업 지구 B-4블럭 터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천343만6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9천639만3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91만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심결요지 /**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없이 용역의 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천343만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됨.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9천639만3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691만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 【시정명령】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조치

**사 례 ② /** (주)신일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건(의결 제2012-48호)

피심인 신일건설은 다우건설(주)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구울하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 등 41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위 공사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19억1천18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심인 신일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인천삼산(3)A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등을 도급 받아 그 중 '파일항타공사' 등 106건 공사를 (주)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주)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음

피심인 신일건설은 (주)가우테크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상계장암 1, 2단지 SH아파트 건설공사 중 주방기구상판공사' 등 61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685만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심결요지 /** 피심인 흥승극은 피심인 신일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인인 피심인 신일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제재내용 /** 【고 발】 (주)신일건설 및 대표이사 흥승극 고발조치  
【과징금부과】 과징금 31억1천200만원 부과 처분

## Q&amp;A

**Q** 하도급법상 기간계산 원칙, 기산일 결정,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기준은?

**A** 「기간계산 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시작일을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고 해당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

「기산일의 결정」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계산 예시」 목적물 인수일이 2010년 3월 14일인 경우, 시작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10년 3월 15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2010년 5월 13일, 기산일은 2010년 5월 14일이며, 이 날부터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가 적용됨

**Q**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의 판단기준은?

**A** 「제조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

「건설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검사가 완료된 날

「용역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Q**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

**A**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일수 30일 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A** 당사자 간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하도급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임

**Q**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가능한 어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할인가능 어음'이란 어떤 어음을 의미하며, 할인가능 어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A** 「할인가능 어음」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해 어음할인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

- ①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②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 ③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 ④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⑥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 ⑦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추 취급기관

「할인가능 어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자」 원사업자

**Q** Plant 제어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 설치완료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 중 대금지급조건이 선급금 20%, 기성금 70%, 준공 완료 후 10%로 되어 있을 을 들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종합준공이 안 되었음)로 시운전이 불가능함에도 15%의 공사대금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보호책은?

**A** 이 경우 준공의 성격이 단순히 납품, 시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사가 계약을 통해 여타 공정의 공기지연도 예상하면서 모든 공정이 완료된 후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면 시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준공금을 유보하고 있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준공금 10%를 초과한 15%를 유보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Q** 해외 Project를 Turn-key 수주할 경우 물품납품시 대부분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5~15%를 유보하고 Project 종합준공 후 유보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가 국내업체(하도급법 적용대상)에게 상기의 대금지급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체결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

**A** 발주자가 일정 비율의 공사대금을 Project 종합준공 이후로 유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전가하여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목적물의 성능을 종합준공 이후라야 알 수 있거나 시운전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정당한 이유로 검사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당해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Q**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여부?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나,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서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

**Q**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조항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약정'과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이 인정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라 함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당해 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써 당해 업종의 상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라 하겠음  
상기 예외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Q**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지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지연 인지?

**A**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이것만은!

☞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경과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00대리입니다. ... 금번 수령한 00물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예? 물품 받고나서 60일이 경과했으니까,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구요? 허허, 거래 한 두번 하실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리십니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됩니다.



마.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하도급법 제13조의2)

-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 제1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법 제13조의2 제2항)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④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 제3항)
-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13조의2 제5항)

■ 규정취지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예치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교부하여야 함
-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추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기성금 지급주기(월수)} \times 2$$

### ■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 공동 원사업자 간 지분비율 등에 의해 대금 지급보증 액수를 결정
  - 공동 원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거래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있음
- 공동 원사업자 중 1개업체가 A 이상 등급업체라도 잔여사는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함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 의무의 관계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임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4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약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예 원사업자 부도시)에 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同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심결례

**사례 ① /** (주)신성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인 원광이앤지주에게 삼성SDI 전지동 증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심결요지 /** 원사업자는 원광이앤지주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위반

**제재내용 /** 【시정명령】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14억9천600만원에 대해서 지급보증토록 시정조치

**사례 ② /** 대주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인 제이건설에게 연제 3차 대주피오래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심결요지 /** 원사업자는 제이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위반

**제재내용 /** 【경고조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어서는 아니됨

## Q&A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면 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면제되는지?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상호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Q** 원사업자가 수 개의 공사를 진행 중일 때, 1개의 보증서로 일괄보증이 가능한지?

**A** 하도급법상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지급도 유효하나, 매 하도급계약시마다 일괄보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Q**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기준(신용평가 A등급)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A**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공정위에서 고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은 하도급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기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음

**Q** 공제조합의 지급보증 한도초과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급사업자도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지?

**A** 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직접 지급에 관한 조건부 합의 등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가 조건부로 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Q** 원사업자가 하도급 금액의 20%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A**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이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상 계약이행보증금을 10% 초과하여 요구한 행위만으로 당연 위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거래관행, 공사 성격,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 판단 필요

**Q**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공동도급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지?

**A**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  
<공동도급 공동 이행방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주체는 개별 원사업자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여부를 판단

**Q**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

**A**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없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원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이것만은!**

☞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반드시 지급보증해야.

“OO대리입니다. ... 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 말인데요. 그거 하려면 신용기관에서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규모 쪼끔 되는 회사가 설마 대금지급 안하겠어요. 지급보증서 굳이 안드려도 되죠?”

▶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법 제16조 제4항)

#### ■ 규정취지

- 하도급계약은 통상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함으로써, 설계변경 및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의무화

#### ■ 적용기준

##### ■ 적용요건

- 제조·건설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함

##### ■ 조정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 조정금액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 타 법률 조항과의 충돌시 적용

-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도급계약이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

■ 하도급비율이 원도급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 원도급대비 하도급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그 당사의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받고도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 또는 받은 비율 또는 내용보다 적게 지급한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15일을 초과한 날까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동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공사에 대하여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하도급 공기, 납기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준 경우
- 하도급계약 시점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하면서 당해년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다고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님

심결례

사례 ① / 삼협개발(주)는 1990년 2월 7일~1991년 11월 30일 기간 중 (주)제일산업과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주)제일산업에게 증액 조정해주지 아니함으로써 1천19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설비공사 계약금액 | 물가변동 대상금액 | 발주자 증액 지급대금 |      | 피심인 지급 의무대금 |      |
|-----|-----------|-----------|-------------|------|-------------|------|
|     |           |           | 지급대금        | %    | 의무대금        | %    |
| 도급  | 1,044,977 | 172,585   | 15,439      | 12.3 | -           | -    |
| 하도급 | 586,300   | 96,831    | -           | -    | 11,910      | 12.3 |

심결요지 / 피심인은 (주)제일산업에게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발주자로부터 그가 받은 동일한 사유로 (주)제일산업에게 위탁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 조정해 주어야 함에도 하도급대금 1천19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위반

제재내용 /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미조정액 1천191만원을 (주)제일산업에게 지급토록 시정조치

사례 ② / 효동개발(주)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서후-평온간 국도건설공사」 중 8개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

심결요지 / 「서후-평온간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사 등 36건의 공사를 효동개발(주)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이하 '설계변경 등'이라 함)의 이유로 공사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법정기한을 61~268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함.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위반행위

**제재내용 /**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조정 지연행위를 금지토록 시정조치

**사례 ③ /** 원사업자인 포스코개발(주)는 1996년 1월 9일~1998년 9월 2일 기간중 수급사업자인 (주)원성 등 135개 업체와의 건설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 292억4천300만원을 증액 조정받고도 (주)원성 등 1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99억7천600만원을 조정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추가 증액 조정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또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7천400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원사업자는 한영토건(주)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천6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고,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6천500만원 및 어음할인료 1억1천3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 원사업자인 포스코개발(주)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지 아니한 사항 및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위반

**제재내용 /** 【시정명령】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및 지연이자 100억4천900만원, 선급금 지연이자 3천600만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1억7천800만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시정조치

 Q&A

**Q**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방법 및 시기는?

**A**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원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계약 시점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물가변동을 적용해 주는 기준시점이 하도급계약 시점보다 앞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음. 또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부터 물가변동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이 원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이 적용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시 그 만큼을 공제할 수 있음

**Q**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신발장, 싱크대 등을 제조위탁시, 위 시설물을 제작납품만 하고 원사업자가 설치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의무가 있는지?

**A** 하도급법상 물가변동분 반영 의무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탁물을 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

**Q**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A**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해주지 않아도 됨

**Q**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 부분과 신규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A** 「기존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부분」 우선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률(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 공종부분」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Q** 전문건설업체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시공 중인 아래 공사계약의 위법성 여부는?

① 하도급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 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시 5%만 적용한다'는 내용

② '견적내용 중 도급이 없는 공종은 차후 설계변경에 반영되더라도 기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③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특기 사항으로 당해년도에는 물가변동 대금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A**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 제한은 위법임

② 동 특기사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계약되었다면, 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해당분에 대해서는 대금조정을 해주어야 함

**이것만은!**

☞ 설계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꼭 조정해야...

“00그룹 00대리입니다. 이번에 발주사로부터 스펙이 약간 변경되어서 추가 금액을 약간 더 받았습니지만,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도급대금을 또 조정해야 될까 싶습니다.”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됩니다.



###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하도급법 제16조의2)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6조의2 제2항)
  -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6조의2 제4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 제5항)
    - 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협의 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규정 취지
  - 목적물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이를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등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원사업자는 조정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가 아닌 인건비 상승, 공사 저가 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원재료 가격변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Q&A

**Q**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인지?

**A**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며,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위법임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사유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아닌 인건비,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적자보전 등 원자재 가격 변동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의 신청 내용 검토 결과 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요청 등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 결정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규정 취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는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당성 즉, 하도급계약 방법상의 부당성이 우선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당성에 연유하여 하도급계약 금액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 적용기준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수준인가?
  - 통상 지급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한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현저히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 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 결정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주관적 요건 :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가?
  -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 심결례

**사 례 ① /** SK건설은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 이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내부 원가절감 기준예가' 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가 2개업체를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하였음

**심결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현실에서 낙찰기준을 '최저가' 로 공지하였고, 낙찰 혹은 유찰선언 없이 다시 입찰을 실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SK건설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부과

**제재내용 /** 【시정명령】 경쟁입찰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됨

**사 례 ② /** 엘에스전선은 전선 포장재를 제조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2008년 대비 2009년 발주물량이 17%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가격을 5%인하하였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3천100만원의 손실을 입힘

**심결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계약에서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하도급계약의 금액을 감액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 【경고】 엘에스전선은 손실분 3천100만원을 자진시정하여 경고조치

**사 례 ③ /** 포철산기는 2008년 1월 24일부터 같은해 10월 22일까지 11건의 공사를 6개의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금액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심결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도급내역 상의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므로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인 하도급계약은 위법하다고 판단

**제재내용 /** 【과징금】 포철산기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였으므로 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

**사 례 ④ /** 대성산업은 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해 5개사가 참여하는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업체가 결정되었음에도 자체 내규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최저가 입찰 가격 대비 3% 이내의 범위로 입찰한 업체는 재입찰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저가 2개 업체에 대해 재입찰 실시

**심결요지 /** 입찰 참가업체가 자신이 실행가능한 최저가로 입찰하였을 것인데 피심인의 공사원가를 초과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저가 업체를 낙찰하여야 함에도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내부규정을 근거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 【시정명령】 당초 최저가 입찰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



**사 례 ⑤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하도급업체 7개 업체에게 납품업체를 5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한 후 견적 제출을 요청 함. 이에 7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협상을 실시하여 단가를 12.5% 인하하였음.  
이후 2개 업체 외 2개 업체를 추가하여 총 4개 업체와 재협상하여 단가를 15% 인하하였음. 이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위 4개 업체를 포함, 5개 업체와 거래를 계속하였음

**심결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제재내용 /** 【과 징 금】 공정위는 3천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교육이수명령】 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이수명령 부과

**사 례 ⑥ /** STX조선해양은 통상적으로 선박블록 임가공에 대해 M/H 단가를 부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수급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기준에 따름. 해당 계약은 이러한 M/H가 기재되지 않고 총액만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선경기 불황, 수주부진 등의 이유로 일률적으로 선행타재는 25%, 타재는 30%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결정

**심결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계약에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그 하락요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 【과 징 금】 공정위는 5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단가 인하되기 전 하도급대금과의 차액 지급명령

## Q&A

**Q** 정부발주 공사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A**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 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함

**Q**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가?

**A**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절감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납품의 경우 거래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이것만은!

☞ 원가절감,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수의계약 시에는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의 합 미만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의 투찰 이후 다시 대금 인하 협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나. 감액 금지

### ■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 3. 29 개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감액 전 서면발급 의무」(2011. 3. 29 신설)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규정 취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계약 후에 부당하게 감액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
- 개정 전 '부당한' 감액 금지에서는 법 집행기관의 감액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였으나, 법 개정 후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 금지 이후에는 감액을 하고자 하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감액 시 사전 서면발급 의무를 새로이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심결례

사례 1 / 삼양건설산업은 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약정서' 라는 것을 함께 징구하였음. 안전약정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 삼양건설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일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를 보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해당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위 약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대금 지급

심결요지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비용도 원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며 공제한 하도급대금은 부당 감액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공제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

사례 2 / 삼성전자는 2003년 4월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6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기납품 받은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였음. 그 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하도급대금 중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

심결요지 /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판단

제재내용 / 【과징금】 과징금 부과조치

사례 3 / 평화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고무호스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원자재를 가공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며, 피심인은 매월말 원자재 공급대금을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음. 2009년 1월부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원자재 공급수량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심결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원자재의 공급과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되는 과정을 볼때 피심인의 수량 결정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심인이 주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자재반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재내용 / 【시정명령】 감액 공제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

사례 4 / 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인수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의 10%인 1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음

심결요지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100% 현금지급을 대금 지급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의 10%를 돌려받았으므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감액한 1천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

사례 5 / 최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공정위는, ① 감액된 계약 현황을 근거로 각 계약 건 별 감액사유에 대해 전수조사 ② 법 개정 이후 감액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감액 전 서면발급 여부를 조사하였음 ③ 직접 법 위반행위로 적시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감액 전 서면발급 의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단순히 정산 합의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원사업자가 감액을 하고자 할때, 그 내역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설명

## Q&amp;A

**Q**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A** 당초 예상보다 저가의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Q**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A**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Q**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A**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Q**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A**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계약 변경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다.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 ■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①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②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 규정 취지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일 이전에 조기결제토록 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

##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하고 기성금 지급시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 또한 제1회 기성금 지급시 전액 차감하는 경우도 위법
-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 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

## ■ 적용제외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 공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규정 취지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

####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의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 대표사례

- 원사업자의 관련 부서의 회식, 체육대회, 야유회 등에 상품을 협찬하는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 마.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규정 취지

-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함

#### ■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적용제외

- 수급사업자가 노임, 장비사용료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작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임 등의 지급과정에 간섭하거나 품질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내지 경영지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
- 수급사업자의 능력부족으로 인부동원, 자재구입, 설비라인 설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지연이 우려되어 원사업자가 이를 알선해 주는 경우
- 건축물 등의 위탁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공기내 완공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을 확인하는 경우

### 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법 제12조의3 제1항) (개정 시행 2011. 6. 30)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한다.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발급 의무」(2011. 3. 29 신설)

#### ■ 규정 취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지게하며, 서면에 의한 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

#### ■ 적용기준

##### ■ '기술자료'

-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②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법 제2조 제15항)
  -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예시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생산원가 내역서 등)

#####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 지도,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자료제공을 요구
- 공동 특허출원하거나 특허출원 지원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 등을 합의한 후 기술자료 공유
- 제품하자 원인규명 등 품질의 공동관리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 등을 합의한 후 기술자료 공유

## 3. 발주자의 의무사항

###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재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 ■ 규정 취지

-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이 많아지고 원사업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어렵게 됨으로써 연쇄 도산하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직접 지급제도를 도입

### ■ 직접 지급 사유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의 기성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효과 및 적용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함

### ■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성검사·확인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에 의해 확정됨
-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범위로 함.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 지급하면 됨

### ■ 실무상 유의사항

-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하도급 부분에 관한 채권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므로, 발주자는 공탁을 하여서는 안됨(공탁할 경우 해당 공탁은 무효)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정해진 대금 지급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제가 가능

###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 직접 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발생
- 직접 지급 시 공탁사유가 있을 때 공탁 가능(직접 지급효력 발생 전 가압류 등)
-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금 지급
-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직접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

### ■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 지급제도

- 직접 지급 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
  - 이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전 (가)압류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 하도급법 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이 경우 발주자가 직불하지 않고 공탁처리
-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 지급제도
  -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여야 함

## 📖 심결례

**사 례 ① /** 씨티씨는 원사업자에게 골리앗 크레인 중 일부시설의 제조위탁을 하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3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피심인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음

**심결요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합의를 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

**제재내용 /** 【시정명령】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

**사 례 ② /** 해룡학원은 원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고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를 위탁하였음. 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3, 4회 기성을 수령하고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3, 4회 기성금 지급을 요청.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이 가압류 되었다고 하면서 지급요청을 거부하였음. 이후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원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였음

**심결요지 /** 원사업자가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면 발주자는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함. 해당 사례에서 3, 4회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지급 요청이 가압류 통보보다 하루 앞서 전달되었던 점을 확인해 보면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제재내용 /** 【시정명령】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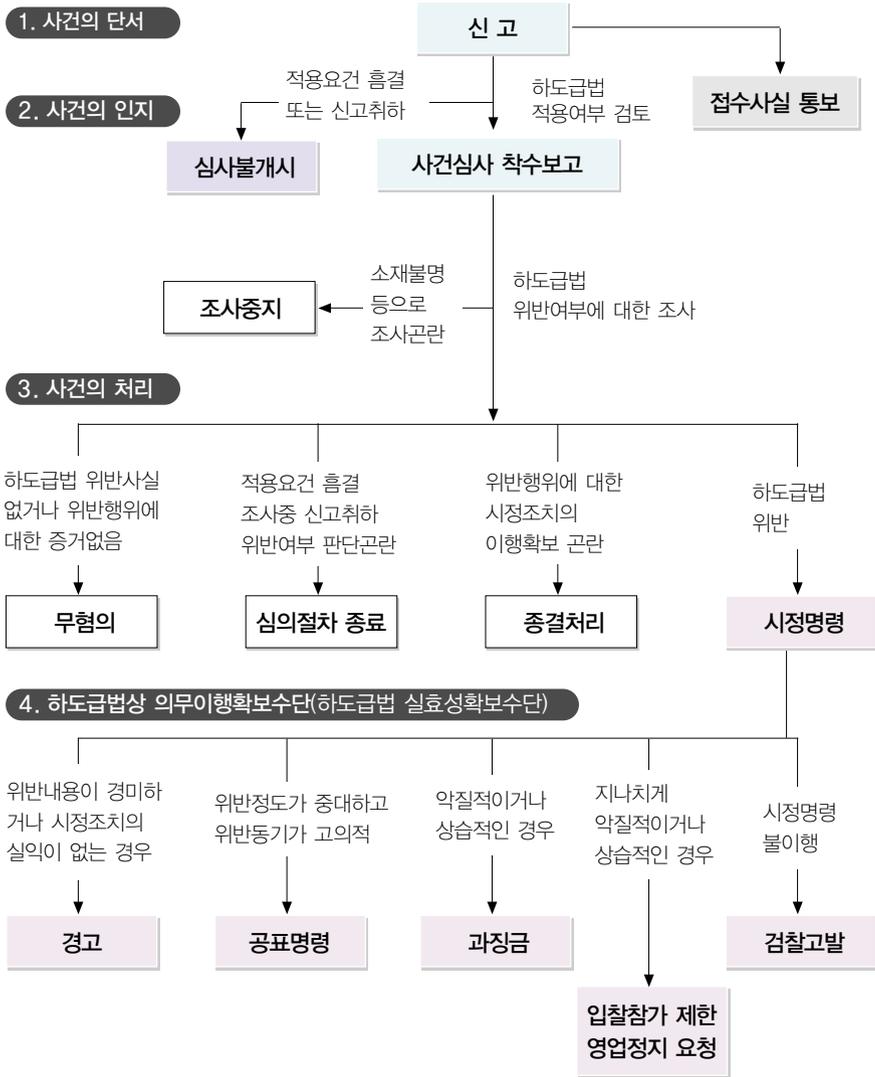
# IX

## 제3장 | 하도급 부문 법 위반 사건의 처리

1. 사건 처리 절차
2. 제재 조치
3. 인센티브

### 1. 사건 처리 절차

#### 가.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2. 제재 조치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비율, 위반행위의 유형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함

##### ■ 입찰참가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입찰참가제한 누산벌점 10점초과, 영업정지요청 누산벌점 15점 초과)

###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 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여 3년간 누산 집계

| 경고(서면실태조사) | 경고(신고 등)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
| 0.25       | 0.5      | 1    | 2    | 2.5 | 3  |

## 3. 인센티브

| 요건   | 인센티브 내용   |
|--|---|
| <p>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p> <p>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p> <p>② 법 위반행위가 없는 원사업자</p> <p>③ 경쟁입찰 비율 90% 이상인 원사업자</p>         | <p>①+② : 조사 년도 이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p> <p>①~③ : 1회에 한하여 하도급법 관련 현장 직권조사 면제</p>   |
| <p>직전 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p> <p>하도급 특별교육 이수(대표이사, 임원)</p>   | <p>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2점 감점</p> <p>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1점(대표) 0.5점(임원)감점</p>   |
| <p>공정거래위원장 표창</p> <p>상생협력관련 가이드라인 사용</p> <p>현금결제비율 90~100%</p> <p>현금결제비율 100%</p> <p>전자입찰 80% 이상 우수업체</p> <p>전자입찰 60% 이상 80% 미만 우수업체</p> | <p>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3점 감점</p> <p>가이드라인 1개당 2점 감점</p> <p>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 감점</p> <p>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1점 감점</p> <p>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1점 감점</p> <p>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 감점</p> |

---

부록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및 체크리스트

---

##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교육·감독 체계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뜻함

### 2 CP는 왜 필요한가?

- 공정경쟁 및 CP 운영에 대한 당위성 강화
  - CP 운영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특히 대기업의 1차 협력사 합동 도입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으로까지 CP를 확대코자 하고 있음
-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의 사전예방
- 투명·정도경영 기업으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



### 3 CP 도입시 혜택은?

- 과징금 경감 인센티브 부여

| CP등급  | 과징금 경감내용         |
|-------|------------------|
| A등급   | 과징금 10% 이내 경감 가능 |
| AA등급  | 과징금 15% 이내 경감 가능 |
| AAA등급 | 과징금 20% 이내 경감 가능 |

- 직권조사 면제

- 대상 : 대규모 소매점 고시, 신문고시, 경품고시 위반행위,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 CP등급  | 직권조사 면제 기간 |
|-------|------------|
| A등급   | 1년         |
| AA등급  | 1년 6개월     |
| AAA등급 | 2년         |

### 4 CP의 구성요소

| 9대요소                | 필수 (7개)     |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
|                     |             |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
|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                 |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                 |
| 내부감독 체계의 구축(CP의 핵심) |             |                 |
| 관련 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             |                 |
|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                 |
| 임의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
|                     | CP 운영 성과 평가 |                 |

## II. 포스코패밀리 CP 운영 현황

### I 기업집단 소속회사 71개 출자사 중 22개사가 도입·운영 중

• 출자사 도입 현황(2012. 8월 현재)

| 시기  | 2003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회사명 | 포스코 건설<br>포스코 ICT<br>포스코 특수강 | 포스코 강판<br>포스코 캠텍<br>포스코 엠텍 | 포스코 플랜텍 | 포스틸<br>포스 메이트 | 포스코 에너지<br>포스코 A&C<br>SNNC | 포스코 엔지니어링 | 대우Int. 엔투비<br>포스코 AST<br>성진 지오텍<br>포스코 TMC | 포스 하이메탈<br>포스화인<br>포레카<br>포스코 NST |

※ 2012년 하반기 계획(3개사) : PNR, 포스코터미날, 포스코LED

## III. 포스코의 CP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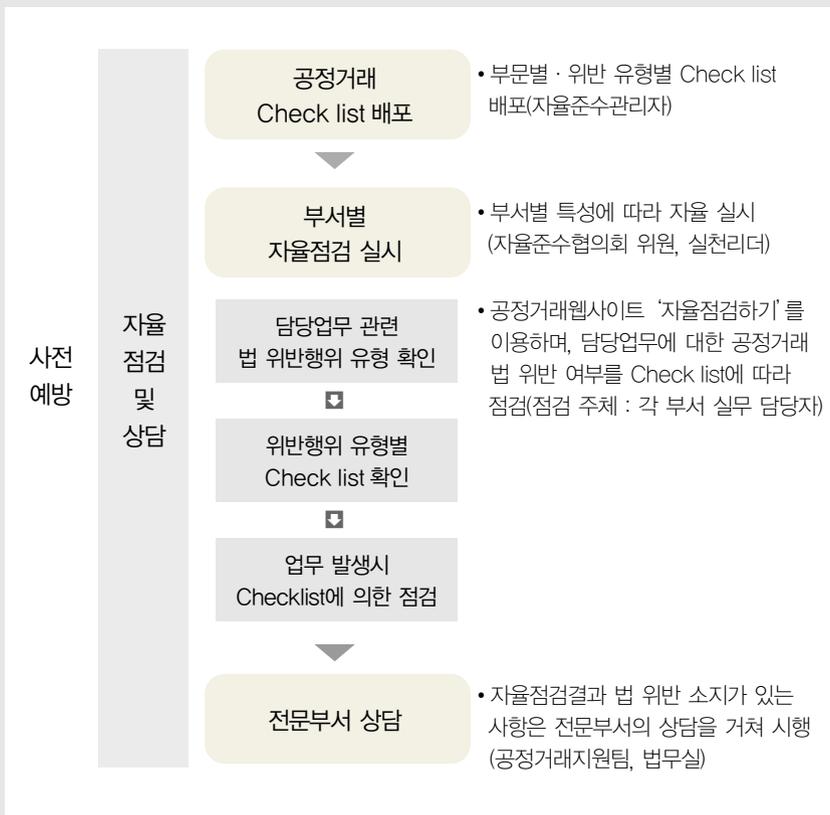
### I CP 운영 경과

- 2001. 07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 제정
- 2002. 07 同 규범에 의거, 포스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수립
- 2002. 08 경영층 및 감사위원회 보고 후 도입·시행
- 2003. 04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에서 선임
- 2003. 06 POSCO 윤리규범 선포(공정거래 준수 의지 천명)
- 2004. 04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 CP 운영 전담부서 신설(공정거래지원팀)
- 2006. 0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평가 최우수
- 2007. 04 제1회 'Fair Trade Academy' 개최(분기 1회 지속 실시 중)
- 2009. 03 공정거래 상생협약 이행실적 평가 최우수 획득
- 2010. 12 국내기업 최초 3회 연속 CP 등급 'AA' 획득

### II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CP 핵심요소 7개와 2개의 임의요소 운영 중

|                                  |   |
|----------------------------------|---|
|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 • 윤리규범 선포 시(2003. 6) 최고 경영층이 공정거래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                        |
| ② 자율준수관리자 지정·운영                  | • 이사회 결의에 의거, 공정거래 담당 임원 변경 선임(2011. 3)                                       |
| ③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 1996년 공정거래 편람 최초 제작, 2001년, 2004년~2010년 개정<br>• 공정거래 현업 업무가이드 제작(마케팅, 구매)   |
| ④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 e러닝 공정거래 교육과정 개설(2002. 10) 및 개선(2010. 12)<br>• 사외전문가 초청 등을 통한 실무직원 교육 지속 실시 |
| ⑤ 내부감독 체계 구축 (Monitoring System) | • 공정거래 Check list에 의한 자율점검체계 운영<br>• 자문·상담 및 취약부문 실태점검 병행                     |
| 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 •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운영<br>•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 시행                              |
| ⑦ 공정거래 관련 문서관리                   | •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KMS 활용)   |
| ⑧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 공정거래 관련 13개 부서장으로 「자율준수협의회」 및 실천리더 구성                                       |
| ⑨ CP 운영 성과 평가                    | • 2010년 공정위 CP 등급 'AA' 획득(참가기업 중 최고 등급)<br>• 2009년 상생협력 이행평가결과 최우수(A+) 등급 획득  |

### 3 법 위반행위 감독 시스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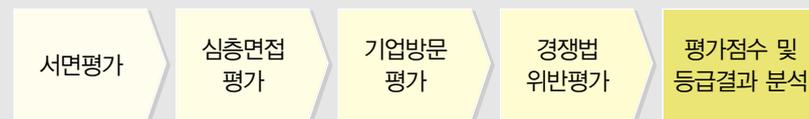
### 4 공정거래 자율점검이란?

Check list를 활용한 법 위반행위 사전감시 체계로서, 실무 담당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 5 자율점검 체계도



### 6 CP 등급평가 절차



## 체크리스트 Check list

### 제1위반 유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출자)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공정거래법 제7조) | <p>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가?</p> <p>▶ 본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시장점유율이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인 경우</li> <li>· 제2위 회사와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것</li> <li>·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결합</li> <li>·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li> </ul> <p>▶ 본 기업결합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지위에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거나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이에 편승한 기업결합</li> <li>·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 유인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고 이에 편승한 기업결합</li> <li>·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기업결합</li> <li>· 다른 주주를 강요, 협박, 기만 또는 부당 유인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li> <li>· 상대회사 임원에 대한 배임중죄, 공무원에 대한 중죄 등을 통한 기업결합</li> <li>· 회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li> </ul> |
| 기업결합의 신고 (공정거래법 제12조)  | <p>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가?</p> <p>▶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li> <li>· 20% 이상 취득으로 기업결합 신고 후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추가신고 필요</li> </ul> <p>▶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임원,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li> </ul> <p>▶ 회사의 합병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연명으로 신고</li> </ul> <p>▶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기업결합의 신고 (공정거래법 제12조) | <p>▶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li> </ul> |

### 제2위반 유형 대규모기업집단 규제행위(출자)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상호출자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9조)     | <p>자기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인가?</p> <p>▶ 다음의 경우는 취득은 인정하되 일정기간 내에 처분 의무를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단,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li> <li>·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단,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li> </ul>   |
| 채무보증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p>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인가?</p>   |
| 기업집단 편입신고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 <p>주식취득 등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는가?</p> <p>▶ 지분을 기준 소속회사 변동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li> </ul> <p>▶ 실질지배력 기준 소속회사 변동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li> <li>·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li> <li>·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의 임원의 겸임, 임원의 겸임 후 복직 등이 있는 경우</li> <li>·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p><b>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b><br/>(공정거래법 제11조의2)</p> | <p>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50억원 이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인 경우에 국한되지 않음)</li> </ul> </li> <li>▶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li> </ul> </li> <li>▶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에서 자산은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를 포함</li> </ul> </li> </ul> <p>※ 관련 공시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수탁기관(금융감독위원회)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공시시기의 계산은 영업일 기준이며 공휴일은 제외)</p> |

**제3위반 유형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제도**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p><b>소유지배 구조</b><br/>(공정거래법 제11조의3)</p> | <p><b>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4월 1일자 현황 : 4월 7일까지 공시)</li> <li>· 최대주주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li> <li>· 임원의 구성 현황(4월 1일자 현황 : 4월 7일까지 공시)</li> <li>· 임원의 변동(등기부등본상에 임원에 등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li> <li>·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4월 1일자 현황 : 4월 7일까지 공시)</li> <li>· 계열회사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li> </ul>  |
| <p><b>재무구조</b><br/>(공정거래법 제11조의3)</p>    | <p><b>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li> <li>·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li> <li>· 자기자본의 1% 이상 증여를 하거나 반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li> <li>·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li> <li>·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반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li> <li>·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li> </ul>   |
| <p><b>경영활동</b><br/>(공정거래법 제11조의3)</p>    | <p><b>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 결의), 제527조2(간 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 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li> <li>·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 발생(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li> <li>·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 (법원으로부터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li> <li>·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또는 해제결정 (법원으로부터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li> <li>·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용역의 거래내역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그 세부내역(4월 7일까지)</li> </ul> |

**제4위반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가격 남용<br>(공정거래법 제3조의2)           | <p><b>시장지배적 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한 행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가격을 수급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인가?</li> <li>· 시장지배적 품목의 추정법 제4조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 (단, 10% 미만 사업자 제외)</li> <li>·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li> <li>·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li> <li>·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 각각의 비용 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타사업자의 유사 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 고려</li> <li>· 「현저히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li> </ul> |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br>(공정거래법 제3조의2) | <p><b>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사업자에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거래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인가?</li> <li>·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인가?</li> <li>·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제품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및 기간 설비 또는 지적재산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다른 기업을 중상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인가?</li> <li>· 납품, 주문, 수출쿼터 등을 다른 기업에게 준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하거나, 같은 수단으로 다른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을 매각 또는 인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가?</li> <li>·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른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의 판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사를 통하여 사실상 위의 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인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해<br>(공정거래법 제3조의2) | <p><b>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진입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판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인가?</li> <li>· 경쟁기업의 신규 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인가?</li> <li>· 당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여 경쟁기업의 신규 진입을 불허하는 행위인가?</li> <li>·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및 기간설비 또는 지적재산권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인가?</li> <li>· 기존 유통업자와 배타적 판매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기업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인가?</li> <li>· 국내외 기업의 면허권, 특허권, 상표권 등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함으로써 경쟁기업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인가?</li> </ul> |
| 판매조절<br>(공정거래법 제3조의2)            | <p><b>시장지배적 품목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 추세에 비해 제품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인가?</li> <li>·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 재고량을 최근의 추세에 비해 현저히 증가시키는 행위인가? (판매회사의 재고량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고량으로 봄)</li> <li>· 정당한 이유없이 성수기에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인가?</li> <li>· 회사 간에 생산 또는 판매비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인가?</li> </ul>  |
| 경쟁사업자 배제 등<br>(공정거래법 제3조의2)      | <p><b>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기타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지 않았는지?</li> <li>·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상표, 자본 및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 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강제, 요청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는지?</li> <li>·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기간 제품을 통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고 있지 않은지?</li> <li>· 유통단계별 가격을 책정,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 유도하지 않았는지?</li> <li>· 기타 소비자의 재산상, 신체상, 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li> </ul>  |

**제5위반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판매)**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br>(공정거래법 제19조) | <p>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br/>(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제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제품의 생산이나 출고, 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중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제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제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인가?</li> <li>· 기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가?</li> </ul>   |
|                              | <p>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으로 가격의 인하/인상률, 가격의 인상/인하폭, 최저/최고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할인율, 이윤율 등의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인가?</li> <li>·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금지급기간,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인가?</li> <li>·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인도장소나 방법, 애프터서비스의 기간이나 내용, 방법 등을 공동으로 제한 또는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경쟁사업자 간에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사업자 간에 거래처나 거래지역을 할당하고 상호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객관적,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사업자를 우량/불량업자로 구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신기술의 도입이나 신제품의 판매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인가?</li> </ul> |

**제5위반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구매)**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br>(공정거래법 제19조) | <p>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br/>(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제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제품의 생산이나 출고, 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중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제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제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인가?</li> </ul>  |
|                              | <p>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의 공급업체로부터 가격인상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입자들이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하거나 인상폭을 협정하는 행위인가?</li> <li>· 구매업체 간에 원재료 구입창구를 특정사업자로 한정하고 그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협의 약정하는 행위인가?</li> <li>·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인도장소나 방법, 애프터서비스의 기간이나 내용, 방법 등을 공동으로 제한 또는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경쟁사업자 간에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사업자 간에 거래처나 거래지역을 할당하고 상호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인가?</li> </ul> |

**제6위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판매)**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공동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      | <p>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는 행위인가?</li> <li>· 수입품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입품 취급 유통업자에 대해 공동으로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인가?</li> <li>· 연매 유통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상품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인가?</li> </ul>   |
| 기타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재판매가격 유지, 끼워팔기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우</li> <li>· 판매업자가 싸게 판다는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li> <li>·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법사항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거래거절하는 경우</li> </ul> </li> <li>▶ 거래거절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당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이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가?</li> </ul> </li> <li>▶ 판매업자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인가?</li> <li>▶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인가?</li> </ul> |
| 거래강제 :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제23조)   | <p>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제품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칭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기 제품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다른 제품을 강제적으로 끼워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기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인가?</li> </ul>  |
| 차별적 취급 : 가격차별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인가?</li> <li>· 시장점유율이 낮은 지역에서 경쟁자를 축출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당해 지역에서만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인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 차별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인가?</li> <li>· 가격유지를 목적으로 연매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히 하는 행위인가?</li> <li>· 자본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과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차별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행위인가?</li> <li>· 자기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경쟁제품도 판매하는 판매점 간 결제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인가?</li> </ul> |
| 차별적 취급 : 계열사를 위한 차별 (공정거래법 제23조) | <p>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회사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인가?</li> <li>·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게는 외상기간 단축 등 대금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인가?</li> <li>· 정당한 이유없이 사규, 공문 등으로 계열회사와 우선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인가?</li> </ul>   |
| 차별적 취급 : 집단적 차별 (공정거래법 제23조)     | <p>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유지 등을 목적으로 연매업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인가?</li> <li>· 특정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그 경쟁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에게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가?</li> </ul>   |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입강제 (공정거래법 제23조)     | <p>구입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일명 '밀어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일반적으로 제품을 송부하는 행위인가?</li> <li>·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납품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인가?</li> <li>· 판매점들에게 주문이 없는데도 밀어내기 하는 행위인가?</li> </ul>  |
| 거래상 지위남용 : 이익제공 강요 (공정거래법 제23조)  | <p>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의 판촉활동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판촉사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인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p>거래상 지위남용 : 판매목표 강제 (공정거래법 제23조)</p> | <p>자기가 공급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거래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중단, 벌과금 부과,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행위인가?</li> <li>· 판매목표 강제가 판매지역 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상용되는 경우인가?</li> </ul>  |
| <p>거래상 지위남용 : 불이익 제공 (공정거래법 제23조)</p>  | <p>기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인가?</li> <li>·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가?</li> <li>·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li> <li>· 기존 판매점에 대하여 물가상등, 경영부실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담보액을 과다하게 추가로 제공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가?</li> <li>· 판매점으로부터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 약속어음을 예치함으로써 이중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인가?</li> <li>· 불량제품 교환비용의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 지도록 하는 행위인가?</li> </ul> |
| <p>거래상 지위남용 : 경영간섭 (공정거래법 제23조)</p>    | <p>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의 선임, 해임, 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가?</li> <li>· 자기가 거래상대방 직원의 부적격성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경영지도하는 명목 하에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p>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 영매 (공정거래법 제23조)</p>           | <p>정당한 이유없이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원가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인가?</li> <li>·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인가?</li> </ul>           |
| <p>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 고가매입 (공정거래법 제23조)</p>         | <p>부당하게 제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를 평소보다 고가로 매점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인가?</li> </ul>                  |
| <p>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제23조)</p> | <p>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안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업자에 대해 자기 제품 취급비율에 따라 장려금, 장비지원 등을 현저히 차등하는 행위인가?</li> <li>·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유통업자에게만 장려금, 사례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행위인가?</li> <li>·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ul> |
| <p>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제23조)</p>     | <p>공급하는 제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에게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p>  |
| <p>부당한 고객유인 : 기타의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제23조)</p>        | <p>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p>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구속조건부 거래 : 배타 조건부 거래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인가?</li> <li>·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경쟁자로부터 거래제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판매가격을 경쟁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점으로 하여금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가?</li> </ul>   |
|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공정거래법 제23조) | <p>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p>※ 유통업자에게 일정지역을 책임지역으로 설정해 주고 당해 지역 내에서의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권장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과점적 시장에서 판매점 등에 대하여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지역제한 위반시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인가?</li> <li>·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 가격차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인가?</li> <li>·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도매업자에 대하여 특정 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행위인가?</li> <li>· 도매업자에 대하여 염매하는 소매업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제품판매시 자기가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운송하도록 하는가?</li> </ul> |

| 제6위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구매)                  |   |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기타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양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사용조건, 사양 등을 명기하여 특정업체 Brand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업체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인가?</li> <li>· 국산화 개발 후 당초 합의된 품질수준 수명규정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개발에 미참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인가?</li> <li>·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를 배제하는 행위인가?</li> </ul>   |
| 구속조건부 거래 : 배타 조건부 거래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인가?</li> <li>· 자기가 구입하는 상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ul>  |
|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공정거래법 제23조) | <p>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과점적 시장에서 대리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지역제한 위반시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인가?</li> <li>·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 가격차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인가?</li> <li>·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유통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수요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행위인가?</li> <li>· 도매 유통업자에 대하여 염매하는 소매 유통업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자기가 운송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통해서만 운송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ul> |
| 사업활동 방해                              | <p>기술의 부당이용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p>   |
| 차별적 취급 : 가격차별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인가?</li> <li>·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직무에 대한 노임을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차별적 취급 : 거래 조건 차별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이외의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행위인가?</li> </ul>  |
| 차별적 취급 : 계열사를 위한 차별 (공정거래법 제23조) | <p>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을 구매 또는 공사를 발주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대해 구입 단가, 선급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인가?</li> <li>사규, 공문, 계약 등을 통해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인가?</li> <li>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li> <li>거래의사가 있는 계열사 경쟁회사에 대하여 거래개시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인가?</li> </ul> |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 고가매입 (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제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를 평소보다 고가로 매점하는 행위인가?</li> <li>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인가?</li> </ul>  |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입강제 (공정거래법 제23조)     | <p>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 자재 구매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열사의 제품구입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행위인가?</li> </ul>   |
| 거래상 지위 남용 : 이익제공 강요 (공정거래법 제23조) | <p>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의 기술, Know-How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거래상 지위남용 : 불이익 제공 (공정거래법 제23조) | <p>기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인가?</li> <li>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인가?</li> <li>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를 처리한 날로부터 새로이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인가?</li> <li>분할발주 공사에서 후속차수 공사가 설계, 착수되었으나 계약체결 지연을 사유로 기성고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인가?</li> <li>입찰 및 계약관련 사업자의 사규, 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위인가?</li> <li>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인가?</li> <li>선행공사 지연 등 사업자 귀책으로 공기, 납기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고, 공사기간 또는 납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만 추가로 징구하는 행위인가?</li> <li>계약체결 또는 계약 종결 후에도 예정가격이나 원가계산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행위와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인가?</li> <li>발주자 귀책에 의한 검수지연, 물품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인가?</li> <li>선 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인가?</li> </ul> |
| 거래상 지위남용 : 경영간섭 (공정거래법 제23조)   | <p>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직원의 선임, 해임, 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가?</li> <li>경영지도하는 명목 하에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가?</li> <li>제조위탁 내용과 관련하여 설비Line의 선정 과정이나 자재구입 과정에 간섭하는 행위인가?</li> <li>납품업자가 타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인가?</li> </ul>   |

**제7위반 유형**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부당한 자금지원<br>(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사 등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행위인가?</li> <li>·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 등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인가?</li> <li>·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인가?</li> <li>· 단체 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계열사 등에게 저리 대출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보유 중인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사 소유 건물, 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행위인가?</li> <li>· 임대료를 약정 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행위인가?</li> </ul> |
| 부당한 인력지원<br>(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사 등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인가?</li> <li>· 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행위인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부당한 자산지원<br>(공정거래법 제23조) | <p>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사 등의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행위인가?</li> <li>· 전환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인가?</li> <li>· 금융회사의 특정 긍정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사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인가?</li> <li>· 계열사 등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등이 고가로 인수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하는 행위인가?</li> <li>·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추가추이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행위인가?</li> <li>· 역외펀드를 통해 계열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인가?</li> <li>·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인가?</li> <li>·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계열사 등에 매도, 임대하거나, 고가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매수, 임차하는 행위인가?</li> <li>· 연구개발한 결과를 계열사 등에 무상양도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경영권 방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권 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는 행위인가?</li> <li>·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하는 행위인가?</li> </ul> |

**제8위반 유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매)**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p>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공정거래법 제29조)</p> | <p>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p> <p><i>※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구두를 불문하고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거나 이러한 조건을 수락한 유통업자하고만 거래하는 행위인가?</li> <li>·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자에 대하여 경제상의 이익(리베이트 공여, 출하가격의 인하, 타 상품의 공급 등)을 공여하는 행위인가?</li> <li>·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의 중지, 공급가격의 인상, 리베이트 삭감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가?</li> <li>· 재판매가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가격 관련자료 제출 요구, 영업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감시 또는 서류열람, 자가 판매된 상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하여 제재하는 행위인가?</li> <li>· 영매를 하는 유통업자에 다른 유통업자들의 고충을 들어 영매를 하지 않도록 요청함으로써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인가?</li> <li>· 재고품의 가격인하 판매를 인정치 않고 반품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인가?</li> </ul> |

**제9위반 유형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발주자의 의무사항)**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p>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p> | <p>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p> <p>▶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 및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li> <li>·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합의한 경우</li> <li>·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li> <li>·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li> </ul> <p>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p> <p>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p> |

**제9위반 유형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서면발급<br>(하도급법 제3조)   | <p>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b>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일과 목적물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등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는가?</li> <li>·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발급하는가?</li> <li>·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li> <li>·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li> </ul>   |
| 서류보존<br>(하도급법 제3조)   | <p><b>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지는 않는가?</li> <li>·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지는 않는가?</li> <li>·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파기하지는 않는가?</li> </ul>  |
| 선급금 지급<br>(하도급법 제6조) | <p><b>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li> <li>·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가?</li> <li>·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li> <li>·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검사의<br>기준, 방법<br>및 시기<br>(하도급법 제9조)         | <p><b>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인가?</li> <li>·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행위인가?</li> <li>·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li> <li>·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합격품으로 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하는 행위인가?</li> <li>·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고 있는 행위인가?</li> </ul> |
| 하도급대금<br>지급<br>(하도급법 제13조)                  | <p><b>목적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인가?</li> <li>·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인가?</li> <li>·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인가?</li> <li>· 검사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는 행위인가?</li> <li>·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의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정하는 행위인가?</li> </ul>  |
| 설계변경<br>등에 따른<br>하도급대금<br>조정<br>(하도급법 제16조) | <p><b>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 가능(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하거나 받은 비율 및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인가?</li> </ul>   |

**제9위반 유형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법 제4조)            | <p>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재(원부자재 포함)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수출, 할인판매,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회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경쟁입찰 등에서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li>· 수익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li> </ul> |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p>위탁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li> <li>·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인가?</li> </ul>   |
|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 <p>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관련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사용 또는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위탁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서 자기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사게 한 후, 위탁물의 납품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는 행위인가?</li> </ul>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부당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p>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인가?</li> <li>·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인가?</li> <li>· 자기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인가?</li> <li>·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인가?</li> <li>·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인가?</li> <li>· 수출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키는 행위인가?</li> <li>·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닌가?</li> <li>· 관계법령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인가?</li> </ul> |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 <p>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의 선임 등에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이나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인가?</li> <li>·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목적물의 품질유지나 납기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인가?</li> </ul>  |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 <p>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가?</li> <li>·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가격, 품질, 납기 등에서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단절하는 행위인가?</li> </ul>   |

**제10위반 유형 불공정한 약관(판매, 구매)**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 원칙 (약관법 제6조) | <p><b>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인가?</li> <li>•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가?</li> <li>• 계약당사자 간 소송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인가?</li> <li>•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인가?</li> <li>•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인가?</li> <li>•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인가?</li> <li>•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거나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인가?</li> </ul> |
| 면책조항 금지 (약관법 제7조)        | <p><b>계약당사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가?</li> <li>•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인가?</li> <li>•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인가?</li> <li>•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인가?</li> </ul>  |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약관법 제8조) | <p><b>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전보배상금, 위약벌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인가?</li> </ul>   |
| 채무이행 (약관법 제10조)          | <p><b>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나 책임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임</b></p> <p><b>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임</b></p>   |

| 점검항목                  | Check list  |
|-----------------------|---|
| 계약 해제·해지 (약관법 제9조)    | <p><b>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조항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인가?</li> <li>•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인가?</li> <li>•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인가?</li> <li>•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목시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인가?</li> </ul> |
| 고객 권익보호 (약관법 제11조)    | <p><b>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인가?</li> <li>•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인가?</li> <li>•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인가?</li> </ul>  |
| 의사표시 의제 (약관법 제12조)    | <p><b>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인가?</li> <li>•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인가?</li> <li>•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인가?</li> </ul>   |
| 대리인 책임 가중 (약관법 제13조)  | <p><b>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조항인가?</li> </ul>   |
| 소송 제기 금지 등 (약관법 제14조) | <p><b>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을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인가?</li> </ul>   |

## 공정거래 자가진단 Check list

- 1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담합하거나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가?
- 2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이나 물량 등을 조절하고 있는가?
- 3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 4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 5 계열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가?
- 6 부당하게 신규사업자의 참여나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가?
- 7 유통단계별로 판매목표나 거래가격을 강제하고 있는가?
- 8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임직원 선임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있는가?
- 9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결정이나 작업관리 등에서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가?
- 10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약관을 설정하고 있는가?

## 담합(카르텔) 예방 행동수칙

- 첫째 경쟁사와의 만남은 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사는 협조자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이므로 오해를 살 만한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 단순 정보수집 목적의 경쟁사 접촉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둘째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서 가격 및 시장 동향을 협의하면 안돼요!
  - 정부의 행정지도 시에도 가격, 시장 동향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은 협의하지 마세요.
- 셋째 불가피한 접촉 시에도 카르텔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
  - 추후 입증이 가능하도록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전문가와 협의 후 사후 조치도 필요합니다.
- 넷째 대외 홍보 자료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는 하셨나요?
  - 가격 상승, 수급 상황의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홍보 자료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섯째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입각한 업무처리 및 문서작성은 필수!
  - 경쟁사 관련 정보는 항상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거래 딜레마 행동지침

회사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상사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압박할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될 지 모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가 주창하는 '정도경영' 이미지가 훼손 및 이로 인한 시장의 신뢰도 상실 등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최고 경영층은 회사의 이익과 기업윤리가 충돌할 경우 기업윤리를 우선하라는 방침까지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정거래 딜레마에 처했을 경우에는 우선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사이버 상담, E-mail, 전화, 방문, Fax 등)으로 공정거래 전담부서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반드시 자문을 받은 후 업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장은 상담 요청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됩니다.